개인신용정보 제공 · 이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

1.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 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만으로 이용됩니다.
- 나. 고객은 영업장 · 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과 정에서 1) 금융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를 제휴 · 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 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2) 당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 '마케팅') 목적으 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제휴 · 부가서비스 및 신상품 · 서비스 등 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고객 권리

가.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사실 통보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본인정보를 전국 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타 금융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알려주도록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전화: 1566-7711

홈페이지: http://www.meritzfire.com

나.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에는 그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가입 신청시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당해 금융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은 행연합회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 신청방법

전화: 1566-7711

홈페이지: http://www.meritzfire.com

- 신청자 제한 : 신규 거래고객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라. 본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본인정보에 대해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전화: 1566-7711

홈페이지: http://www.meritzfire.com

3. 위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당사 고객 정보관리 · 보호인 : 02-6464-3535(35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 고객지원팀

· 대한손해보험협회 정보보호담당자 : 02-3702-854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80 코리안리B/D 기획조사부

· 금융감독원 정보보호담당자 : 02-3786-840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 신용정보실(신용정보 1팀)

안내말씀

귀하께서는 저희 메리츠화재해상보험㈜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발생할 수도 있는 각종 위험에 대비하고, 미래의 풍요로운 삶을 준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경제제도인 손해보험에 가입하신 것을 저희 회사 임직원 모두 가 깊이 감사드립니다.

유의사항

특별약관은 보험 증권에 명기된 것에 한하여 보장됩니다.

보험품질보증제 시행

저희 회사에서는 보험계약시 청약서 자필서명, 약관 및 청약서 부본전달, 상품의 주요내용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계약일로부터 3개월(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시고 그 사실이 인정되면 납입하신 보험료와 청약일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한 보험계약대출이율을 더한 금액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보험관련 민원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보험계약, 보상 관련 및 보험금 지급 등에 관하여 불만사항이 있으실 경우, 저희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여 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화 : 메리츠화재 민원상담 02-6464-3535(3522)
- *홈페이지: www.meritzfire.com > 초기화면 > 인터넷 고객센터 > 인터넷 민원(접수)

목 차

가입자 유의사항	1
주요내용 요약서	
보험용어 해설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	통약관
제1장 계약의 성립과 유지 ···································	11
제1조(계약의 성립)	
제2조(청약의 철회)	11
제3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11
제4조(계약의 무효)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6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 철회)	
제7조(계약의 소멸)	
제8조(보험나이 등)	
제9조(용어의 정의)	13
제2장 보험료의 납입 등	13
제1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0조(제1회 고급표 및 되시크 고응계시) 제11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	
제12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제13조(「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에 의한 보험료 대체납입)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16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15
제3장 보험금의 지급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8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1조(해지환급금)	17
제22조(배당금의 지급)	17
제23조(중도인출)	17
제24조(소멸시효)	18
제4장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2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26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2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28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제29조(사기에 의한 계약)	19

제3	30조(주소변경통지)	19
제	31조(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19
	32조(대표자의 지정)	
제3	33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20
제3	3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20
제3	35조(보험금의 지급)	20
제3	36조(환급금의 지급)	20
제	37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20
제	38조(계약내용의 교환)	21
제	39조(보험계약대출)	21
제6	장 분쟁조정 등	21
제4	40조(분쟁의 조정)	21
	41조(관할법원)	
제4	42조(약관의 해석)·····	21
	43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14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제4	45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22
	46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제4	47조(준거법)	22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형 M-Storv1009 1종 특별약과	
1 /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특별약관	25
	상해관련 특별약관 ······ / 2	
	상해관련 특별약관 ····································	25
	상해관련 특별약관 ····································	25 26
	상해관련 특별약관 ······· 2 1-1.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 2 1-2.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체증형]보장 특별약관 ···· 2 1-3. 일반상해사망 및 80%이상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 2	25 26 28
	상해관련 특별약관 ····································	25 26 28
	상해관련 특별약관 ······· 2 1-1.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 2 1-2.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체증형]보장 특별약관 ···· 2 1-3. 일반상해사망 및 80%이상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 2	25 26 28 29
	상해관련 특별약관 ······· 2 1-1.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 2 1-2.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체증형]보장 특별약관 ···· 2 1-3. 일반상해사망 및 80%이상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 2 1-4. 신주말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 2	25 26 28 29 30
	상해관련 특별약관 ······ 2 1-1.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 2 1-2.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체증형]보장 특별약관 ··· 2 1-3. 일반상해사망 및 80%이상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 2 1-4. 신주말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 2 1-5.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 3	25 26 28 29 30 33
	상해관련 특별약관	225 226 228 229 330 333
	상해관련 특별약관	25 26 28 29 30 33 36
	상해관련 특별약관	225 226 228 229 330 333 336 337
	상해관련 특별약관	25 26 28 29 30 33 36 37 39
	상해관련 특별약관	25 26 28 29 30 33 36 37 39 40
	상해관련 특별약관	25 26 28 29 30 33 36 37 40 42
	상해관련 특별약관	25 26 28 29 30 33 36 37 40 42
	상해관련 특별약관	25 26 28 29 30 33 36 37 39 40 42 44
	상해관련 특별약관	25 26 28 29 30 33 36 37 39 40 42 44 45 46
	상해관련 특별약관	25 26 28 29 30 33 36 37 39 40 42 44 45 46 48

제5장 보험금 지급의 절차 등19

	1-17. 일반상해 50%이상후유장해 소득보상금[체증형]보장 특별약관	· 51
	1-18. 교통상해 80%이상후유장해 소득보상금보장 특별약관	. 52
	1-19. 교통상해 50%이상후유장해 소득보상금보장 특별약관	· 54
	1-20. 골절(치아파절 제외)진단비보장 특별약관	· 56
	1-21. 골절수술비보장 특별약관	. 57
	1-22. 교통상해 골절진단비보장 특별약관	· 58
	1-23. 교통상해 골절수술비보장 특별약관	. 59
	1-24. 5대골절진단비보장 특별약관	60
	1-25. 5대골절수술비보장 특별약관	· 61
	1-26. 화상진단비보장 특별약관	62
	1-27. 화상수술비보장 특별약관	· 62
	1-28. 중증화상및부식진단비보장 특별약관	· 63
	1-29. 상해흉터복원수술비보장 특별약관	· 64
	1-30. 중대상해수술비보장 특별약관	· 65
	1-31. 상해수술위로금보장 특별약관	· 66
	1-32. 상해입원일당(1일이상)보장 특별약관	· 66
	1-33. 상해중환자실 입원일당(1일이상)보장 특별약관	67
	1-34. 탈구,염좌및과긴장 입원일당보장 특별약관	69
	1-35. 강력범죄위로금보장 특별약관	69
	1-36. 스쿨존내 어린이 교통사고위로금보장 특별약관	. 70
2.	질병관련 특별약관	· 71
	2-1. 질병사망보장 특별약관	· 71
	2-2. 질병사망 추가보장 특별약관	· 73
	2-3. 질병사망[체증형]보장 특별약관	. 74
	2-4. 질병사망(Ⅱ)보장 특별약관	. 75
	2-5. 질병사망(Ⅱ)[체증형]보장 특별약관	. 76
	2-6. 질병일반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2-7. 질병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 78
	2-8. 암사망보장 특별약관	. 79
	2-9. 과로사관련특정질병사망보장 특별약관	82
	2-10. 질병특정고도장해 소득보상금보장 특별약관	
	2-11. 질병 80%이상후유장해 소득보상금보장 특별약관	· 84
	2-12. 질병 80%이상후유장해 소득보상금[체증형]보장 특별약관	· 86
	2-13. 질병 50%이상후유장해 소득보상금보장 특별약관	
	2-14. 질병 50%이상후유장해 소득보상금[체증형]보장 특별약관	
	2-15. 갱신형 암진단비보장 특별약관	
	2-16. 갱신형 암진단비[체증형]보장 특별약관	
	2-17. 갱신형 고액암진단비보장 특별약관	

	2-18. 갱신형 고액암진단비[체증형]보장 특별약관	··· 98
	2-19. 갱신형 여성3대암진단비보장 특별약관	100
	2-20. 갱신형 뇌졸중진단비보장 특별약관	102
	2-21. 갱신형 뇌졸중진단비[체증형]보장 특별약관	105
	2-22. 갱신형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보장 특별약관	106
	2-23. 갱신형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체증형]보장 특별약관	107
	2-24. 말기폐질환진단비보장 특별약관	109
	2-25. 말기간경화진단비보장 특별약관	109
	2-26. 만성당뇨합병증진단비보장 특별약관	110
	2-27. 양성뇌종양진단비보장 특별약관	111
	2-28. 갱신형 식중독위로금보장 특별약관	113
	2-29. 갱신형 특정전염병위로금보장 특별약관	114
	2-30. 갱신형 암수술비(ㅣ)보장 특별약관	115
	2-31. 갱신형 암수술비(Ⅱ)보장 특별약관	117
	2-32. 갱신형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보장 특별약관	119
	2-33. 7대질병수술비보장 특별약관	122
	2-34. 피부질환수술비보장 특별약관	123
	2-35. 호흡기관련질병수술비보장 특별약관	124
	2-36. 충수염수술비보장 특별약관	125
	2-37.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보장 특별약관	126
	2-38. 컴퓨터질환(VDT증후군)수술비보장 특별약관 ······	127
	2-39. 갱신형 질병수술위로금보장 특별약관	128
	2-40. 갱신형 질병입원일당(1일이상)보장 특별약관	129
	2-41. 갱신형 질병중환자실 입원일당(1일이상)보장 특별약관	131
	2-42. 갱신형 암입원일당보장 특별약관	133
	2-43. 갱신형 7대질병입원일당보장 특별약관	136
	2-44. 심장관련소아특정질병진단비보장 특별약관	137
	2-45. 어린이12대다발성질환 입원일당보장 특별약관	138
	2-46. 갱신형 시력치료비보장 특별약관	139
	2-47. 갱신형 부정교합치료비보장 특별약관	140
3.	상해·질병관련 특별약관 ·····	141
	3-1. 갱신형 장기요양급여금(ㅣ)보장 특별약관	141
	3-2. 갱신형 장기요양급여금(Ⅱ)보장 특별약관	143
	3-3. 갱신형 장기요양급여금(Ⅲ)보장 특별약관	144
	3-4. 갱신형 부부 장기요양급여금(Ⅰ)보장 특별약관	145
	3-5. 갱신형 부부 장기요양급여금(Ⅱ)보장 특별약관	147
	3-6. 갱신형 부부 장기요양급여금(Ⅲ)보장 특별약관	149
	3-7. 5대장기이식수술비보장 특별약관	

	3-8. 각막이식수술비보장 특별약관	··· 152
	3-9. 유방절제수술위로금보장 특별약관	··· 153
	3-10. 깁스치료비보장 특별약관	··· 154
	3-11. 정신 및 행동장애 입원위로금보장 특별약관	··· 155
	3-12. 3대장애위로금보장 특별약관	··· 156
4.	비용관련 특별약관	··· 157
	4-1.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 특별약관	··· 157
	4-2. 벌금보장 특별약관	··· 180
	4-3. 방어비용보장 특별약관	··· 180
	4-4. 방어비용(약식기소 제외)보장 특별약관	··· 181
	4-5. 면허정지위로금보장 특별약관	··· 182
	4-6. 면허취소위로금보장 특별약관	··· 183
	4-7. 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보장 특별약관	··· 183
	4-8.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보장 특별약관	··· 185
	4-9. 중상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보장 특별약관	··· 187
	4-10. 긴급비용보장 특별약관	··· 189
	4-11.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Ⅱ)(자기차량손해 가입시)보장 특별약관	··· 190
	4-12.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Ⅱ)(자기차량손해 미가입시)보장 특별약관	··· 191
	4-13. 생활유지비보장 특별약관	··· 192
	4-14. 시가보존위로금보장 특별약관	··· 193
	4-15. 차량손해위로금보장 특별약관	··· 194
	4-16. 교통사고위로금보장 특별약관	··· 195
	4-17. 안전운전위로금보장 특별약관	··· 195
	4-18. 주차장/단지내 사고위로금보장 특별약관	··· 196
	4-19. 자동차사고 성형수술위로금보장 특별약관	··· 197
	4-20. 대인교통사고위로금보장 특별약관	··· 198
	4-21. 안전사고위로금보장 특별약관	
	(학원폭력치료비, 유괴인신매매위로금)	··· 199
	4-22. 갱신형 해외치료 입원의료비보장 특별약관	··· 199
5.	배상책임관련 특별약관	··· 212
	5-1. 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보장 특별약관	··· 212
	5-2.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보장 특별약관	··· 215
	5-3. 자녀만의배상책임(Ⅱ)보장 특별약관	··· 219
6.	태아 및 임신출산관련 특별약관	223
	6-1. 저체중아육아비용 및 신생아입원일당보장 특별약관	223
	6-2. 출생위험보장 특별약관	
	(저체중아 출생, 장해 출생, 심한장해 출생)	··· 224
	6-3. 선천이상수술위로금보장 특별약관	··· 226

6-4. 모성사망보장 특별약관	227
6-5. 임신·출산질환수술비보장 특별약관 ·······	227
6-6. 임신·출산질환입원일당보장 특별약관 ······	
6-7. 유산수술비보장 특별약관	
6-8. 유산입원일당보장 특별약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추가 특별약관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	
자동갱신 특별약관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신용카드이용 계속보험료납입 특별약관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	
특정부위부보장 특별약관 ····································	
사망보험금 양육연금전환 특별약관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238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2종 보통약관	
제1장 계약의 성립과 유지 ·····	243
제1조(계약의 성립)	
제2조(청약의 철회)	
제3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4조(계약의 무효) ···································	
제6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 철회)	
제7조(계약의 소멸)	
제8조(보험나이 등)	· 245
제2장 보험료의 납입 등	245
제9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0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11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제10조(고급표기 답답건제도 건간 에서계기기 무를(요기되기)/ 제14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장 보험금의 지급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 248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19조(해지환급금) ····································	
제20조(배당금의 지급) ···································	
제21조(중도원물) 제22조(소멸시효) ····································	
······································	

제4장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250
제23조(계약 전 알릴 의무)	250
제2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2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26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제2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5장 보험금 지급의 절차 등	
제28조(주소변경통지)	
제29조(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제30조(대표자의 지정)	
제31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제32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제33조(보험금의 지급) ···································	
제34조(완급금의 시급)	
제35조(도움은 같은 중립의 단당) 제36조(계약내용의 교환) ···································	
제37조(보험계약대출) ····································	
제6장 분쟁조정 등	
제38조(분쟁의 조정) ···································	
제39조(관할법원) ·······	
제40조(약관의 해석) ···································	
제41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	
제42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제43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제43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제45조(준거법)	254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2종 특별약관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257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257
신용카드이용 계속보험료납입 특별약관	257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	····· 258
사망보험금 양육연금전환 특별약관	258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260
【별표1】장해분류표	262
【별표2】골절(치아파절 제외)분류표 ·····	274
【별표3】골절분류표	275
【별표4】화상분류표	275
【별표5】5대골절분류표	276
【별표6】중대한 특정상해 분류표	
【별표7】탈구, 관절 및 인접근육의 염좌 및 과긴장 분류표	
【별표8】악성신생물(암) 분류표	
【별표9】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 ···································	
【별표10】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279

【별표11】	과로사관련특정질병 분류표	279
	질병 특정고도장해 판정기준	
	고액암 분류표	
	여성3대암 분류표	
【별표15】	뇌졸중대상질병 분류표	285
【별표16】	급성심근경색증대상질병 분류표	285
【별표17】	말기 폐질환(End Stage Lung Disease) ·····	286
【별표18】	말기 간경화(End Stage Liver Cirrhosis)	286
【별표19】	식중독 분류표	287
【별표20】	특정전염병 분류표	288
【별표21】	7대질병 분류표	289
【별표22】	피부질환 분류표	289
【별표23】	호흡기관련질병 분류표	290
【별표24】	충수염(맹장염) 분류표	290
【별표25】	컴퓨터질환(VDT증후군) 분류표	291
【별표26】	유방절제수술 분류표	291
【별표27】	정신 및 행동장애 분류표	292
[별표28]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292
【별표29】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	293
【별표30】	어린이12대다발성질환 분류표	297
【별표31】	출생전후기에 발생한 주요병태 분류표	298
【별표32】	장해의 대상	299
[별표33]	심한 장해의 대상	300
【별표34】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분류표	301
【별표35】	여성산과(임신,출산및산후)관련 특정질병 분류표	301
	임신·출산관련질환 분류표 ·····	
【별표37】	유산 분류표	302
【별표38】	특정부위 분류표	303

가입자 유의사항

□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1.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

○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 부활(효력회복)

-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상해 및 질병관련 보장(건강보험/상해보험)

- 이 보험이 상해 등 외래의 사고만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는지, 질병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는지, 몇 세까지 보장하는지 등 구체적인 보험금 지급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갱신형 담보가 포함된 경우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가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치매보장의 경우 보장범위가 한정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조건을 반드시 설명 듣고 확인하신 후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배상책임 관련 보장

-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을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 있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보험사고 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갱신형 보장

- 자동갱신 적용대상 특별약관(갱신형 보장)의 보험기간은 3년만기(단, 갱신시점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로 부터 갱신종료보험나이(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한 갱신종료보험나이를 말합니다)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을 합니다)로, 최초가입 후 3년마다 갱신을 통해 담보별 갱신종료보험나이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갱신시 보험요율의 변동(연령의 증가, 손해율, 의료수가 상승 등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
- 자동갱신 적용대상 특별약관(갱신형 보장)의 보험료는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 납입되며, 적립분 부족 시 추가납입하셔야 계약이 정상 유지됩니다.

2.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적립부분 부리이율(1종의 경우 [보장]공시이율, 2종의 경우 [저축]공시이율)의 변동, 갱신형 보장 갱신계약 보험료의 변동 등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암 관련 보장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암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9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암 진단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일정기간(예 : 1년 등)이내인 경우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 암은 원칙적으로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미세한 침을 이용한 생체검사 방법)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한 진단만 인정됩니다.

○ 특정질병 관련 보장

- 암 등 특정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은 약관이나 별표에 나열되어 있는 질병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수술 관련 보장

-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조작의 경우(예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처치, 바늘 등을 통해 체액을 뽑아 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입원 관련 보장

-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일당(임시생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상해입원일당(상해임시생활비)의 경우,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 니다.

○ 어린이관련 보장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만15세 미만에 사망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태아보험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출생전 자녀(태아)인 경우 출생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합니다.
- 태아가 복수로 출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상 선순위로 기재된 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합니다. 단, 보험계약 자 요청시 다른 출생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 보장

- 이 특약은 발생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며,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보상내용 및 공 제금액 등은 해당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손의료비 범위】

총 진료비 중에서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한 금액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한 금액

국민건강보험 급여항목	비급여항목
국민건강보험 부담	환자본인부담
환자본인부담	전자근인구담

-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을 2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비용만을 보상받게 되므로, 유사한 보험가 입여부 및 보상한도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및 보상책임액에 따라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하며, 비례분담하여 지급된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은 각 계약의 보상대상 의료비 중 최고액을 보상한도로 합니다.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을 초과 한 다수보험은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다수보험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입원, 외래, 처방조제를 각각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된 계약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동일한 다수의 실손의료보험계약인 경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회사 중 한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여 드립니다.

○ 배상책임 관련 보장 등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주요내용 요약서

1.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물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며, 전자·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 (이하「통신판매 계약」이라 합니다)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3. 계약취소

계약 청약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 체결시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을 포함함)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통신판매 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수신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보험계약자가 사이버몰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사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4. 계약의 무효(신체보장 관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단체의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 계약 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 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만15세미만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에는 그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5. 계약의 무효(재물보장 관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목적에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고의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6. 계약의 무효(배상책임보장 관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7. 계약의 소멸(신체보장 관련)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8.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 (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9.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0. 중도인출

《1종》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부터 1년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보험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에 계산된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이 계약에서 정한 보험계약대출금이 있는 때에는 그 원리금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80% 범위 내에서 중도인출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중도인출금의 요청은 보험연도 기준 연12회에 한합니다.

《2종》

- 보험계약자는 유효한 계약으로서 보험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에 계산된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이 계약에서 정한 보험계약대출금이 있는 때에는 그 원리금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합니다)의 90% 범위 내에서 중도인출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중도인출금의 요청은 보험연도 기준 연12회에 한합니다.
- 계약이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자 요청시 보험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최초로 도래하는 다음달 계약 해당일부터 만기 계약해당일까지의 잔여기간동안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저축]공시이율로 매월 계약해당일에 분할 계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11.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1종에 한함)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부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납입의 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 납입중지기간 동안에는 기본보험료(기본계약 보장보험료 및 적립보험료, 특별약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납입됩니다. 단, 납입중지지간은 해당 납입기일에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에서 대체납입이 가능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

12. 계약전 후 알릴 의무

- 1)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이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청약서(질 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2) 계약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이 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등에는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보험목적에 대하여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게 된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3) 알릴의무 위반시 효과 :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보험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즉시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리셔야 합니다.

13. 보험금의 지급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영업일, 배상책임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하여 드리며, 이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만약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14.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이 주요내용 요약서는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보험용어 해설

○ 보험약관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

○ 보험료

《1종》

1) 기본보험료

보험계약자가 매 납입기일에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로 기본계약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와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별약관의 보장보험료(단, 자동갱신 적용대상 특별약관 보험료 제외)의 합계액

① 보장보험료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보험료

② 적립보험료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

2) 적립부분 순보험료

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

3) 납입일시중지 대체보험료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에 의해 납입일시중지를 신청한 경우 납입일시중지기간동안 적립부분 책임준 비금에서 대체되는 금액으로서 해당 기간의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수금비 제외)의 합계액

① 위험보험료

1)-(1)의 보장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② 부가보험료

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는 금액.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로 구성

③ 수금비

부가보험료의 일부로써 보험료의 수금에 필요한 경비

《2종》

1) 보장보험료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보험료

2) 적립보험료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

3) 적립부분 순보험료

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

○ 보험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장해, 입원,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 보험계약일

보험계약자와 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일, 철회 산정기간의 기준일

○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아니하고, 보험계 약자가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보험금, 준비금(적립액) 등이 결정됨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 해지환급금

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

제1장 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계약의 성립)

-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보험계약자」는 「계약자」,「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무진단 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진단일을 말합니다)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예정이율(이하「예정이율」이라 합니다)+1%(연4.75%)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예정이율】

보험회사는 장래의 보험금 지급을 대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적립해 두는데 보험료 납입시점과 보험금 지급시점에는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보험회사는 적립된 금액을 운용할 수 있으므로 운용에 따라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러한할인율을「예정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낮아지고,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제2조(청약의 철회)

-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 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이하「통신판매 계약」이라 합니다)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그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이하「보험계약대출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③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3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청약 시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1을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 제3문의 규정에 의한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 서 부본)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 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②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4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②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 ③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 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① 보험종목
 - ② 보험기간
 - ③ 보험료 납입주기,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 ④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 ⑤ 보험가입금액 등 기타 계약의 내용
-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변경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그권리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 ④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1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제6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 철회)

-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1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4조(계약의 무효)에 의거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1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계약의 소멸)

- ①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또는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적립부분의 책임준비금(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 특별약관, 갱신형 해외치료 입원의료비보장 특별약관, 갱신형 장

기요양급여금(I)보장 특별약관, 갱신형 장기요양급여금(II)보장 특별약관, 갱신형 장기요양급여금(III)보장 특별약관, 갱신형 부부 장기요양급여금(III)보장 특별약관, 갱신형 부부 장기요양급여금(III)보장 특별약관, 갱신형 부부 장기요양급여금(III)보장 특별약관, 갱신형 부부 장기요양급여금(III)보장 특별약관, 갱신형 질병입원일당(1일이상)보장 특별약관, 갱신형 질병입원일당(4일이상)보장 특별약관, 갱신형 질병입원일당(4일이상)보장 특별약관, 갱신형 질병입원일당보장 특별약관, 갱신형 양진단비보장 특별약관, 갱신형 오랜양인원일당보장 특별약관, 갱신형 양진단비보장 특별약관, 갱신형 고액암진단비보장 특별약관, 갱신형 고액암진단비보장 특별약관, 갱신형 고액암진단비[체증형]보장 특별약관, 갱신형 고액암진단비보장 특별약관, 갱신형 기존중진단비[체증형]보장 특별약관, 갱신형 기존중진단비[체증형]보장 특별약관, 갱신형 이성3대암진단비보장 특별약관, 갱신형 기존중진단비[체증형]보장 특별약관, 갱신형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체증형]보장 특별약관, 갱신형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체증형]보장 특별약관, 갱신형 음병약관, 갱신형 음병약관, 갱신형 음병약관, 갱신형 함암방사선약물치료비보장 특별약관, 갱신형 암입원일당보장 특별약관, 갱신형 특정전염병위로금 특별약관, 갱신형 식중독위로금 특별약관, 갱신형 시력치료비보장 특별약관, 갱신형 부정교합치료비보장 특별약관(이하「자동갱신 적용대상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에 따라 대체 납입되는 보험료가 있는 경우,「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에 의해 납입일시중지 대체보험료가 있는 경우 및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에는이를 차감하고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다만, 만 15세 미만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 계약은 소멸되며 회사는 사망시까지 회사가 적립한 책임준 비금 합계액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상해 이외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도 이 계약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책임준비금(자동갱신 적용대상 특별약관 보장을 위해 대체납입되는 보험료가 있는 경우,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에 의해 납입일시중지 대체보험료가 있는 경우 및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8조(보험나이 등)

-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4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89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10년 4월 13일 ⇒ 2010년 4월 13일 - 1989년 10월 2일 = 20년 6월 11일 = 21세

제9조(용어의 정의)

이 보험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기본보험료 : 계약자가 매 납입기일에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로 기본계약 보장보험료 및 적립보험료와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별약관 보험료(단, 자동갱신 적용대상 특별약관 보험료 제외)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① 보장보험료: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 ② 적립보험료 :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 ② 납입일시중지 대체보험료: 계약자가 제13조(「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에 의한 보험료 대체납입) 제1항에 의한 납입일시중지를 신청한 경우 납입일시중지기간동안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되는 금액으로서 해당 기간의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수금비 제외) 및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 특별약관 보험료(수금비 제외)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다만, 특별약관 중자동갱신 적용대상 특별약관 보험료 합계액은 제외됩니다.
 - ① 위험보험료: 제1항에서 정한 보장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 ② 부가보험료 : 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 ③ 수금비 : 부가보험료의 일부로서 보험료의 수금에 필요한 경비를 말합니다.

제2장 보험료의 납입 등

제1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 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이 약관에서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

일(책임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 ① 제25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 ② 제2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③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까지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계약 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납입기일」이라 합니다)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제12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 ① 계약자는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규정된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9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의 이 자(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더한 금액이 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 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21조(해지환급금) 제1 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13조(「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에 의한 보험료 대체납입)

- ① 계약자는 보험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부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납입의 일시중지(이하「납입일시중지」라 합니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의 납입이 중지된 기간(이하「납입중지기간」이라 합니다)동안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② 납입중지기간은 해당「납입기일」에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에서 제9조(용어의 정의) 제2항에서 정한 납입일시중지 대체보험료(이하「납입일시중지 대체보험료」라 합니다) 전액의 대체납입이 가능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 단, 납입중지기간 중 납입일시중지 대체보험료 전액의 대체납입이 불가능할 경우 그때부터 납입중지기간은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납입기일」까지 해당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납입중지기간 중 최종 납입일시중지 대체보험료 대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보험료 납입을 안내하고, 계약자는 최종 납입일시중지 대체보험료 대체후 도래하는 「납입기일」까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④ 회사는 납입중지기간 동안의 계약유지를 위해 해당「납입기일」에 납입일시중지 대체보험료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대체납입합니다.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1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라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된 이자(보장보험료에 대해서 예정이율+1%(연4.75%)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조(계약의 성립), 제1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2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9조(사기에 의한 계약)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16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하여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 4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⑤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의해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3장 보험금의 지급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 을 받는 자)에게 아래와 같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만 15세 이상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 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상해」라 합니다)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 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② 보험기간 중 상해로 [별표1(장해분류표)] 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③ 보험기간 중 상해로 [별표1(장해분류표)] 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별표1(장해분류표)] 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18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로 인정합니다.
- ②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합니다.
- ③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별약관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별약관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별약관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별표1(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④ 【별표1(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 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1(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5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별표1(장해분류표)】 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 준에 따릅니다.
- [7]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图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 감하여 지급합니다.
 - ① 이 계약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 ② 제1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 ⑨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10]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고도후 유장해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 Ⅲ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및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3호에서 정한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은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계약자의 고의
 - ④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 다.
 -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 ②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

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③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완료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소정의 사업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을 말합니다)로부터 이 계약의 적립부분 부리이율(이하「[보장]공시이율」이라 합니다)로 적립한 금액(자동갱신 적용대상 특별약관에 따라 대체 납입되는 보험료가 있는 경우,「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에 의해 납입일시중지 대체보험료가 있는 경우 및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고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만기환급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보장]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결정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에 [보장]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 1.5%로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서 정한 [보장]공시이율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장]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최저보증이율】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 및 외부지표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이 [보장]공시이율에 따라 부리되며 [보장]공시이율이 1%인 경우(최저보증이율은 1.5%일 경우), 적립금은 [보장]공시이율(1%)이 아닌 최저보증이율(1.5%)로 부리됩니다.

제21조(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 때,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하여는 회사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아래의 중도해지 시 적용이율을 적용합니다.

경과기간	중도해지시 적용이율
1년미만	[보장]공시이율 ×80%
1년이상 ~ 2년미만	[보장]공시이율 ×90%
2년이상	[보장]공시이율 ×100%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른 이율 적용 예시】

- 1.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로부터 6개월 시점에서 해지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해지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보장]공시이율 ×80%」적용
- 2.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로부터 1년 6개월 시점에서 해지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해지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보장]공시이율 ×90%」적용
- 3.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시점에서 해지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해지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보장]공시이율」적용
- 2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22조(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계약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3조(중도인출)

계약자는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에서 계산된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이 계약에서 정한 보험계약대출금이 있는 때에는 그 원리금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80%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연도 기준 연12회에 한하여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보험연도】

당해연도 보험계약 해당일로부터 차년도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 매1년 단위의 연도. 예를 들어, 보험계약일이 2010년 8월 15일인 경우 보험연도는 8월 15일부터 차년도 8월 14일까지 1년

제24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2년 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4장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25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26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납입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료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 는 직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에게 제3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5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②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6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①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②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
 - ③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④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 ⑤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21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 다
-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제26조(상해보험계약 후 알 릴 의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을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①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 니다.

제28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 ②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21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29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 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장 보험금 지급의 절차 등

제30조(주소변경통지)

-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타인을 위한 계약에 해당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등이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 등이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방법에 의해 계약자에게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등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 니다.

제31조(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으로 하며, 동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합니다.

제32조(대표자의 지정)

-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대표자로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회사의 요구

에도 불구하고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33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3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 (회사 양식)
 - ② 사고증명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제35조(보험금의 지급)

- ① 회사는 제3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 터 신체 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영업일, 배상책임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 ③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⑤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2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영업일】

「토요일」,「일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및「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합니다.

제36조(환급금의 지급)

- ① 회사는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1%(연4.75%)를,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만기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알려드리며, 그 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연3.75%)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③ 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알린 경우의 만기환급금과 해지환급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중 1년 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연1.875%),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의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7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연3.75%)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분할지급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정이율(연3.75%)을 연단위 복리로 할 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38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회사(보험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합니다)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6조(수집 조사 및 처리의 제한)제2항,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및 동법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②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등 계약내용
- ③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등 지급내용
- ④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해 및 질병에 관한 정보

제39조(보험계약대출)

-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차감합니다.
- 4 회사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6장 분쟁조정 등

제40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1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 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2조(약관의 해석)

- □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제43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4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 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45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21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6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47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특별약관

1. 상해관련 특별약관

1-1.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에 게 이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아래와 같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만 15세 이상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상해(이하「상해」라 합니다)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② 보험기간 중 상해로 [별표1(장해분류표)] 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③ 보험기간 중 상해로 [별표1(장해분류표)] 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별표1(장해분류표)] 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를 적용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별약관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별약관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별약관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별표1(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④ 【별표1(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1(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별표1(장해분류표)】 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7]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图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 감하여 지급합니다.
 - ①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 았던 후유장해

- ② 제1호 이외에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 ⑨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10]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고도후 유장해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 [1]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및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3호에서 정한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은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①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만 15세 미만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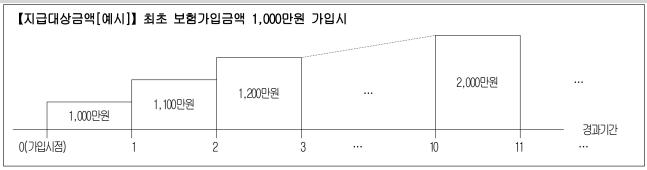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 출)은 제외합니다.

1-2.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체증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에게 이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체증형]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아래와 같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만 15세 이상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상해(이하「상해」라 합니다)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사고일이 속한 경과기간에 따라 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이하「최초 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을 기준으로 매년 최초 보험가입금액의 10%씩 체증한 금액(이하「지급대상금액」이라 합니다)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② 보험기간 중 상해로 [별표1(장해분류표)] 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사고일이 속한 경과기간에 해당하는 지급대상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③ 보험기간 중 상해로 [별표1(장해분류표)] 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별표1(장해분류표)] 에서 정한 지급률을 사고일이 속한 경과기간에 해당하는 지급대상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를 적용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별약관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별약관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별약관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별표1(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④ [별표1(장해분류표)] 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 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1(장해분류표)] 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 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5]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별표1(장해분류표)] 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 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7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图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 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 감하여 지급합니다.
 - ①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 았던 후유장해
 - ② 제1호 이외에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 ⑨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10]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고도후 유장해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 III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및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3호에서 정한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은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①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만 15세 미만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1-3. 일반상해사망 및 80%이상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에게 이 일반상해사망 및 80%이상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아래와 같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만 15세 이상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상해(이하「상해」라 합니다)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②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로 인정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를 적용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별약관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별약관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별약관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별표1(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④ 【별표1(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 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1(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별표1(장해분류표)] 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 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7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图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 감하여 지급합니다.
 - ①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 있던 후유장해
 - ② 제1호 이외에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⑨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만 15세미만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1-4. 신주말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에게 이 신주말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에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아래와 같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만 15세 이상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신주말에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 (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상해(이하「상해」라 합니다)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이 특별 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단,「신주말」이라 함은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 포함) 및 근로자의 날을 말합니다.
- ② 보험기간 중 신주말에 상해로 [별표1(장해분류표)] 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③ 보험기간 중 신주말에 상해로 [별표1(장해분류표)] 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별표1(장해분류표)] 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로 인정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별약관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별약관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별약관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별표1(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④ 【별표1(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 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1(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5]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

- 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별표1(장해분류표)] 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 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7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图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 감하여 지급합니다.
 - ①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 았던 후유장해
 - ② 제1호 이외에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 ⑨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10]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고도후 유장해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 □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및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3호에서 정한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은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①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만 15세 미만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1-5.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다음에 정한 운전자(자가용)형, 비운전자형 중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한가지 형만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운전자(자가용)형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에게 이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아래와 같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만 15세 이상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아래에 정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교통상해」라 합니다)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

합니다.

-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고 있는 동안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등의 교통사고
- ②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로 [별표1(장해분류표)] 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③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로 [별표1(장해분류표)] 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별표1(장해분류표)] 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비운전자형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보험기간 중에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아래와 같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만 15세 이상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아래에 정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상해」라 합니다)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고 있는 동안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등의 교통사고
- ②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상해로 [별표1(장해분류표)] 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 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③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상해로 [별표1(장해분류표)] 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별표1(장해분류표)] 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용어풀이 】

-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 2.「기타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 스컬레이터, 모노레일
 - ②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 포함)
 - ④ 6종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기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3.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 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 로 인정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별약관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별약관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별약관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별표1(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④ 【별표1(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 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1(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별표1(장해분류표)】 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7]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图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 감하여 지급합니다.
 - ①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 ② 제1호 이외에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 ⑨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10]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고도후 유장해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 III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및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3호에서 정한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은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①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 (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 ②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 ③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 ④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만 15세

미만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1-6.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체증형]보장 특별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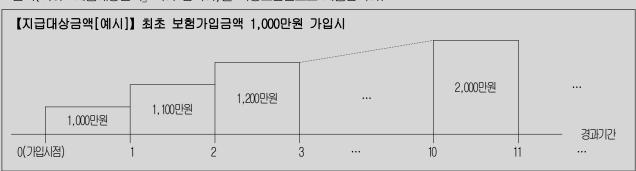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다음에 정한 운전자(자가용)형, 비운전자형 중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한가지 형만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운전자(자가용)형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에 게 이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체증형]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아래와 같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만 15세 이상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아래에 정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교통상해」라 합니다)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사고일이 속한 경과기간에 따라 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이하「최초 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을 기준으로 매년 최초 보험가입금액의 10%씩 체증한 금액(이하「지급대상금액」이라 합니다)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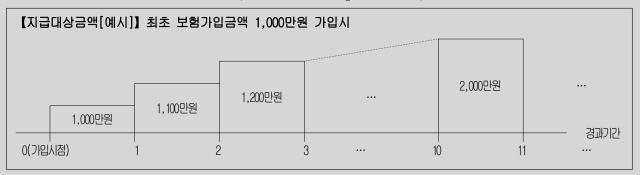
-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고 있는 동안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등의 교통사고
- ②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로 [별표1(장해분류표)] 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사고일이 속한 경과기간에 해당하는 지급대상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③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로 [별표1(장해분류표)] 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별표1(장해분류표)] 에서 정한 지급률을 사고일이 속한 경과기간에 해당하는 지급대상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비운전자형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보험기간 중에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아래와 같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만 15세 이상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아래에 정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

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상해」라 합니다)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사고일이 속한 경과기간에 따라 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이하「최초 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을 기준으로 매년 최초 보험가입금액의 10%씩 체증한 금액(이하「지급대상금액」이라 합니다)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고 있는 동안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등의 교통사고
- ②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상해로 [별표1(장해분류표)] 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 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사고일이 속한 경과기간에 해당하는 지급대상금액을 고도후유 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③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상해로 [별표1(장해분류표)] 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별표1(장해분류표)] 에서 정한 지급률을 사고일이 속한 경 과기간에 해당하는 지급대상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용어풀이 】

-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 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 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 2. 「기타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 컬레이터, 모노레일
 - ②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 포함)
 - ④ 6종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기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3.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로 인정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합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별약관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별약관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별약관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중에 장해상

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별표1(장해분류표)] 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④ 【별표1(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 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1(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5]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별표1(장해분류표)] 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 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7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图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 감하여 지급합니다.
 - ①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 았던 후유장해
 - ② 제1호 이외에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 ⑨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10]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고도후 유장해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 Ⅲ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및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3호에서 정한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은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①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 (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 ②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 ③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 ④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만 15세 미만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20조(만기횐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 출)은 제외합니다.

1-7.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에게 이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아래와 같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만 15세 이상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아래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라 합니다)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받는 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운행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중 일어난 교통사고
 -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내 대기중 일어난 교통사고
- ② 보험기간 중에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 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고도후유장해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③ 보험기간 중에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대중교통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다음의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 ① 여객수송용 항공기
 - ②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 ③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 인)
 - ④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 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조(보험 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별약관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별약관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별약관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별표1(장해분류표)] 에 장해판정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④ [별표1(장해분류표)] 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 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1(장해분류표)] 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 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별표1(장해분류표)】 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①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

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图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 감하여 지급합니다.

- ①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 ② 제1호 이외에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 ⑨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10]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 Ⅲ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및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은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①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 (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 ②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 ③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 ④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만 15세미만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1-8. 항공기이용중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에게 이 항공기이용중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합니다) 중에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아래와 같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만 15세 이상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항공기이용중 교통상해(보험기간 중에 항공기 탑승중의 사고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한 항공기가 불시착한 경우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항공운 송업자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에 탑승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 말하며, 이하「항공기이용중 교통상해」라 합니다)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② 보험기간 중에 항공기이용중 교통상해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③ 보험기간 중에 항공기이용중 교통상해로 [별표1(장해분류표)] 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 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별표1(장해분류표)] 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 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2 제1항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 ②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 ④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교통수단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 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별약관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별약관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별약관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별표1(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④ 【별표1(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 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1(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별표1(장해분류표)】 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①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图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 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 감하여 지급합니다.
 - ①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 았던 후유장해
 - ② 제1호 이외에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 ⑨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10]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1]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및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은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①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 (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 ②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 ③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 ④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①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만 15세 미만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1-9. 업무중상해 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에게 이 업무중상해 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아래와 같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보험기간 중에 업무중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업무중 사고」라 합니다)로 업무중(출·퇴근을 포함합니다)에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업무중 상해」라 합니다)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이 특별 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② 보험기간 중에 업무중 상해로 [별표1(장해분류표)] 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③ 보험기간 중에 업무중 상해로 [별표1(장해분류표)] 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별표1(장해분류표)] 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로 인정합니다.
- [2]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

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별약관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별약관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별약관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별표1(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④ [별표1(장해분류표)] 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 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1(장해분류표)] 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 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5]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별표1(장해분류표)] 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 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7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图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 감하여 지급합니다.
 - ①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 있던 후유장해
 - ② 제1호 이외에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 ⑨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10]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고도후 유장해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 □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및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3호에서 정한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은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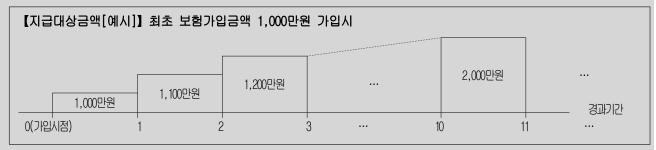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 출)은 제외합니다.

1-10. 업무중상해 사망 후유장해[체증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에게 이 업무중상해 사망·후유장해[체증형]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아래와 같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보험기간 중에 업무중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업무중 사고」라 합니다)로 업무중(출·퇴근을 포함합니다)에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업무중 상해」라 합니다)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사고일이 속한 경과기간에 따라 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이하「최초 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을 기준으로 매년 최초 보험가입금액의 10%씩 체증한 금액(이하「지급대상금액」이라 합니다)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② 보험기간 중에 업무중 상해로 [별표1(장해분류표)] 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사고일이 속한 경과기간에 해당하는 지급대상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③ 보험기간 중에 업무중 상해로 [별표1(장해분류표)] 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별표1(장해분류표)] 에서 정한 지급률을 사고일이 속한 경과기간에 해당하는 지급대상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별약관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별약관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별약관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별표1(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④ 【별표1(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 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1(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별표1(장해분류표)] 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 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7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⑧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

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 감하여 지급합니다.

- ①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 았던 후유장해
- ② 제1호 이외에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 ⑨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①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고도후 유장해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 III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및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3호에서 정한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은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 출)은 제외합니다.

1-11. 특정여기활동중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에게 이 특정여가활동중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아래와 같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만 15세 이상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특정여가활동중상해(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행위를 하는 동안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특정여가활동중상해」라 합니다)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1) 다음에 기재된 스포츠를 그 목적의 스포츠시설(전용시설 또는 그 스포츠를 하기 위한 설비가 있는 병용시설을 말합니다. 다만, 주택은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내에서 하는 동안 또는 그 스포츠를 하기 위하여 스포츠 시설내에서 착탈의, 휴식, 준비운동 등을 하는 동안
 - :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골프, 볼링, 수영, 에어로빅
 - (2) 게이트볼(시합 또는 5인 이상이 연습하는 경우에 한합니다)을 하는 동안
 - (3) 낚시(직업적인 물고기잡이는 제외합니다)를 하는 동안
 - (4) 다음의 유료시설에 관객 또는 입장객으로 있는 동안. 다만, 대상이 되는 시설은 시설내에 관리인이 있는 등 구체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유료시설을 말하며, 이 시설이 무료개방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 1. 영화관, 콘서트홀, 스포츠 관람시설, 극장, 연예장 등의 시설(영화, 음악, 스포츠, 연극, 연예 또는 구경거리를 감상, 관람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유흥접객업소는 제외합니다)
 - 2. 유원지, 레저랜드 또는 동물원, 식물원, 미술관, 박물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 (5) 숙박을 동반한 여행목적을 갖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소지를 출발하여 당해 주소지에 도착할 때까지

- 의 여행을 하는 동안. 다만, 업무출장 및 업무 목적을 병행하고 있는 여행은 제외합니다.
- ② 보험기간 중에 특정여가활동중상해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③ 보험기간 중에 특정여가활동중상해로 [별표1(장해분류표)] 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별표1(장해분류표)] 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 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로 인정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별약관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별약관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별약관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별표1(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④ 【별표1(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 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1(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별표1(장해분류표)】 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7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图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 감하여 지급합니다.
 - ①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 ② 제1호 이외에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 ⑨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10]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고도후 유장해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 III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및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3호에서 정한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은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만 15세 미만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1-12. 레저활동중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에 게 이 레저활동중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에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아래와 같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만 15세 이상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레저활동중상해(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주택을 이탈하여 업무 이외의 활동을 하는 동안 생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레저활동중상해」라 합니다)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지급합니다.
- ② 보험기간 중에 레저활동중상해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③ 보험기간 중에 레저활동중상해로 [별표1(장해분류표)] 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별표1(장해분류표)] 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 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조(보험 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별약관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별약관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별약관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별표1(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④ 【별표1(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 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1(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별표1(장해분류표)】 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①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图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 감하여 지급합니다.

- ①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 았던 후유장해
- ② 제1호 이외에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⑨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10]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Ⅲ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및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은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 회사는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① 임금 근로자, 자영업자 또는 학생의 직업, 직무 또는 학업에 종사하는 활동중(출 퇴근, 등하교 포함) 발생한 상해손해 ② 주택 내에서 발생한 상해손해
- ② 제1항 제2호의「주택」이라 함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및 단독주택을 말하며, 「주택 내」라 함은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건물의 입구 안쪽 공간을, 기타 주택의 경우는 주택의 부속물인 대문의 안쪽 공간을 말합니다.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만 15세 미만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 출)은 제외합니다.

1-13. 팔 및 손가락 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이 팔 및 손가락 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에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제1호에서 정한 상해(이하「상해」라 합니다)로 어깨부위 이하가 절단되었거나 또는 어깨부위, 팔꿈치, 손목 및 손가락에 관절

운동장해(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팔 및 손가락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를 적용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 지급률로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별약관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별약관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별약관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 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별표1(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 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③ 【별표1(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 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1(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④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별표1(장해분류표)】 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 ①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 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 감하여 지급합니다.
 - ①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 있던 후유장해
 - ② 위 제1호 이외에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 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 图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만 15세미만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 출)은 제외합니다.

1-14. 일반상해 80%이상후유장해 소득보상금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이 일반상해 80%이상후유장해 소득보상금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에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상해(이하「상해」라 합니다)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일반상해 80%이상후유장해 소득보상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를 적용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 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별약관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별약관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별약관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별표1(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③ 【별표1(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 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1(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장해지급률 결정합니다.
- ④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별표1(장해분류표)] 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 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일반상해소득보상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일반상해소득보상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일반상해소득보상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①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 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일반상해소득보상 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일반상해소득보상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일반상해소 득보상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①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일반상해소득보상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 ② 제1호 이외에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상해소득보상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일반상해소득보 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图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일반상해 80%이상후유장해 소득보상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아래의 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일반상해 80%이상후유장해 소득보상금으로 매년 사고발생일에 확정 지급하여 드립니다.

구 분	지급금액
일반상해 80%이상후유장해 소득보상금	보험가입금액의 10%를 10년간 확정지급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② 제1항의 금액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예정이율(연3.75%)로 할인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1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만 15세 미만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 출)은 제외합니다.

1-15. 일반상해 80%이상후유장해 소득보상금[체증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이 일반상해 80%이상후유장해 소득보상금[체증형]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에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상해(이하「상해」라 합니다)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일반상해 80%이상후유장해 소득보상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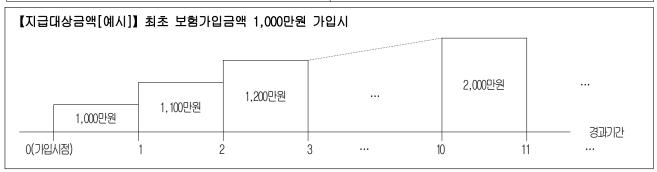
-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를 적용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 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별약관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별약관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별약관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별표1(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③ 【별표1(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 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1(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장해지급률 결정합니다.
- ④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별표1(장해분류표)】 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일반상해소득보상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일반상 해소득보상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일반상해소득보상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①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 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일반상해소득보상 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일반상해소득보상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일반상해소 득보상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①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일반상해소득보상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 ② 제1호 이외에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상해소득보상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일반상해소득보 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 ⑧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

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 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일반상해 80%이상후유장해 소득보상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사고일이 속한 경과기간에 따라 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이하「최초 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을 기준으로 매년 최초 보험가입금액의 10%씩 체증한 금액(이하「지급대상금액」이라 합니다)을 아래의 방법에 따라 최초 1회에 한하여 일반상해 80%이상후유장해 소득보상금으로 매년 사고발생일에 확정 지급하여 드립니다.

구 분	지급금액
일반상해 80%이상후유장해 소득보상금	지급대상금액의 10%를 10년간 확정지급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② 제1항의 금액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예정이율(연3.75%)로 할인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①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만 15세 미만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1-16. 일반상해 50%이상후유장해 소득보상금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이 일반상해 50%이상후유장해 소득보상금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에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상해(이하「상해」라 합니다)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일반상해 50%이상후유장해 소득보상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를 적용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별약관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별약관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별약관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별표1(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③ 【별표1(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 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1(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장해지급률 결정합니다.
- ④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별표1(장해분류표)] 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 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일반상해소득보상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일반상해소득보상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일반상해소득보상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①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일반상해소득보상 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일반상해소득보상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일반상해소 득보상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①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일반상해소득보상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 ② 제1호 이외에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상해소득보상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일반상해소득보 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图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일반상해 50%이상후유장해 소득보상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아래의 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일반상해 50%이상후유장해 소득보상금으로 매년 사고발생일에 확정 지급하여 드립니다.

구 분	지급금액
일반상해 50%이상후유장해 소득보상금	보험가입금액의 10%를 10년간 확정지급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② 제1항의 금액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예정이율(연3.75%)로 할인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 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일반상해 50%이상후유장해 소득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만 15세 미만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1-17. 일반상해 50%이상후유장해 소득보상금[체증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이 일반상해 50%이상후유장해 소득보상금[체증형]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에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상해(이하「상해」라 합니다)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일반상해 50%이상후유장해 소득보상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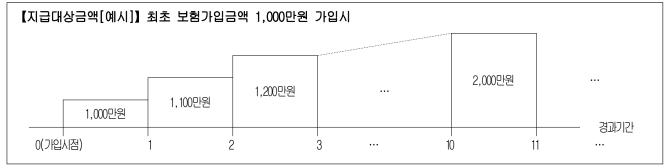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를 적용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 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별약관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별약관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별약관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별표1(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③ 【별표1(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 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1(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장해지급률 결정합니다.
- ④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별표1(장해분류표)】 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일반상해소득보상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일반상해소득보상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일반상해소득보상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①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 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일반상해소득보상 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일반상해소득보상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일반상해소 득보상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①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일반상해소득보상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 ② 제1호 이외에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상해소득보상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일반상해소득보 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 图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일반상해 50%이상후유장해 소득보상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사고일이 속한 경과기간에 따라 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이하「최초 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을 기준으로 매년 최초 보험가입금액의 10%씩 체증한 금액(이하「지급대상금액」이라 합니다)을 아래의 방법에 따라 최초 1회에 한하여 일반상해 50%이상후유장해 소득보상금으로 매년 사고발생일에 확정 지급하여 드립니다.

구 분	지급금액
일반상해 50%이상후유장해 소득보상금	지급대상금액의 10%를 10년간 확정지급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② 제1항의 금액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예정이율(연3.75%)로 할인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 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일 반상해 50%이상후유장해 소득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만 15세미만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1-18. 교통상해 80%이상후유장해 소득보상금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다음에 정한 운전자(자가용)형, 비운전자형 중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한가지 형만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운전자(자기용)형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이 교통상해 80%이상후유장해 소득보상금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에 교통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아래에 정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교통상해」라 합니다)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교통상해 80%이상후유장해 소득보상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이하「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합니다)
-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고 있는 동안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등의 교통사고

비운전자형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아래에 정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상해」라 합니다)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 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교통상해 80%이상후유장해 소득보상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

- 승(「운전」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고 있는 동안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등의 교통사고

[용어풀이]

-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
 -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 2.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칼레이터, 모노레일
 - ②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 ④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기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3.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를 적용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별약관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별약관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별약관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별표1(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③ 【별표1(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 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1(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 ④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별표1(장해분류표)】 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①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 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 감하여 지급합니다.
 - ①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 있던 후유장해
 - ② 제1호 이외에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 图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①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 (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 ②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 ③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 ④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제4조(교통상해 80%이상후유장해 소득보상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아래의 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교통상해 80%이상후유장해 소득보상금으로 매년 사고발생일에 확정 지급하여 드립니다.

구 분	지급금액
교통상해 80%이상후유장해 소득보상금	보험가입금액의 10%를 10년간 확정지급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② 제1항의 금액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예정이율(연3.75%)로 할인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만 15세 미만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1-19. 교통상해 50%이상후유장해 소득보상금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다음에 정한 운전자(자가용)형, 비운전자형 중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한가지 형만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운전자(자기용)형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이 교통상해 50%이상후유장해 소득보상금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에 교통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아래에 정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교통상해」라 합니다)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교통상해 50%이상후유장해 소득보상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고 있는 동안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등의 교통사고

비운전자형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아래에 정한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상해」라 합니다)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 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교통상해 50%이상후유장해 소득보 상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고 있는 동안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등의 교통사고

[용어풀이]

-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
 -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 2.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칼레이터, 모노레일
 - ②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 ④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기 타교통수단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3.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를 적용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별약관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별약관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별약관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별표1(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③ 【별표1(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 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1(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 ④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별표1(장해분류표)】 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①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 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 감하여 지급합니다.

- ①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 ② 제1호 이외에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图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①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 (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 ②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 ③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 ④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제4조(교통상해 50%이상후유장해 소득보상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아래의 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교통상해 50%이상후유장해 소득보상금으로 매년 사고발생일에 확정 지급하여 드립니다.

구 분	지급금액
교통상해 50%이상후유장해 소득보상금	보험가입금액의 10%를 10년간 확정지급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② 제1항의 금액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예정이율(연3.75%)로 할인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 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교통상해 50%이상후유장해 소득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만 15세 미만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 출)은 제외합니다.

1-20. 골절(치아파절 제외)진단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이 골절(치아파절 제외)진단비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제1호에서 정한 상해(이하「상해」라 합니다)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별표2(골절(치아파절 제외)분류표)】에서 정하는 골절로 진단확정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골절(치아파절 제외)진단비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에서 정한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고 치아파절손해 또는 치아파절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동일한 사고로 골절(치아파절 제외)이 치아파절과 동시에 발생한 경우는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을 따릅니다.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①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만 15세 미만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1-21. 골절수술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이 골절수술비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상해(이하「상해」라 합니다)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별표3(골절분류표)] 에서 정하는 골절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골절수술비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한 종류의 골절수술비만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던 중 발생된 사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①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을 포함합니다)
- ② 선천적 기형 및 이에 연유한 병상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있어「수술」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합니다)에 의하여 골절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골절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제5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1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만 15세미만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 출)은 제외합니다.

1-22. 교통상해 골절진단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다음에 정한 운전자(자가용)형, 비운전자형 중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한가지 형만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운전자(자가용)형

우리 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 이 교통상해 골절진단비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에 교통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아래에 정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교통상해」라 합니다)로 【별표3(골절분류표)】에서 정하는 골절로 진단확정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교통상해 골절진단비로 지급합니다.

-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고 있는 동안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비운전자형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아래에 정한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상해」라 합니다)로 【별표3(골절분류표)】에서 정하는 골절 로 진단확정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교통상해 골절진단비로 지급합니다.

-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고 있는 동안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용어 풀이】

-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 2.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 ②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 포함)
- ④ 6종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기타교통수단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3.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 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교통상해 골절진단비는 매 사고시마다 지급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보험대상 자)가 동일한 상해로 복합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만 15세미만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1-23. 교통상해 골절수술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다음에 정한 운전자(자가용)형, 비운전자형 중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한가지 형만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운전자(자기용)형

우리 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 이 교통상해 골절수술비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에 교통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아래에 정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교통상해」라 합니다)로 [별표3(골절분류표)]에서 정하는 골절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교통상해 골절수술비로 지급합니다.

-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고 있는 동안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비운전자형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아래에 정한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상해」라 합니다)로 【별표3(골절분류표)】에서 정하는 골절 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 입금액을 교통상해 골절수술비로 지급합니다.

-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고 있는 동안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용어 풀이】

-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 2.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 ②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 포함)
 - ④ 6종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기타교통수단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3.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 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교통상해 골절수술비는 매 사고시마다 지급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보험대상 자)가 하나의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한 종류의 골절수술비만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①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을 포함합니다)
- ②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있어「수술」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합니다)에 의하여 골절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골절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제5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①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만 15세 미만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1-24. 5대골절진단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이 5대골절진단비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상해(이하「상해」라 합니다)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별표5(5대골절분류표)】에서 정하는 5대골절로 진단확정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5대골절진단비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5대골절진단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만 15세 미만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1-25. 5대골절수술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이 5대골절수술비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정한 상해(이하「상해」라 합니다)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별표5(5대골절분류표)】에서 정하는 5대골절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5대골절수입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5대골절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한 종류의 5대골절수술비만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던 중 발생된 사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①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을 포함합니다)
- ② 선천적 기형 및 이에 연유한 병상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골절수술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5대골절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제5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만 15세 미만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1-26. 화상진단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 이 화상진단비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별표4(화상분류표)】에서 정하는 화상으로 진단확정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화상진단비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화상」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하여 【별표4(회상분류표)】에서 정한 회상(열상을 포함합니 다)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을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화상 상태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만 15세 미만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1-27. 화상수술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 이 화상수술비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별표4(화상분류표)】에서 정하는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화상수술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화상이라 함은 【별표4(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열상을 포함합니다)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말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한 종류의 화상수술비만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던 중 발생된 사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①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을 포함합니다)
- ②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있어「수술」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합니다)에 의하여 화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화상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제5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만 15세미만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 출)은 제외합니다.

1-28. 중증화상및부식진단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이 중증화상및부식진단비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중증화상및부식으로 진단확정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중증화상및부식진단비로 지급합니다.

제2조(중증화상및부식진단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중증화상및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이라 함은「9의 법칙(Rule of 9's)」또는「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Lund & Browder chart)」에 의해 측정된 신체표면적으로 최소 20% 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을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9의 법칙」또는「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측정법처럼 표준화되고 임상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다른 신체 표면적 차트를 이용하여 유사한 결과가 나온 것도 인정합니다. ②「중증화상및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중증화상및부식」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 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증화상및부식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만 15세 미만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8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1-29. 상해흉터복원수술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이 상해흉터복원수술비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무배당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상해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단, 사고발생시점 만15세 미만자의 경우 부득이 사고일로부터 2년 경과 후에 성형수술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진단으로 대체할수 있습니다)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아래에 정한 금액을 상해흉터복원수술비로 지급합니다.

구분	안면부	상지・하지
상해흉터복원수술비	수술 1Cm당 14만원	수술 1Cm당 7만원 (단, 3Cm이상의 경우에 한합니다.)

주) 길이측정이 불가한 식피술등의 경우 수술에는 최장직경으로 합니다.

【용어풀이】

안면부, 상지, 하지란 다음을 말합니다.

- 1. 안면부란 이마를 포함하여 목까지의 얼굴부분을 말합니다.
- 2. 상지란 견관절 이하의 팔부분을 말합니다.
- 3. 하지란 고관절 이하 대퇴부, 하퇴부, 족부를 의미하며, 둔부, 서혜부, 복부 등은 제외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상해흉터복원수술비는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500만원을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흉터복원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상해흉터복원수술」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①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만 15세 미만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1-30. 중대상해수술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이 중대상해수술비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개두(開頭)수술」,「개흉(開胸)수술」 또는「개복(開腹)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이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중대상해수술비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중대상해수술비 지급사유가 2가지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한 가지 사유에 의한 중대상해수술비만을 지급합니다.

제3조(중대상해수술 보장의 정의 및 진단 확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뇌손상」이라 함은 두부(頭部)에 가해진 충격에 의해 뇌에 손상(【별표6(중대한 특정상해 분류표)】참조)을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내장손상」이라 함은 신체 외부에서 가해진 충격에 의해 내장(심장, 폐, 위, 장, 간장, 췌장, 비장, 신장, 방광)의 기관에 기질적 손상(【별표6(중대한 특정상해 분류표)】참조)을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개두(開頭)수술」,「개흥(開胸)수술」,「개복(開腹)수술」이라 함은 각각 아래의 수술을 말하며, 뇌 및 내장에 의료기구를 삽입하여 시행하는 두개골 천공술, 복강경, 내시경 등의 수술 및 시술은「개두 (開頭)수술」,「개흥(開胸)수술」,「개복(開腹)수술」로 보지 아니합니다.
 - ①「개두(開頭)수술」이라 함은 두개를 열어 뇌를 노출시키는 수술을 말합니다.
 - ②「개흉(開胸)수술」이라 함은 흉강을 여는 수술로서 농흉수술, 흉막, 폐장, 심장, 횡경막, 종격동, 식도수술 등 흉강 내에 조작을 가할 때에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개흉수술에 준하는 것은 늑골(갈비뼈), 흉골(복장뼈)의 절제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③「개복(開腹)수술」이라 함은 복벽을 절개하여 복강을 여는 수술로서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 충수, 간장 및 담도, 췌장, 비장, 난소 및 자궁수술 등 복강 내에 조작을 가할 때에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개복수술에 준하는 것으로 서 신장, 뇨관 및 방광수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지만 경뇨도적조작에 의한 것은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 □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 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대상해수술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 별양과은 소멸된 IC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만 15세 미만인 피보험 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1-31. 상해수술위로금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 이 상해수술위로금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에 무배당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제1호에서 정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수술1회당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수술위로금으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상해수술위로금은 매 사고시마다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수술위로금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보통약관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아래의 목적의 치료를 위한 상해수술위로금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①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②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③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 ②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④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을 포함합니다)
- ⑤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제5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①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만 15세 미만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1-32. 상해입원일당(1일이상)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

이 상해입원일당(1일이상)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제1호에서 정한 상해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병원 또는 의원 등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이하 같습니다)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입원 1일에 대하여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입원일당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다만,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발생한 입원일수를 한도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상해입원일당을 계속 보상합니다.
-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상해입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 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5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II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만 15세 미만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1-33. 상해중환자실 입원일당(1일이상)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이 상해중환자실 입원일당(1일이상)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상해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중환자실에 입원(병원 또는 의원 등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입원 1일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중환자실 입원일당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다만,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발생한 입원일수를 한도로 합니다.

-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을 말합니다.
-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퇴원하

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상해중환자실 입원일당을 계속 보상합니다.

④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상해중환자실 입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 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5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①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만 15세 미만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의료기관의 시설규격

2. 중환자실

- 가.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은 입원실 병상 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만들어야 하다
- 나. 중환자실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되어야 하며, 무정전(無停電)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다. 중환자실의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 라. 병상 1개당 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생아만을 전담하는 중환자실(이하 "신생아중환자실"이라 한다)의 병상 1개당 면적은 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병상 1개당 면적"은 중환자실 내 간호사실, 당직실, 청소실, 기기창고, 청결실, 오물실, 린넨보관실을 제외한 환자 점유 공간[중환자실 내에 있는 간호사 스테이션(station)과 복도는 병상 면적에 포함한다]을 병상 수로 나는 면적을 말한다.
- 마.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수액주입기를 갖추고, 병상 수의 10퍼센트 이상 개수의 침습적 동맥혈압모니터, 병상 수의 30퍼센트 이상 개수의 인공호 흡기, 병상 수의 70퍼센트이상 개수의 보육기(신생아중환자실에만 해당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 바. 중환자실 1개 단위(Unit)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심전도기록기, 제세동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제세동기 대신 광선기와 집중치료기를 갖추어야 한다.
- 사. 중환자실에는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 아. 전담간호사를 두되, 간호사 1명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는 1.2명(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1.5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34. 탈구.염좌및과긴장 입원일당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이 탈구,염좌및과긴장 입원일당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별표7(탈구, 관절 및 인접근육의 염좌 및 과긴장 분류표)】에 정한 탈구, 관절 및 인접근육의 염좌 및 과긴장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의료법 제3조 2항에 정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등에 4일이상 계속 입원(병원 또는 의원 등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4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탈구,염좌및과긴장 입원일당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입원에 한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중에 동일한 사고에 의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퇴원하
- 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탈구,염좌및과긴장 입원일당을 계속 보상합니다.
-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탈구,염좌및과긴장 입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 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만 15세 미만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1-35. 강력범죄위로금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이 강력범죄위로금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 일상생활 중에서 아래에 정한 강력범죄사고로 사망하거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강력범죄위로금으로 지급합니다.

- ① 형법 제 24 장에서 말하는 살인의 죄
- ② 형법 제 25 장에서 말하는 상해와 폭행의 죄
- ③ 형법 제 32 장에서 말하는 강간과 추행의 죄 중 강간죄
- ④ 형법 제 38 장에서 말하는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의 죄
- 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폭처법」이라 합니다)에 정한 폭력 등의 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정한 제1호의 살인, 제2호의 상해와 폭행 및 제5호의 폭력 등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때에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범죄행위를 하던 중 또는 「폭처법」제4조의 범죄단체를 구성 또는 이에 가담함으로써 발생된 소해
-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의한 손해
- ③ 전쟁, 폭동, 소요, 노동쟁의 또는 이와 유사한 사변 중에 생긴 손해
- ④ 지진, 분화, 해일, 풍수해 또는 그 밖의 변재가 일어났을 때 생긴 손해
- ⑤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고용주 내지 고용상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의해 발생한 손해

제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8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의 구비서류 및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경찰서사건신고확인원(관할경찰서장 발행)
 - ② 의사진단서 등
- ② 회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그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 등을 대상으로 사고상황을 조사하고 이들에게 자세한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8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1-36. 스쿨존내 어린이 교통사고위로금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만 12세 이하인 피보험자, 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 이 스쿨존내 어린이 교통사고위로금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이하「스쿨존」이라 합니다)내에서 교통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교통상해」라 합니다)를 입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스쿨존내 어린이 교통사고위로금으로지급합니다.

-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고 있는 동안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등의 교통사고

【 용어풀이 】

1.「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 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 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 2.「기타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 ②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 ④ 6종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기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에서 교통사고라 함은 관할경찰서에서 교통사고로 접수된 경우를 말하며,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 니하는 사유) 및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던 중 발생된 사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①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 (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 ②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 ③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 ④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①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만 15세 미만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8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2. 질병관련 특별약관

2-1. 질병사망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 이 질병사망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또는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질병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를 적용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별약관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별약관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별약관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별표1(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③ 【별표1(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 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1(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 ④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별표1(장해분류표)] 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 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질병사망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질병사망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①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질병사망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질병사망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질병사망보험금을 차 감하여 지급합니다.
 - ①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질병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 있던 후유장해
 - ② 제1호 이외에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질병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 图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⑨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 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10 제9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특별약관이 자동갱신 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 Ⅲ 제10항의「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12 보통약관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10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 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질병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2-2. 질병사망 추가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이 질병사망 추가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또는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질병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를 적용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별약관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별약관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별약관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별표1(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③ 【별표1(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 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1(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 ④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별표1(장해분류표)] 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 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질병사망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질병사망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①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질병사망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질병사망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질병사망보험금을 차 감하여 지급합니다.
 - ①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질병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 ② 제1호 이외에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질병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 图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⑨ 청약서상「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아니합니다.
- ① 제9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특별약관이 자동갱신 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 Ⅲ 제10항의「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12 보통약관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10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 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질병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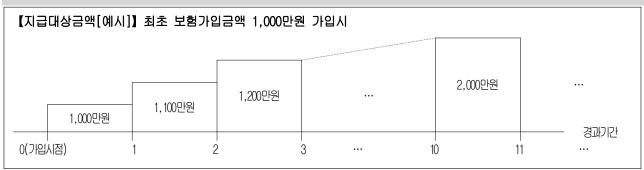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2-3. 질병사망[체증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 이 질병사망[체증형]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또는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사고일이 속한 경과기간에 따라 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이하「최초 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을 기준으로 매년 최초 보험가입금액의 10%씩체증한 금액(이하「지급대상금액」이라 합니다)을 질병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를 적용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별약관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별약관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별약관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별표1(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③ 【별표1(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 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1(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 ④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별표1(장해분류표)] 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 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질병사망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질병사망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7]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

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질병사망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질병사망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질병사망보험금을 차 감하여 지급합니다.

- ①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질병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 았던 후유장해
- ② 제1호 이외에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질병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 图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⑨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 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10 제9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특별약관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 Ⅲ 제10항의「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① 보통약관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10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 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질병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2-4. 질병사망(11)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이 질병사망(II)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질병사망(II)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① 청약서상「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 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질병사망(II)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특별약관이 자동갱신 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 ③ 제2항의「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④ 보통약관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

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 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질병사망(I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2]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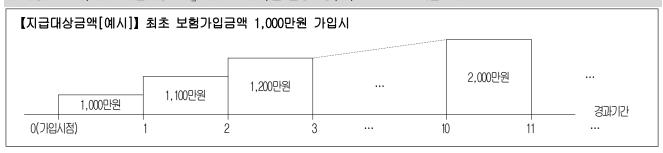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2-5. 질병사망(11)[체증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이 질병사망(II)[체증형]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사고일이 속한 경과기간에 따라 최초 계약을체결할 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이하「최초 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을 기준으로 매년 최초 보험가입금액의 10%씩 체증한 금액(이하「지급대상금액」이라 합니다)을 질병사망(II)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 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질병사망(II)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특별약관이 자동갱신 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 ③ 제2항의「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④ 보통약관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 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질병사망(I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2-6. 질병일반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이 질병일반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질병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를 적용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별약관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별약관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별약관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별표1(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③ 【별표1(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 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1(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④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별표1(장해분류표)] 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 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①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 감하여 지급합니다.
 - ①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 있던 후유장해
 - ② 제1호 이외에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 ⑨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10] 청약서상「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 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질병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Ⅲ 제10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특별약관이 자동갱신 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 Ⅲ 제11항의「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13] 보통약관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11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2-7. 질병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에게 이 질병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다음 사항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아래와 같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②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별표1(장해분류표)] 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별표1(장해분류표)] 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별약관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별약관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별약관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별표1(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③ 【별표1(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 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1(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④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별표1(장해분류표)] 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 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①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 감하여 지급합니다.

- ①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 ② 제1호 이외에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 图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고도 후유장해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 10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 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 및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Ⅲ 제10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특별약관이 자동갱신 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 12 제11항의「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13] 보통약관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11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 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만 15세 미만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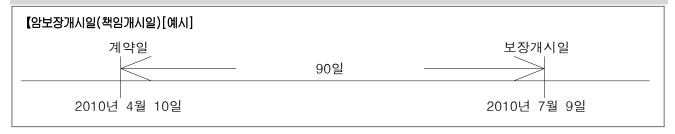
2-8. 암사망보장 특별약관

제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 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터 이 암사망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이 특별약관에서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부터이 특별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이하「암」이라 합니다)에 대한 회사의 보장은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하「암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합니다)에 시작합니다.
- ③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 ①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5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 ② 보통약관 제2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③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까지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 제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암」으로 진단확정되거나 제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기타피부암」 또는「갑상샘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암」,「기타피부암」또는「갑상샘암」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그「암」,「기타피부암」또는「갑상샘암」으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암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①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를 적용합니다.
- ②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암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한 장해지급률이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샘암」의 진단일(이하「사고일」이라 합니다)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별약관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별약관은 사고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별약관은 사고일부터 1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별표1(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③ 【별표1(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 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1(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 ④ 동일한「암」,「기타피부암」또는「갑상샘암」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별표1(장해분류표)] 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 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①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 감하여 지급합니다.
 - ①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 았던 후유장해
 - ② 제1호 이외에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 图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⑨ 청약서상「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암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아니합니다.

10 제9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특별약관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Ⅲ 제10항의「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① 보통약관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10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4조(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별표8(악성신생물(암)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와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및 C73(갑상샘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은 제외합니다.

②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8(악성신생물(암)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③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갑상샘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암」중에서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의 분류번호(73(갑상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별표8(악성신생물(암)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④「암」,「기타피부암」또는「갑상샘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 대상자)가「암」,「기타피부암」및「갑상샘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및 제2항의 암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6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 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
- ②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 또는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2-9. 과로시관련특정질병사망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 이 과로사관련특정질병사망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에 진단확정된 과로사관련특정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또는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과로사관련특정질병으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이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과로사관련특정질병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과로사관련특정질병이라 함은 【별표11(과로사관련특정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바이러스 간염, 고혈압성 심장병, 고혈압성 심장 및 콩팥(신장)병, 급성심근경색증, 협심증, 거미막밑 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뇌경색증,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고혈압성 뇌병증 및 간의 질환을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를 적용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별약관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별약관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별약관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별표1(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별표1(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 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1(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④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별표1(장해분류표)] 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 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①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 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 감하여 지급합니다.

- ①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 있던 후유장해
- ② 제1호 이외에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图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⑨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과로사관련특정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0 제9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특별약관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Ⅲ 제10항의「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

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① 보통약관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10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 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과로사관련특정질병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2-10. 질병특정고도장해 소득보상금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이 질병특정고도장해 소득보상금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 진단확정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아래의 어느 한가지 경우에 해당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질병특정고도장해 소득보상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질병특정고도장해 소득보상금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별표12(질병 특정고도장해 판정기준)】에서 정한 장해상태(이하「질병특정고도장해」라 합니다)가 되었을 경우
-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제2조 및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한 1급 또는 2급의 장애인(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이 되었을 경우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청약서상「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 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질병특정고도장해 소득보상 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특별약관이 자동갱신 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의「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④ 보통약관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선천적기형, 선천적질환, 정신질환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제4조(질병특정고도장해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질병특정고도장해」라 함은 【별표12(질병특정고도장해 판정기준)】의 1.에서 정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및 【별표12(질병특정고도장해 판정기준)】의 2.~8.에서 정한 장해상태에 해당되어 그 상태가 영구히 지속된다는 의사의 진단확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의사의 진단확정은 장해 상태의 원인이 되는 질병의 최초 진단일로부터

180일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상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최초 진단일로부터 180 일이 지난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장해상태를 결정합니다.

제5조(질병특정고도장해 소득보상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아래의 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질병특정고도장해 소득보상금으로 매년 사고 발생일에 확정 지급하여 드립니다.

구 분	지급금액
질병특정고도장해 소득보상금	보험가입금액의 10%를 10년간 확정지급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② 제1항의 금액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예정이율(연3.75%)로 할인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 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질 병특정고도장해 소득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만 15세 미만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2-11. 질병 80%이상후유장해 소득보상금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이 질병 80%이상후유장해 소득보상금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질병 80%이상후유장해 소득보상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를 적용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별약관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별약관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별약관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별표1(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③ 【별표1(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 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1(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 ④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5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별표1(장해분류표)] 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①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 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 감하여 지급합니다.
 - ①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질병소득보상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 ② 제1호 이외에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소득보상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질병소득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 图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⑨ 청약서상「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질병소득보상금을 지급하지아니합니다.
- ⑩ 제9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특별약관이 자동갱신 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 Ⅲ 제10항의「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12 보통약관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10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3조(질병 80%이상후유장해 소득보상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질병 80%이상후유장해 소득보상금으로 매년 사고발생일에 확정 지급합니다.

구 분	지급금액
질병 80%이상 후유장해 소득보상금	보험가입금액의 10%를 10년간 확정지급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② 제1항의 금액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예정이율(연3.75%)로 할인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 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질병 80%이상후유장해 소득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만 15세미만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2-12. 질병 80%이상후유장해 소득보상금[체증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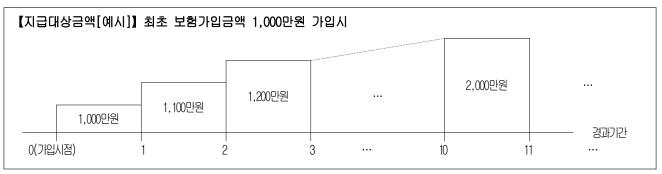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 이 질병 80%이상후유장해 소득보상금[체증형]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질병 80%이상후유장해 소득보상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를 점용했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별약관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별약관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별약관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별표1(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③ 【별표1(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 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1(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 ④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별표1(장해분류표)] 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 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①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 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 감하여 지급합니다.
 - ①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질병소득보상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 았던 후유장해
 - ② 제1호 이외에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소득보상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질병소득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 图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⑨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 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질병소득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10] 제9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특별약관이 자동갱신 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 Ⅲ 제10항의「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① 보통약관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10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3조(질병 80%이상후유장해 소득보상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사고일이 속한 경과기간에 따라 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이하「최초 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을 기준으로 매년 최초 보험가입금액의 10%씩 체증한 금액(이하「지급대상금액」이라 합니다)을 아래의 방법에 따라 최초 1회에 한하여 질병 80%이상후유장해 소득보상금으로 매년 사고발생일에 확정 지급합니다.

구 분	지급금액
질병 80%이상후유장해 소득보상금	지급대상금액의 10%를 10년간 확정지급
글당 0UM에정부ㅠ당에 소득보당급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② 제1항의 금액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예정이율(연3.75%)로 할인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 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질병 80%이상후유장해 소득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만 15세미만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2-13. 질병 50%이상후유장해 소득보상금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이 질병 50%이상후유장해 소득보상금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질병 50%이상후유장해 소득보상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를 적용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별약관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별약관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별약관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별표1(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③ 【별표1(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 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1(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 ④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별표1(장해분류표)] 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 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7]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 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 감하여 지급합니다.
 - ①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질병소득보상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 았던 후유장해
 - ② 제1호 이외에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소득보상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질병소득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 图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⑨ 청약서상「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질병소득보상금을 지급하지아니합니다.
- 10 제9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특별약관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 Ⅲ 제10항의「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12 보통약관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10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3조(질병 50%이상후유장해 소득보상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질병 50%이상후유장해 소득보상금으로 매년 사고발생일에 확정 지급합니다.

구 분	지급금액
질병 50%이상후유장해 소득보상금	보험가입금액의 10%를 10년간 확정지급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② 제1항의 금액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예정이율(연3.75%)로 할인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 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질병 50%이상후유장해 소득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만 15세 미만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2-14. 질병 50%이상후유장해 소득보상금[체증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이 질병 50%이상후유장해 소득보상금[체증형]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질병 50%이상후유장해 소득보상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를 적용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별약관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별약관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별약관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별표1(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③ 【별표1(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 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1(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 ④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별표1(장해분류표)】 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7]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 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 감하여 지급합니다.
 - ①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질병소득보상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 있던 후유장해
 - ② 제1호 이외에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소득보상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질병소득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 图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⑨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 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질병소득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10 제9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특별약관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 Ⅲ 제10항의「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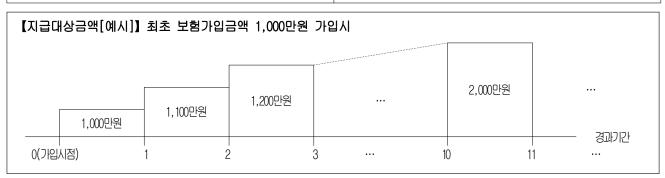
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① 보통약관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10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3조(질병 50%이상후유장해 소득보상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사고일이 속한 경과기간에 따라 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이하「최초 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을 기준으로 매년 최초 보험가입금액의 10%씩 체증한 금액(이하「지급대상금액」이라 합니다)을 아래의 방법에 따라 최초 1회에 한하여 질병 50%이상후유장해 소득보상금으로 매년 사고발생일에 확정 지급합니다.

구 분	지급금액
질병 50%이상후유장해 소득보상금	지급대상금액의 10%를 10년간 확정지급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② 제1항의 금액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예정이율(연3.75%)로 할인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 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질병 50‰이상후유장해 소득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만 15세 미만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2-15. 갱신형 암진단비보장 특별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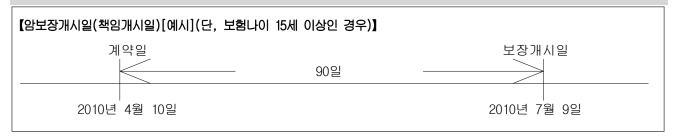
제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 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터 이 갱신형 암진단비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이 약관에서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부터 이 특별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일을 기준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 제4조(암, 상피내암, 기타피부암, 경계성 종양, 갑상샘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이하「암」이라 합니다)에 대한 회사의 보장은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하「암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합니다)에 시작합니다. 다만,「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이 자동갱신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③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 ①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5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 ② 보통약관 제2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③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까지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 제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암」으로 진단확정되거나 제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상피내암」,「기타피부암」,「경계성 종양」또는「갑상샘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암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다만,「암」,「상피내암」,「기타피부암」,「경계성 종양」 및「갑상샘암」은 각각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청약서상「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 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암진단비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특별약관이 자동갱신 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의「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④ 보통약관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4조(암, 상피내암, 기타피부암, 경계성 종양, 갑상샘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별표8(악성신생물(암)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와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및 C73(갑상샘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은 제외합니다.

②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상피내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9(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③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8(악성신생물(암)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 ④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경계성 종양」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별표10(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 5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갑상샘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암」중에서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의 분류번호C73(갑상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별표8(악성신생물(암)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 [6] 「암」,「상피내암」,「기타피부암」,「경계성 종양」또는「갑상샘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암」,「상피내암」,「기타피부암」,「경계성 종양」또는「갑상샘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5조(암진단비)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진단확정시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아래의 금액을 암진단비로 지급합니다.

구 분	지급금액	
T E	가입후 1년 미만	가입후 1년 이상
암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50% (단,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보험가입금액의 100% (단,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상피내암, 기타피부암, 경계성 종양, 갑상샘암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10% (단, 각각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보험가입금액의 20% (단, 각각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다만, 「암」 진단 확정후 「상피내암」, 「기타피부암」, 「경계성 종양」 또는 「갑상샘암」 으로 진단 확정시에는 상피내암진단비, 기타피부암진단비, 경계성 종양진단비 또는 갑상샘암진단비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이 자동갱신되는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진단확정시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아래의 금액을 암진단비로 지급합니다.

구 분	지급금액
암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단,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상피내암, 기타피부암, 경계성 종양, 갑상샘암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20% (단, 각각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암」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또는 제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에서 정한 보장 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상피내암」,「기타피부암」,「경계성 종양」 또는 「갑상샘암」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암진단비를 지급합니다.

제6조(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다만, 갱신시점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로부터 갱신종료보험나이(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한 갱신종료보험나이를 말합니다)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으로합니다.

제7조(보험료의 대체 납입)

- ①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하는 방법(이하「보험료의 대체납입」이라 합니다)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가 전액 충당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추가로 납입하여 야 합니다.

제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및 제2항의 암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9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 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항에서 정한 최초계약의 암보

- 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
- ②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 또는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진단비(「상피내암」,「기타피부암」,「경계성 종양」및「갑상샘암」진단시 제외)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만 15세미만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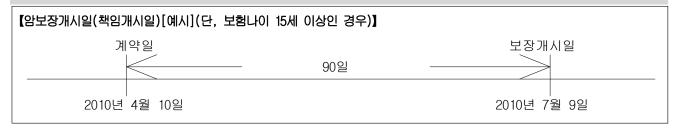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2-16. 갱신형 암진단비[체증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배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 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터 이 갱신형 암진단비[체증형]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이 약관에서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부터 이 특별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일을 기준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 제4조(암, 상피내암, 기타피부암, 경계성 종양, 갑상샘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이하「암」이라 합니다)에 대한 회사의 보장은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하「암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합니다)에 시작합니다. 다만,「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이 자동갱신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 ③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 ①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5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 ② 보통약관 제2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③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까지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 제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암」으로 진단확정되거나 제1

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상피내암」,「기타피부암」,「경계성 종양」또는「갑상샘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암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다만,「암」,「상피내암」,「기타피부암」,「경계성 종양」 및「갑상샘암」은 각각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청약서상「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 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암진단비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특별약관이 자동갱신 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 ③ 제2항의「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④ 보통약관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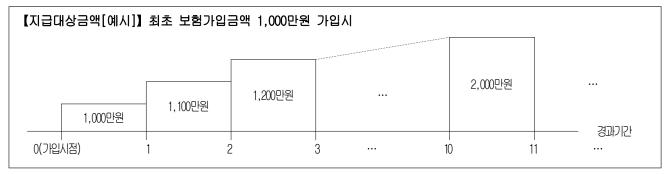
제4조(암, 상피내암, 기타피부암, 경계성 종양, 갑상샘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별표8(악성신생물(암)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와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및 C73(갑상샘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은 제외합니다.
- ②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상피내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9(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 ③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8(악성신생물(암)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 ④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경계성 종양」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별표10(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 ⑤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갑상샘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암」중에서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의 분류번호C73(갑상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별표8(악성신생물(암)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 [6] 「암」,「상피내암」,「기타피부암」,「경계성 종양」 또는「갑상샘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암」,「상피내암」,「기타피부암」,「경계성 종양」 또는「갑상샘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5조(암진단비)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진단확정시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사고일이 속한 경과기간에 따라 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이하「최초 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을 기준으로 매년 최초 보험가입금액의 10%씩 체증한 금액(이하「지급대상금액」이라 합니다)을 아래의 방법에 따라 최초 1회에 한하여 암진단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구 분	지급	금액	
T E	가입후 1년 미만	가입후 1년 이상	
암 진단시	지급대상금액의 50%	지급대상금액의 100%	
음 선단시	(단,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단,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상피내암, 기타피부암,	지급대상금액의 10%	지급대상금액의 20%	
경계성 종양, 갑상샘암 진단시	(단, 각각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단, 각각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다만, 「암」 진단 확정후 「상피내암」, 「기타피부암」, 「경계성 종양」 또는 「갑상샘암」 으로 진단 확정시에는 상피내암진단비, 기타피부암진단비, 경계성 종양진단비 또는 갑상샘암진단비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이 자동갱신되는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진단확정시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아래의 금액을 암진단비로 지급합니다.

구 분	지급금액
암 진단시	지급대상금액의 100% (단,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상피내암, 기타피부암, 경계성 종양, 갑상샘암 진단시	지급대상금액의 20% (단, 각각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암」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또는 제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에서 정한 보장 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상피내암」,「기타피부암」,「경계성 종양」 또는 「갑상샘암」 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암진단비를 지급합니다.

제6조(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다만, 갱신시점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로부터 갱신종료보험나이(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한 갱신종료보험나이를 말합니다)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으로합니다.

제7조(보험료의 대체 납입)

- ①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하는 방법(이하「보험료의 대체납입」이라 합니다)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가 전액 충당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추가로 납입하여 야 합니다.

제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및 제2항의 암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9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 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항에서 정한 최초계약의 암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
- ②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 또는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

진단비(「상피내암」,「기타피부암」,「경계성 종양」및「갑상샘암」진단시 제외)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만 15세 미만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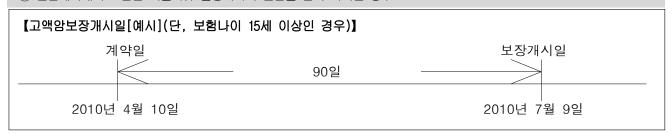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2-17. 갱신형 고액암진단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 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터 이 갱신형 고액암진단비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이 특별약관에서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부터 이 특별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일을 기준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 제4조(고액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고액암(이하「고액암」이라 합니다)에 대한 회사의 보장은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책임개 시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하「고액암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합니다)에 시작합니다. 다만,「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이 자동갱신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 ③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 ①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5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 ② 보통약관 제2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③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까지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 제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항에서 정한 고액암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고액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고액암진단비를 지급합니다.

- ① 청약서상「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 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고액암진단비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특별약관이 자동갱신

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 ③ 제2항의「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④ 보통약관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4조(고액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고액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고액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별표 13(고액암분류표)】에서 정한 식도의 악성신생물, 췌장의 악성신생물,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부위의 악성신생물,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상기분류에서 제외합니다.

② 고액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액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5조(고액암진단비)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진단확정시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아래의 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고액암진단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고분 기급금액		금액
十七	가입후 1년 미만	가입후 1년 이상
고액암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진단확정시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이 자동갱신되는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진단확정시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아래의 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고액암진단 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구 분	지급금액
고액암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액암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고액암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고액암진단비를 지급합니다.

제6조(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다만, 갱신시점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로부터 갱신종료보험나이(최 초 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한 갱신종료보험나이를 말합니다)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7조(보험료의 대체 납입)

- ①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하는 방법(이하「보험료의 대체납입」이라 합니다)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가 전액 충당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추가로 납입하여 야 합니다.

제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및 제2항의 고액암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9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 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항에서 정한 최초계약의 고액 암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고액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
- ②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 또는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고액암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만 15세미만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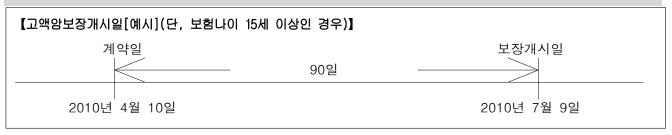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2-18. 갱신형 고액암진단비[체증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배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 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터 이 갱신형 고액암진단비[체증형]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이 특별약관에서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부터 이 특별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일을 기준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 제4조(고액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고액암(이하「고액암」이라 합니다)에 대한 회사의 보장은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책임개 시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하「고액암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합니다)에 시작합니다. 다만,「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이 자동갱신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 ③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 ①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5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 ② 보통약관 제2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③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까지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 제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항에서 정한 고액암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고액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고액암진단비를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청약서상「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 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고액암진단비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특별약관이 자동갱신 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 ③ 제2항의「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④ 보통약관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4조(고액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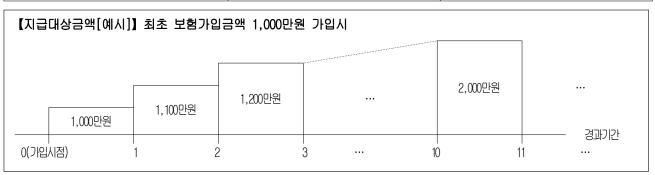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고액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고액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별표 13(고액암분류표)】에서 정한 식도의 악성신생물, 췌장의 악성신생물,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부위의 악성신생물,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상기분류에서 제외합니다.

② 고액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액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5조(고액암진단비)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진단확정시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사고일이 속한 경과기간에 따라 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이하「최초 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을 기준으로 매년 최초 보험가입금액의 10%씩 체증한 금액(이하「지급대상금액」이라 합니다)을 아래의 방법에 따라 최초 1회에 한하여 고액암진단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구분	지급금액	
十七	가입후 1년 미만	가입후 1년 이상
고액암 진단확정시	지급대상금액의 50%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지급대상금액의 100%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이 자동갱신되는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진단확정시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아래의 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고액암진단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구 분	지급금액
고액암 진단확정시	지급대상금액의 100%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액암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고액암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고액암진단비를 지급합니다.

제6조(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다만, 갱신시점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로부터 갱신종료보험나이(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한 갱신종료보험나이를 말합니다)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으로합니다.

제7조(보험료의 대체 납입)

- ①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하는 방법(이하「보험료의 대체납입」이라 합니다)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가 전액 충당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추가로 납입하여 야 합니다.

제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의 보장개시일(책임개 시일) 및 제2항의 고액암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9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 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항에서 정한 최초계약의 고액 암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고액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
- ②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 또는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고액암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만 15세 미만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2-19. 갱신형 여성3대암진단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배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 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터 이 갱신형 여성3대암진단비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이 특별약관에서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부터 이 특별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여성3대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은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하「여성3대암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합니다)에 시작합니다. 다만,「자동갱신 특별약

- 관」에 따라 보장이 자동갱신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 ③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 ①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5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 ② 보통약관 제2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③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까지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 제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항에서 정한 여성3대암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여성3대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여성3대암진단비를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청약서상「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 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여성3대암진단비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특별약관이 자동갱신 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 ③ 제2항의「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④ 보통약관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4조(여성3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여성3대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여성3대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별표14(여성3대암 분류표)】에서 정한 위의 악성신생물, 유방의 악성신생물, 자궁목의 악성신생물, 자궁체의 악성신생물, 상세불명 자궁부위의 악성신생물, 난소의 악성신생물, 태반의 악성신생물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상기분류에서 제외합니다.
- ②「여성3대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여성3대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5조(여성3대암진단비)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진단확정시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여성3대암진단비로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十七	가입후 1년미만	가입후 1년이상
여성3대암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50% (단,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보험가입금액의 100% (단,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이 자동갱신되는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진단확정시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여성3대암 진단비로 지급합니다.

구 분	지급금액
여성3대암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단,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여성3대암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여성3대암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여성3대암진단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6조(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다만, 갱신시점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로부터 갱신종료보험나이(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한 갱신종료보험나이를 말합니다)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으로합니다.

제7조(보험료의 대체 납입)

- ①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하는 방법(이하「보험료의 대체납입」이라 합니다)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가 전액 충당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추가로 납입하여 야 합니다.

제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항의 여성3대암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9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 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항에서 정한 최초계약의 여성3 대암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여성3대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
- ②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 또는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여성3대암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2-20. 갱신형 뇌졸중진단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이 갱신형 뇌졸중진단비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 뇌졸중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청약서상「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 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뇌졸중진단비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특별약관이 자동갱신 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 ③ 제2항의「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④ 보통약관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3조(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뇌졸중」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뇌졸중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15 뇌졸중대상질병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 ②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법(MA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 착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여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뇌졸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합니다.

제4조(뇌졸중진단비)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진단확정시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아래의 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뇌졸중진단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구 분	지급금액
뇌졸중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420 0000	(단,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뇌졸중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의 뇌졸중진단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다만, 갱신시점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로부터 갱신종료보험나이(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한 갱신종료보험나이를 말합니다)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으로합니다.

제6조(보험료의 대체 납입)

- ①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하는 방법(이하「보험료의 대체납입」이라 합니다)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가 전액 충당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추가로 납입하여 야 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 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졸중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만 15세 미만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2-21. 갱신형 뇌졸중진단비[체증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 이 갱신형 뇌졸중진단비[체증형]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뇌졸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뇌졸중진단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청약서상「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 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뇌졸중진단비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특별약관이 자동갱신 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의「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④ 보통약관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3조(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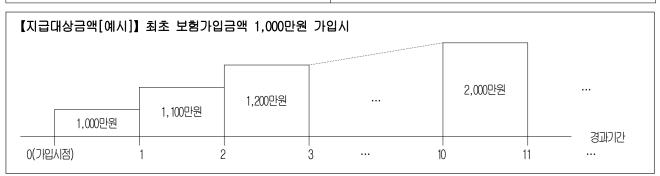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뇌졸중」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뇌졸중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15 뇌졸중대상질병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②「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법(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 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여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뇌졸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합니다.

제4조(뇌졸중진단비)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진단확정시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사고일이 속한 경과기간에 따라 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이하「최초 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을 기준으로 매년 최초 보험가입금액의 10%씩 체증한 금액(이하「지급대상금액」이라 합니다)을 아래의 방법에 따라 최초 1회에 한하여 뇌졸중진단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구 분	지급금액
뇌졸중 진단확정시	지급대상금액의 100% (단,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뇌졸중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의 뇌졸중진단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다만, 갱신시점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로부터 갱신종료보험나이(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한 갱신종료보험나이를 말합니다)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으로합니다.

제6조(보험료의 대체 납입)

- ①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하는 방법(이하「보험료의 대체납입」이라 합니다)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가 전액 충당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추가로 납입하여 야 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 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졸중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만 15세 미만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2-22. 갱신형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이 갱신형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 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특별약관이 자동갱신 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 ③ 제2항의「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④ 보통약관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3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16(급성심근경색증대상질병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 ②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 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여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4조(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진단확정시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아래의 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구 분	지급금액
급성심근경색증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단,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의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다만, 갱신시점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로부터 갱신종료보험나이(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한 갱신종료보험나이를 말합니다)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으로합니다.

제6조(보험료의 대체 납입)

- ①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하는 방법(이하「보험료의 대체납입」이라 합니다)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가 전액 충당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추가로 납입하여 야 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 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만 15세미만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2-23. 갱신형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체증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이 갱신형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체증형]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를 지급하여드립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 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특별약관이 자동갱신 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 ③ 제2항의「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④ 보통약관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3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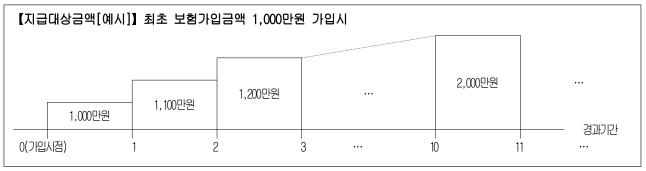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16(급성심근경색증대상질병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②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 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 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여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4조(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진단확정시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사고일이 속한 경과기간에 따라 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이하「최초 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을 기준으로 매년 최초 보험가입금액의 10%씩 체증한 금액(이하「지급대상금액」이라 합니다)을 아래의 방법에 따라 최초 1회에 한하여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구 분	지급금액
급성심근경색증 진단확정시	지급대상금액의 100% (단,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의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다만, 갱신시점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로부터 갱신종료보험나이(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한 갱신종료보험나이를 말합니다)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으로합니다.

제6조(보험료의 대체 납입)

- ①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하는 방법(이하「보험료의 대체납입」이라 합니다)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가 전액 충당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추가로 납입하여 아 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 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만 15세 미만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2-24. 말기폐질환진단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 이 말기폐질환진단비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별표17(말기폐질환)】에서 정한「말기폐질환」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말기폐질환진단비를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청약서상「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 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말기폐질환진단비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특별약관이 자동갱신 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 ③ 제2항의「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④ 보통약관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3조(말기폐질환진단비)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진단확정시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아래의 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말기폐질환진단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구 분	지급금액
말기폐질환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단,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말기폐질환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의 말기폐질환진단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 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말기폐질환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2-25. 말기간경화진단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이 말기간경화진단비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별표18

(말기간경화)】에서 정한「말기간경화」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말기간경화진단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청약서상「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 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말기간경화진단비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특별약관이 자동갱신 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 ③ 제2항의「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④ 보통약관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3조(말기간경화진단비)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진단확정시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아래의 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말기간경화진단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구 분	지급금액
말기간경화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단,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말기간경화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의 말기간경화진단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 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말기간경화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2-26. 만성당뇨합병증진단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 이 만성당뇨합병증진단비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만 성당뇨합병증」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만성당뇨합병증진단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청약서상「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 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만성당뇨합병증진단비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특별약관이 자동갱신 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 ③ 제2항의「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

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④ 보통약관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3조(만성당뇨합병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만성당뇨합병증」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한군표준질병분류상 E10~E14 (당뇨병)의 4단위 세분류항목에서 다음에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① .2+ : 콩팥(신장) 합병증을 동반
- ② .3+ : 눈합병증을 동반
- ③ .4+ :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
- 4) .5 : 말초순환장애 합병증을 동반

② 제1항의「만성당뇨합병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반드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당뇨병의 병력과 함께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합병증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① 당뇨병성 망막증 : 내과와 안과에서 시행한 안저검사 및 형광 안저혈관 조형술을 시행하여 망막 출혈반, 미세동맥류, 면화반, 부종 등의 소견이 보이는 경우
- ② 당뇨병성 신증: 소변검사상 단백뇨가 생길수 있는 다른 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24시간 소변에서 단백질 500mg이상 검출된 경우(단백뇨군으로 분류), 혈청 크레아틴치가 1.5mg/dl이상인 경우(당뇨로 인한 신부전증으로 분류)
- ③ 당뇨병성 신경병증 : 말초신경병증과 자율신경병증으로 구분하여 신경전도검사상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이상소견을 보이거나 Ewing방법에 의한 심혈관계 자율신경 기능검사상 이상이 있는 경우
- ④ 당뇨병성 말초순환장애 : 이학적검사상 피부궤양(Ulcer), 괴저(Gangrene) 및 말초혈관병증(Peripheral Angiopathy)이 있는 경우

제4조(만성당뇨합병증진단비)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진단확정시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최초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만성당뇨합병증진단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구 분	지급금액
만성당뇨합병증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단,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만성당뇨합병증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의 만성당뇨합병증진단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 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만성당뇨합병증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2-27. 양성뇌종양진단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 이 양성뇌종양진단비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양성뇌종양진단비를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청약서상「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 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양성뇌종양진단비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 ③ 제2항의「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④ 보통약관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3조(양성뇌종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양성뇌종양」이라 함은 생명에 치명적이며 암이 아닌 뇌에 발생한 병리조직학적 양성뇌종양을 말하며 뇌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두개내(머리내)의 종양을 포함합니다.
- ② 제1항의「양성뇌종양」은 신경외과적 절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함의 원인이(수술로 인해) 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낭종, 육아종, 혈종, 뇌농양, 뇌의 정맥기형 또는 동맥기형은 양성뇌종양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③「양성뇌종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증을 가진 자(이하「의사」라고 합니다)중 신경과의사 또는 신경외과의사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검사상 객관적인 이상소견(Sign)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 (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조직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말합니다)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양성뇌종양」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양성뇌종양진단비)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진단확정시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양성뇌종양진단비로 지급합니다.

구 분	지급금액
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단,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의 시기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양성뇌종양」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의 양성뇌종양진단비를 지급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 또는 제4조(양성뇌종양진단비)에서 정한 양성뇌종양진 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만 15세 미만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2-28. 갱신형 식중독위로금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이 갱신형 식중독위로금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음식물의 섭취로 인한 중독(이하「식중독」이라 합니다)으로 4일이상 입원(병원 또는 의원 등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식중독위로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입원하지 않고 외래진료만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1]「식중독」이라 함은 음식물을 먹고 생기는 구토, 설사, 복통을 주요증세로 하는 급성질환으로서 [별표19(식중독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분류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식중독」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만, 식중독위로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 로운 입원으로 간주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④ 청약서상「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식중독위로금을 지급하지아니합니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특별약관이 자동갱신 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 ⑥ 제5항의「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① 보통약관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5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3조(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다만, 갱신시점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로부터 갱신종료보험나이(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한 갱신종료보험나이를 말합니다)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으로합니다.

제4조(보험료의 대체 납입)

- ①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하는 방법(이하「보험료의 대체납입」이라 합니다)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가 전액 충당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추가로 납입하여 야 합니다.

제5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①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만 15세 미만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제 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2-29. 갱신형 특정전염병위로금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이 갱신형 특정전염병위로금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전염병예방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전염병 중 【별표20(특정전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특정전염병위로금으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진단」이라 함은 전염병의 병원체가 인체 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자가 전염병예방법 제4조 제2항의 진단기준에 의한 의사의 진단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이 된 것을 말합니다.
- ②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 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특정전염병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특별약관이 자동갱신 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 ④ 제3항의「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5 보통약관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3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3조(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다만, 갱신시점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로부터 갱신종료보험나이(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한 갱신종료보험나이를 말합니다)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으로합니다.

제4조(보험료의 대체 납입)

- ①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 에서 대체하는 방법(이하「보험료의 대체납입」이라 합니다)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가 전액 충당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추가로 납입하여 야 합니다.

제5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①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만 15세 미만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2-30. 갱신형 암수술비(1)보장 특별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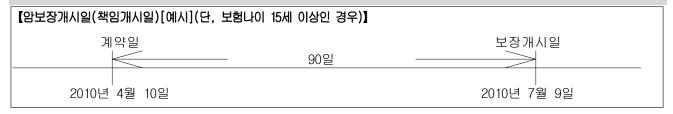
제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배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 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터 이 갱신형 암수술비(I)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이 약관에서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부터 이 특별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일을 기준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 제4조(암, 상피내암, 기타피부암, 경계성 종양, 갑상샘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이하「암」이라 합니다)에 대한 회사의 보장은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하「암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합니다)에 시작합니다. 다만,「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이 자동갱신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③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 ①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5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 ② 보통약관 제2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③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까지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 제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암」으로 진단확정되거나제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상피내암」,「기타피부암」,「경계성 종양」또는「갑상샘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5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수술을받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암수술비(ㅣ)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청약서상「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 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암수술비(I)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특별약관이 자동갱신 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의「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④ 보통약관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4조(암, 상피내암, 기타피부암, 경계성 종양, 갑상샘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별표8(악성신생물(암)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와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및 C73(갑상샘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은 제

외합니다.

- ②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상피내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9(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 ③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8(악성신생물(암)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 ④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경계성 종양」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별표10(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 ⑤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갑상샘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암」중에서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의 분류번호073(갑상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 (【별표8(악성신생물(암)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 ⑥「암」,「상피내암」,「기타피부암」,「경계성 종양」또는「갑상샘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암」,「상피내암」,「기타피부암」,「경계성 종양」또는「갑상샘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5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수술」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암」,「상피내암」,「기타피부암」,「경계성 종양」또는「갑상샘암」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의사의 관리하에「암」,「상피내암」,「기타피부암」,「경계성 종양」또는「갑상샘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제6조(암수술비(1))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수술시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수술1회당 아래의 금액을 암수술비(I)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구 분	지급금액	
十 世	가입후 1년미만	가입후 1년이상
암, 상피내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샘암 수술시	보험가입금액의 10%	보험가입금액의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이 자동갱신되는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수술시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수술1회당 아래의 금액을 암수술비(I)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구분	지급금액
암, 상피내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보험가입금액의 20%
갑상샘암 수술시	도염기업급취의 20%

제7조(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다만, 갱신시점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로부터 갱신종료보험나이(최 초 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한 갱신종료보험나이를 말합니다)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8조(보험료의 대체 납입)

- ①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하는 방법(이하「보험료의 대체납입」이라 합니다)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가 전액 충당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추가로 납입하여 아 합니다.

제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및 제2항의 암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10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 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항에서 정한 최초계약의 암보 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
- ②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①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만 15세 미만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2-31. 갱신형 암수술비(Ⅱ)보장 특별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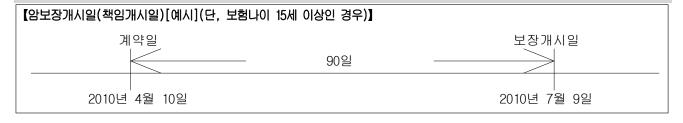
제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배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 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터 이 갱신형 암수술비(II)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이 약관에서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부터 이 특별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일을 기준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 제4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이하「암」이라 합니다)에 대한 회사의 보장은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하「암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합니다)에 시작합니다. 다만,「자동갱신특별약관」에 따라 보장이 자동갱신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③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4]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 ①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5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 ② 보통약관 제2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③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까지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 제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5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암수술비(Ⅱ)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청약서상「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암수술비(II)를 지급하지아니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특별약관이 자동갱신 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 ③ 제2항의「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④ 보통약관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4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별표8(악성신생물(암)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와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및 C73(갑상샘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은 제외합니다.

②「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5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OK)은 제외합니다.

제6조(암수술비(11))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수술시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최초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암수술비(II)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구 분	지급금액	
T E	가입후 1년미만	가입후 1년이상
암 수술시	보험가입금액의 40% (단,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보험가입금액의 80% (단,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이 자동갱신되는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수술시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최초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암수술비(II)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구분	지급금액
암 수술시	보험가입금액의 80%
	(단,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제7조(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다만, 갱신시점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로부터 갱신종료보험나이(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한 갱신종료보험나이를 말합니다)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으로합니다.

제8조(보험료의 대체 납입)

- ①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하는 방법(이하「보험료의 대체납입」이라 합니다)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가 전액 충당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추가로 납입하여 야 합니다.

제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항의 암보장개시일(책임 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10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 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항에서 정한 최초계약의 암보 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
- ②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특별약관의 소멸)

□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 또는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수술비(Ⅱ)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만 15세 미만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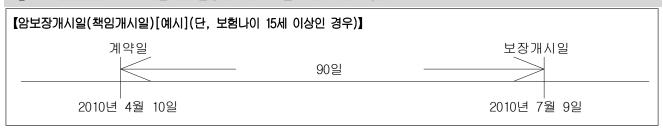
2-32. 갱신형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 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터 이 갱신형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이 약관에서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부터 이 특별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일을 기준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 제4조(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이하「암」이라 합니다)에 대한 회사의 보장은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 일(책임개시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하「암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합니다)에 시작합니

- 다. 다만.「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이 자동갱신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 ③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 ①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5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 ② 보통약관 제2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③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까지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 제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암」으로 진단확정되거나제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기타피부암」또는「갑상샘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5조(항암방사선·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청약서상「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 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특별약관이 자동갱신 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 ③ 제2항의「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④ 보통약관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4조(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별표8(악성신생물(암)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와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및 C73(갑상샘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은 제외합니다.
- ②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8(악성신생물(암)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 ③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갑상샘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암」중에서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의 분류번호073(갑상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별표8(악성신생물(암)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 ④「암」,「기타피부암」또는「갑상샘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 대상자)가「암」,「기타피부암」또는「갑상샘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5조(항암방사선·약물치료의 정의)

□ 이 특별약관에 있어「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치료방사선과 또는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암」,「기타피부암」또는「갑상샘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암」,「기타피부암」또는「갑상샘암」을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암」,「기타피부암」또는「갑상샘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6조(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약물치료시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최초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구 분	지급금액	
구 돈	가입후 1년미만	가입후 1년이상
암으로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항암방사선·약물치료시	(단,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단,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기타피부암, 갑상샘암으로	보험가입금액의 10%	보험가입금액의 20%
항암방사선·약물치료시	(단, 각각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단, 각각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다만, 「암」으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를 받은 후「기타피부암」또는「갑상샘암」으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기타피부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또는 갑상샘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이 자동갱신되는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약물치료시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최초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로 지급합니다.

구 분	지급금액
암으로	보험가입금액의 100%
항암방사선·약물치료시	(단,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기타피부암, 갑상샘암으로	보험가입금액의 20%
항암방사선·약물치료시	(단, 각각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제7조(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다만, 갱신시점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로부터 갱신종료보험나이(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한 갱신종료보험나이를 말합니다)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으로합니다.

제8조(보험료의 대체 납입)

- ①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하는 방법(이하「보험료의 대체납입」이라 합니다)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가 전액 충당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추가로 납입하여 야 합니다.

제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및 제2항의 암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10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 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항에서 정한 최초계약의 암보

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

②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 또는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으로 인한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기타피부암」및「갑상샘암」으로 인한 항암방사선·약물치료시 제외)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만 15세미만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2-33. 7대질병수술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이 7대질병수술비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7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7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7대질병수술비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 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7대질병수술비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특별약관이 자동갱신 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 ③ 제2항의「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④ 보통약관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3조(7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의「7대질병」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7대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별표21(7대 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고혈압, 당뇨병, 만성하기도질환, 위십이지장궤양을 말합니다.

② 「7대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단, 뇌혈관질환의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 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법(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고, 심장질환 중 허혈성심장질환의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7 대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7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제5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만 15세미만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2-34. 피부질환수술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 이 피부질환수술비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피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피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수술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피부질환수술비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피부질환수술비를 지급하지아니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특별약관이 자동갱신 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 ③ 제2항의「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④ 보통약관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3조(피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의 「피부질환」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피부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별표22(피부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감염, 수포성 장애, 피부염 및 습진, 구진비늘 장애, 두드러기 및 홍반,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방사선 관련성 장애, 피부 부속기의 장애 및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기타 장애를 말합니다.
- ②「피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피부질환」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피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제5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1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만 15세미만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2-35. 호흡기관련질병수술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이 호흡기관련질병수술비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호흡기관련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호흡기관련질병수술비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청약서상「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 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호흡기관련질병수술비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특별약관이 자동갱신 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 ③ 제2항의「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④ 보통약관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3조(호흡기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의「호흡기관련질병」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호흡기관련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별표23(호흡기관련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상기도질환, 상세불명의 상기도질환,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단순성 및 점액농성 만성기관지염, 상세불명의 만성기관지염, 천식 및 천식지속 상태, 또는 폐렴, 리지오넬라병, 폐렴이 합병된 홍역을 말합니다.
- ②「호흡기관련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호흡기관련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호흡기관련질병」의 치료를 직접적 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비늘 또는 관을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제5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①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만 15

세 미만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2-36. 충수염수술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 이 충수염수술비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충수염(맹장염)」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때에는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충수염수술비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청약서상「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 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충수염수술비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특별약관이 자동갱신 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 ③ 제2항의「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④ 보통약관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3조(충수염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의「충수염(맹장염)」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충수염(맹장염)」으로 분류되는 질병 (【별표24(충수염(맹장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 ② 「충수염(맹장염)」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충수염(맹장염)」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충수염(맹장염)」의 치료를 직접적 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 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충수염수술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만 15세 미만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2-37.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이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특별약관이 자동갱신 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 ③ 제2항의「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④ 보통약관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3조(조혈모세포이식수술의 정의 및 진단 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각종 혈액질환 및 악성종양 치료시 발생되는 골수부전상태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목적으로 정상적인 조혈모세포(hematopoietic stem cell)를 이식하는 시술로서 관련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무 균실이 있는 골수이식의료기관에서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한 동종(골수, 말초)조혈모세포이식, 자가(골수, 말초)조혈모세포이 식,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 시술을 말합니다. 다만, 조혈모세포를 제공하는 공여자로부터 조혈모세포를 채취하는 시술은 제 외합니다.
 - ① 「동종(allogenic)골수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가진 공여자의 골수내 조혈모세포를 골수부전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② 「동종(allogenic)말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가진 공여자의 말초혈액내 조혈모세포를 골수 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③「자가(autologous)골수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골수내 조혈모세포를 미리 채취하여 보관하였다가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시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④ 「자가(autologous)말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말초혈액내 조혈모세포를 미리 채취하여 보관하였다가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시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⑤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가 있는 제대혈내조혈모세포를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에게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조혈모세포이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조혈모세포이식」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OK)은 제외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 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만 15세 미만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2-38. 컴퓨터질환(VDT증후군)수술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이 컴퓨터질환(WDT증후군)수술비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에「컴퓨터질환(WDT증후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컴퓨터질환(WDT증후군)」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수술 1회당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컴퓨터질환(WDT증후군)수술비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청약서상「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 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컴퓨터질환(WDT증후군)수술 비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특별약관이 자동갱신 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 ③ 제2항의「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④ 보통약관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3조(컴퓨터질환(VDT증후군)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의「컴퓨터질환(VDT증후군)」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컴퓨터질환(VDT증후군)」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별표25(컴퓨터질환(VDT증후군) 분류표)】에서 정한 근육장애, 윤활막 및 힘줄장애, 결합조직의 기타 전신침습, 기타 연조직장애, 기타 관절연골장애 및 인대장애, 관절통(증)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관절의 경직, 경추상완증후 군 또는 팔의 단발 신경병증을 말합니다.
- ②「컴퓨터질환(VDT증후군)」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컴퓨터질환(VDT증후군)」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컴퓨터질환(VDT증후군)」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제5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 [2]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2-39. 갱신형 질병수술위로금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이 생신형 질병수술위로금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수술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질병수술위로금으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질병수술위로금은 매 사고시마다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수술위로금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질병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하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청약서상「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 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질병수술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특별약관이 자동갱신 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 ④ 제3항의「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5 보통약관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3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계약자의 고의
 - ④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질병수술위로금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①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F04~F99)
 - ②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000~099)
 - ④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
 - ⑤ 비만(E66)
 - ⑥ 비뇨기계 장애(N39, R32)
 - ⑦ 치핵, 비뇨기계장애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184, K60~K62)
 - ⑧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OO~KO8)

- ③ 회사는 아래의 목적의 치료를 위한 질병수술위로금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①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②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③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 ④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 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 단순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 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의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 ⑥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⑥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 ②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수술」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제5조(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다만, 갱신시점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로부터 갱신종료보험나이(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한 갱신종료보험나이를 말합니다)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으로합니다.

제6조(보험료의 대체 납입)

- ①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하는 방법(이하「보험료의 대체납입」이라 합니다)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가 전액 충당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추가로 납입하여 야 합니다.

제7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만 15세 미만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20조(만기횐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2-40. 갱신형 질병입원일당(1일이상)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이 갱신형 질병입원일당(1일이상)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병원 또는 의원 등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하였을 경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최초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질병입원일당으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1] 질병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②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만, 최종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합니다.
-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질병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따라 질병입원일당을 계속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④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질병입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⑤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 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질병입원일당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특별약관이 자동갱신 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 기 제6항의「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图 보통약관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6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계약자의 고의
 - ④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 ⑤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⑥ 성병
 - ⑦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⑧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①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 ②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 ③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④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4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질병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 견에 따라 질병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 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질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제5조(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다만, 갱신시점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로부터 갱신종료보험나이(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한 갱신종료보험나이를 말합니다)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으로합니다.

제6조(보험료의 대체 납입)

- ①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하는 방법(이하「보험료의 대체납입」이라 합니다)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가 전액 충당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추가로 납입하여 야 합니다.

제7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①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만 15세 미만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2-41. 갱신형 질병중환자실 입원일당(1일이상)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이 갱신형 질병중환자실 입원일당(1일이상)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합니다)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의 중환자실에 입원(병원 또는 의원 등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하였을 경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최초입원일로부터 입원 1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질병중환자실 입원일당으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을 말합니다.
- ② 질병중환자실 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③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만, 최종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합니다.
- ④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질병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따라 질병중환자실 입원일당을 계속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⑤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질병중환자실 입원일 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⑥ 청약서상「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 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질병중환자실 입원일당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7 제6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특별약관이 자동갱신 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 图 제7항의「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

우를 말합니다.

⑨ 보통약관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7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계약자의 고의
 - ④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 ⑤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⑥ 성병
 - ⑦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⑧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①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 ②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 ③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④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4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질병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질병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질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제5조(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다만, 갱신시점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로부터 갱신종료보험나이(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한 갱신종료보험나이를 말합니다)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으로합니다.

제6조(보험료의 대체 납입)

- ①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하는 방법(이하「보험료의 대체납입」이라 합니다)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가 전액 충당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추가로 납입하여 야 합니다.

제7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①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만 15세 미만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의료기관의 시설규격

2. 중환자실

- 가.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은 입원실 병상 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 나. 중환자실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되어야 하며, 무정전(無停電)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다. 중환자실의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 라. 병상 1개당 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생아만을 전담하는 중환자실(이하 "신생아중환자실"이라 한다)의 병상 1개당 면적은 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병상 1개당 면적"은 중환자실 내 간호사실, 당직실, 청소실, 기기창고, 청결실, 오물실, 린넨보관실을 제외한 환자 점유공간[중환자실 내에 있는 간호사 스테이션(station)과 복도는 병상 면적에 포함한다]을 병상 수로나는 면적을 말한다.
- 마.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수액주입기를 갖추고, 병상 수의 10퍼센트 이상 개수의 침습적 동맥혈압모니터, 병상 수의 30퍼센트 이상 개수의 인공 호흡기, 병상 수의 70퍼센트이상 개수의 보육기(신생아중환자실에만 해당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 바. 중환자실 1개 단위(Unit)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심전도기록기, 제세동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제세동기 대신 광선기와 집중치료기를 갖추어야 한다.
- 사. 중환자실에는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 아. 전담간호사를 두되, 간호사 1명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는 1.2명(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1.5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42. 갱신형 암입원일당보장 특별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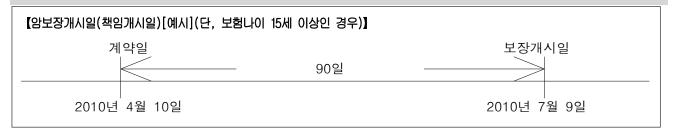
제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 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터 이 갱신형 암입원일당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이 특별약관에서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부터 이 특별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일을 기준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 제4조(암, 상피내암, 기타피부암, 경계성 종양, 갑상샘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이하「암」이라 합니다)에 대한 회사의 보장은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하「암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합니다)에 시작합니다. 다만,「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이 자동갱신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③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 ①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5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 ② 보통약관 제2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③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까지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 제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암」으로 진단확정되거나 제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상피내암」,「기타피부암」,「경계성종양」또는「갑상샘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4일이상 계속입원(병원 또는 의원 등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하여 제5조(입원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아래의 금액을 암입원일당으로 지급합니다.

구 분	지급금액
암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3일초과 1일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상피내암, 기타피부암, 경계성 종양 또는 갑상샘암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시	3일초과 1일당 보험가입금액의 20%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암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한「암」,「상피내암」,「기타피부암」,「경계성 종양」 또는「갑상샘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의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암」,「상피내암」,「기타피부암」,「경계성 종양」 또는「갑상샘암」에 대한 입원이라도 암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합니다.
-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암」,「상피내암」,「기타피부암」,「경계성 종양」또는「갑상샘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 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계속적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암입원일당을 계속 보장하여 드립니다.
- ④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암입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⑤ 청약서상「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 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암입원일당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특별약관이 자동갱신 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 ① 제6항의「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图 보통약관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6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4조(암, 상피내암, 기타피부암, 경계성 종양 및 갑상샘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별표8(악성신생물(암)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와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및 C73(갑상샘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은 제외합니다.
- ②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상피내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9(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 ③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8(악성신생물(암)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 ④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별표10(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 ⑤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갑상샘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암」중에서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의 분류번호C73(갑상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별표8(악성신생물(암)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 ⑥「암」,「상피내암」,「기타피부암」,「경계성 종양」또는「갑상샘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암」,「상피내암」,「기타피부암」,「경계성 종양」및「갑상샘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5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 (이하「의사」라합니다)에 의하여「암」,「상피내암」,「기타피부암」,「경계성 종양」또는「갑상샘암」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암」,「상피내암」,「기타피부암」,「경계성 종양」 또는「갑상샘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암」,「상피내암」,「기타피부암」,「경계성 종양」 또는「갑상샘암」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여,「암」,「상피내암」,「기타피부암」,「경계성 종양」 또는「갑상샘암」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암」,「상피내암」,「기타피부암」,「경계성 종양」 또는「갑상샘암」을 입원 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암」,「상피내암」,「기타피부암」,「경계성 종양」 또는「갑상샘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암」,「상피내암」,「기타피부암」,「경계성 종양」 또는「갑상샘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암」,「상피내암」,「기타피부암」,「경계성 종양」 또는「갑상샘암」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제6조(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다만, 갱신시점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로부터 갱신종료보험나이(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한 갱신종료보험나이를 말합니다)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으로합니다.

제7조(보험료의 대체 납입)

- ①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하는 방법(이하「보험료의 대체납입」이라 합니다)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가 전액 충당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추가로 납입하여 야 합니다.

제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및 제2항의 암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9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 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
- ②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①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만 15세 미만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2-43. 갱신형 7대질병입원일당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이 갱신형 7대질병입원일당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7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7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4일이상 계속 입원(병원 또는 의원 등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하였을 경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4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7대질병입원일당으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1 7대질병질병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②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만, 최종퇴원일부터 180일 경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합니다.
-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질병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따라 7대질병입원일당을 계속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④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7대질병입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⑤ 청약서상「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 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7대질병입원일당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특별약관이 자동갱신 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 기 제6항의「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图 보통약관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6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3조(7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의 「7대질병」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7대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별표21(7대 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고혈압, 당뇨병, 만성하기도질환, 위십이지장궤양을 말합니다.
- ② 「7대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단, 뇌혈관질환의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 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법(W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고, 심장질환 중 허혈성심장질환의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4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7대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7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7대질병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7대질병의 치료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7대질병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7대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7대질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7대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

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제5조(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다만, 갱신시점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로부터 갱신종료보험나이(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한 갱신종료보험나이를 말합니다)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으로합니다.

제6조(보험료의 대체 납입)

- ①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하는 방법(이하「보험료의 대체납입」이라 합니다)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가 전액 충당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추가로 납입하여 야 합니다.

제7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①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만 15세미만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 출)은 제외합니다.

2-44. 심장관련소아특정질병진단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 이 심장관련소아특정질병진단비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심장관련소아특정질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심장관련소아특정질병진단비를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청약서상「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 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심장관련소아특정질병진단비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특별약관이 자동갱신 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 ③ 제2항의「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④ 보통약관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3조(심장관련소아특정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 □ 이 특별약관에 있어「심장관련소아특정질병」이라 함은「심장합병증을 동반한 가와사키병(Kawasaki diseases with heart complication)」및「판막손상을 동반한 류마티스열(Rheumatic fever with valvular impairment)」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에서「심장합병증을 동반한 가와사키병(Kawasaki diseases with heart complication)」이라 함은 해당 전문의에 의하여 가와사키병으로 진단되고 심초음파상 반드시 가와사키병으로 인한 심장관상동맥의 확장이나 심장동맥류의 형성이 있어

야 합니다.

- ③ 제1항에서「판막손상을 동반한 류마티스열(Rheumatic fever with valvular impairment)」이라 함은 해당 전문의에 의해 류마티스열로 진단되고 심초음파상 반드시 류마티스열에 의한 한개 이상의 심장판막 손상이 있어야 합니다.
- ④ 「심장관련소아특정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자격증을 가진 자(이하「의사」라고 합니다)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심장관련소아특정질병」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심장관련소이특정질병진단비)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진단확정시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심장관련소아특정질병진단비로 지급합니다.

구 분	지급금액
심장관련소아특정질병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단,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심장관련소아특정질병」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의 심장관련소아특정질병진단비를 지급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 또는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서 정한 심장관련소아특정질병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만 15세 미만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2-45. 어린이12대다발성질환 입원일당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이 어린이12대다발성질환 입원일당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에「어린이12대다발성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4일이상 계속 입원(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하여 제4조(입원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받는 자)에게 4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어린이12대다발성질환 입원일당으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1 어린이12대다발성질환 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② 동일한「어린이12대다발성질환」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보험기간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만, 어린이12대다발성질환 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합니다.
-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어린이12대다발성질환」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 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12대다발성질환 입원 일당을 계속 보상하여 드립니다.
-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어린이12대다발성질

환 입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⑤ 청약서상「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 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어린이12대다발성질환 입원일당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특별약관이 자동갱신 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 기 제6항의「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图 보통약관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6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3조(어린이12대다발성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의「어린이12대다발성질환」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어린이12대다발성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별표32(어린이12대다발성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결핵, 바이러스 간염, 당뇨병, 수막염, 중이(가운데귀)염, 급성상기도 감염, 폐렴 및 급성기관지염, 천식, 만성 굴염, 충수염(맹장염), 헤르니아 및 장폐색 및 VDT증후군관련질환을 말합니다.

②「어린이12대다발성질환」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4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어린이12대다발성질환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어린이12대다발성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어린이12대다발성질환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어린이12대다발성질환의 치료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어린이12대다발성질환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어린이12대다발성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어린이12대다발성질환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어린이12대다발성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제5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만 15세 미만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2-46. 갱신형 시력치료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이 갱신형 시력치료비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함은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에 가입되어 있는 2세 이하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를 대상으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제1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6세 계약해당일이후의 보험기간 중에 안과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한쪽 눈 이상의 굴절도가 -6.25 디옵터(Diopter) 이상의 고도근시 또는 +4.25디옵터(Diopter) 이상의 고도원시로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시력치료비로 지급합니다. 단, 난시는 제외합니다.

【용어풀이】

디옵터(Diopter): 렌즈의 굴절력을 표시하는 단위로 초점거리의 역수로 표시합니다.

제3조(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다만, 갱신시점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로부터 갱신종료보험나이(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한 갱신종료보험나이를 말합니다)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으로합니다.

제4조(보험료의 대체납입)

- ①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하는 방법(이하「보험료의 대체납입」이라 합니다)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가 전액 충당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추가로 납입하여 야 합니다.

제5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진단명, 교정시력 및 굴절이상도(구면렌즈 기준)가 기재된 진단서, 조절마비제 투여후 자동굴절계에 의한 측정치 원본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 또는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시력치료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만 15세 미만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과 이미 남입한 보험료 중에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8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2-47. 갱신형 부정교합치료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이 갱신형 부정교합치료비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함은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에 가입되어 있는 2세 이하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제1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6세 계약해 당일 이후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Angle씨 부정교합 분류법의 II급 또는 III급으로 치과의사에 의해 판정받고 그로 인하여 교정치료를 요한다는 치과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부정교합치료비로 지급합니다.

< Angle씨 부정교합 분류 >

구 분	분 류
비급	하악대구치(아래 어금니)가 상악대구치(윗 어금니)에 비해 원심(안면에서 후
	방)쪽으로 치우쳐 있는 경우
III ⊐	하악대구치(아래 어금니)가 상악대구치(윗 어금니)에 비해 근심(안면에서 전
급 	방)쪽으로 치우쳐 있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한 지급사유 이외의 단순치열교정 등은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다만, 갱신시점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로부터 갱신종료보험나이(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한 갱신종료보험나이를 말합니다)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으로합니다.

제4조(보험료의 대체납입)

- ①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하는 방법(이하「보험료의 대체납입」이라 합니다)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가 전액 충당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추가로 납입하여 야 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 또는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부정교합치료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만 15세미만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8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3. 상해질병관련 특별약관

3-1. 갱신형 장기요양급여금(I)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 이 갱신형 장기요양급여금(I)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장기요양급여금(I)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의「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라 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1등급, 2등급 또는 3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청약서상「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 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장기요양급여금(I)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특별약관이 자동갱신 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 ③ 제2항의「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④ 보통약관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③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 ④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제4조(장기요양급여금(1))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아래의 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장기요양급여금(I)으로 매년 사고발생일에 확정 지급하여 드립니다.

구 분	지급금액
장기요양급여금(Ⅰ)	보험가입금액의 10%를 10년간 확정지급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② 제1항의 금액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예정이율(연3.75%)로 할인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다만, 갱신시점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로부터 갱신종료보험나이(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한 갱신종료보험나이를 말합니다)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으로합니다.

제6조(보험료의 대체 납입)

- ①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하는 방법(이하「보험료의 대체납입」이라 합니다)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가 전액 충당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추가로 납입하여 야 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 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장기요양급여금(I)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3-2. 갱신형 장기요양급여금(11)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 이 갱신형 장기요양급여금(II)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장기요양급여금(II)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라 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1등급 또는 2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 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장기요양급여금(II)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특별약관이 자동갱신 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의「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④ 보통약관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③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 ④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제4조(장기요양급여금(Ⅱ))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아래의 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장기요양급여금(II)으로 매년 사고발생일에 확정 지급하여 드립니다.

구 분	지급금액
장기요양급여금(॥)	보험가입금액의 10%를 10년간 확정지급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② 제1항의 금액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예정이율(연3.75%)로 할인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다만, 갱신시점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로부터 갱신종료보험나이(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한 갱신종료보험나이를 말합니다)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으로합니다.

제6조(보험료의 대체 납입)

- ①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하는 방법(이하「보험료의 대체납입」이라 합니다)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가 전액 충당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추가로 납입하여 야 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 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장기요양급여금(II)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3-3. 갱신형 장기요양급여금(Ⅲ)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 이 갱신형 장기요양급여금(Ⅲ)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장기요양급여금(Ⅲ)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라 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1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청약서상「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 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장기요양급여금(III)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특별약관이 자동갱신 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 ③ 제2항의「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④ 보통약관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③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 ④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제4조(장기요양급여금(١١١))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아래의 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장기요양급여금(III)으로 매년 사고발생일에 확정 지급하여 드립니다.

구 분	지급금액
장기요양급여금(Ⅲ)	보험가입금액의 10%를 10년간 확정지급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② 제1항의 금액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예정이율(연3.75%)로 할인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다만, 갱신시점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로부터 갱신종료보험나이(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한 갱신종료보험나이를 말합니다)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으로합니다.

제6조(보험료의 대체 납입)

- ①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하는 방법(이하「보험료의 대체납입」이라 합니다)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가 전액 충당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추가로 납입하여 야 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 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장기요양급여금(III)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3-4. 갱신형 부부 장기요양급여금(1)보장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 ① 이 갱신형 부부 장기요양급여금(I)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에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무배당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에 가입되어 있는 주피보험자(이하「주피보험자(주된보험대상자)」라 합니다)와 종피보험자(이하「종피보험자(추가보험대상자)」라 합니다)로 구성됩니다.
- ② 제1항의 종피보험자(추가보험대상자)는 주피보험자(주된보험대상자)의 기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로 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 가입시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입 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 이외의 원인(이혼 등)으로 제2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격을 더 이상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제1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에서 정한 주피보험자(주된보험대상자)와 종피보험자(추가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아래와 같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주피보험자(주된보험대상자)와 종피보험자(추가보험대상자) 중 1인이 최초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생자 장기요양급여금(I)(이하「선발생자 장기요양급여금(I)」이라 합니다)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호의 지급사유 발생 이후에 나머지 1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후발생자 장기요양급여금(I)(이하「후발생자 장기요양급여금(I)」이라 합니다)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의「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라 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1등급, 2등급 또는 3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서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이 자동갱신되는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후발생자 장기요양급여금(Ⅰ)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청약서상「계약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장기요양급여금(I)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특별약관이 자동갱신 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 ④ 제3항의「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⑤ 보통약관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3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③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 ④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제5조(선발생자 장기요양급여금(I) 및 후발생자 장기요양급여금(I))

① 회사는 다음에 정한 1형, 2형 중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한가지 형만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1형]

회사는 제1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에서 정한 주피보험자(주된보험대상자)와 종피보험자(추가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아래의 금액을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장기요양급여금(I)으로 매년 사고발생일에 확정 지급하여 드립니다.

구 분	지급금액
선발생자 장기요양급여금(ㅣ)	보험가입금액의 100%의 10%를 10년간 확정지급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후발생자 장기요양급여금(Ⅰ)	보험가입금액의 200%의 10%를 10년간 확정지급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② 제1항의 금액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예정이율(연3.75%)로 할인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형]

회사는 제1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에서 정한 주피보험자(주된보험대상자)와 종피보험자(추가보험대상자)가 보험기 간 중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아래의 금 액을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장기요양급여금(I)으로 매년 사고발생일에 확정 지급하여 드립니다.

구 분	지급금액
선발생자 장기요양급여금(Ⅰ)	보험가입금액의 200%의 10%를 10년간 확정지급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후발생자 장기요양급여금(Ⅰ)	보험가입금액의 100%의 10%를 10년간 확정지급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② 제1항의 금액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예정이율(연3.75%)로 할인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6조(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다만, 갱신시점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주피보험자(주된보험대상자) 및 종피보험자(추가보험대상자) 중 고연령자 보험나이)로부터 갱신종료보험나이(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한 갱신종료보 험나이를 말합니다)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7조(보험료의 대체 납입)

- ①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하는 방법(이하「보험료의 대체납입」이라 합니다)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가 전액 충당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추가로 납입하여 야 합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후발생자 장기요양급여금(I)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③ 제1항 이외에 주피보험자(주된보험대상자) 또는 종피보험자(추가보험대상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1항 및 제3항 이외에 제1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제4항에 따라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격을 더 이상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⑤ 제3항 또는 제4항의 경우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1인에 대하여 보통약관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갱신형 장기요양급여금(I)보장 특별약관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3-5. 갱신형 부부 장기요양급여금(11)보장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 ① 이 갱신형 부부 장기요양급여금(II)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에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무배당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에 가입되어 있는 주피보험자(이하「주피보험자(주된보험대상자)」라 합니다)와 종피보험자(이하「종피보험자(추가보험대상자)」라 합니다)로 구성됩니다.
- ② 제1항의 종피보험자(추가보험대상자)는 주피보험자(주된보험대상자)의 기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로 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 가입시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입 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 이외의 원인(이혼 등)으로 제2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격을 더 이상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제1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에서 정한 주피보험자(주된보험대상자)와 종피보험자(추가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아래와 같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주피보험자(주된보험대상자)와 종피보험자(추가보험대상자) 중 1인이 최초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생자 장기요양급여금(II)(이하「선발생자 장기요양급여금(II)」이라 합니다)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호의 지급사유 발생 이후에 나머지 1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후발생자 장기요양급여금(II)(이하「후발생자 장기요양급여금(II)」이라 합니다)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의「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라 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1등급 또는 2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서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이 자동갱신되는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후발생자 장기요양급여금(II)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청약서상「계약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장기요양급여금(II)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특별약관이 자동갱신 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 ④ 제3항의「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5 보통약관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3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③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 ④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제5조(선발생자 장기요양급여금(II) 및 후발생자 장기요양급여금(II))

① 회사는 다음에 정한 1형, 2형 중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한가지 형만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1형]

회사는 제1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에서 정한 주피보험자(주된보험대상자)와 종피보험자(추가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아래의 금액을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장기요양급여금(II)으로 매년 사고발생일에 확정 지급하여 드립니다.

구 분	지급금액
선발생자 장기요양급여금(Ⅱ)	보험가입금액의 100%의 10%를 10년간 확정지급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후발생자 장기요양급여금(Ⅱ)	보험가입금액의 200%의 10%를 10년간 확정지급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② 제1항의 금액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예정이율(연3.75%)로 할인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형]

회사는 제1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에서 정한 주피보험자(주된보험대상자)와 종피보험자(추가보험대상자)가 보험기 간 중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아래의 금 액을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장기요양급여금(II)으로 매년 사고발생일에 확정 지급하여 드립니다.

구 분	지급금액
선발생자 장기요양급여금(॥)	보험가입금액의 200%의 10%를 10년간 확정지급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후발생자 장기요양급여금(॥)	보험가입금액의 100%의 10%를 10년간 확정지급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② 제1항의 금액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예정이율(연3.75%)로 할인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6조(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다만, 갱신시점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주피보험자(주된보험대상자) 및 종피보험자(추가보험대상자) 중 고연령자 보험나이)로부터 갱신종료보험나이(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한 갱신종료보 험나이를 말합니다)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7조(보험료의 대체 납입)

- ①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하는 방법(이하「보험료의 대체납입」이라 합니다)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가 전액 충당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추가로 납입하여 야 합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후발생자 장기요양급여금(II)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③ 제1항 이외에 주피보험자(주된보험대상자) 또는 종피보험자(추가보험대상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1항 및 제3항 이외에 제1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제4항에 따라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격을 더 이상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⑤ 제3항 또는 제4항의 경우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1인에 대하여 보통약관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갱신형 장기요양급여금(II)보장 특별약관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3-6. 갱신형 부부 장기요양급여금(Ⅲ)보장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 ① 이 갱신형 부부 장기요양급여금(III)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에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무배당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에 가입되어 있는 주피보험자(이하「주피보험자(주된보험대상자)」라 합니다)와 종피보험자(이하「종피보험자(추가보험대상자)」라 합니다)로 구성됩니다.
- ② 제1항의 종피보험자(추가보험대상자)는 주피보험자(주된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로 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 가입시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입 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 이외의 원인(이혼 등)으로 제2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격을 더 이상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제1조(피보험자(보험대 상자)의 범위)에서 정한 주피보험자(주된보험대상자)와 종피보험자(추가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 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아래와 같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주피보험자(주된보험대상자)와 종피보험자(추가보험대상자) 중 1인이 최초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생자 장기요양급여금(III)(이하「선발생자 장기요양급여금(III)」이라 합니다)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호의 지급사유 발생 이후에 나머지 1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후발생자 장기요양급여금(III)(이하「후발생자 장기요양급여금(III)」이라 합니다)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의「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라 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1등급」 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서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이 자동갱신되는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후발생자 장기요양급여금(III)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청약서상「계약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 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장기요양급여금(III)을 지급하 지 아니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특별약관이 자동갱신 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 ④ 제3항의「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⑤ 보통약관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3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③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 ④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제5조(선발생자 장기요양급여금(III) 및 후발생자 장기요양급여금(III))

□ 회사는 다음에 정한 1형, 2형 중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한가지 형만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1형]

회사는 제1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에서 정한 주피보험자(주된보험대상자)와 종피보험자(추가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아래의 금액을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장기요양급여금(III)으로 매년 사고발생일에 확정 지급하여 드립니다.

구 분	지급금액
선발생자 장기요양급여금(Ⅲ)	보험가입금액의 100%의 10%를 10년간 확정지급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후발생자 장기요양급여금(Ⅲ)	보험가입금액의 200%의 10%를 10년간 확정지급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② 제1항의 금액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예정이율(연3.75%)로 할인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형]

회사는 제1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에서 정한 주피보험자(주된보험대상자)와 종피보험자(추가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아래의 금액을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장기요양급여금(III)으로 매년 사고발생일에 확정 지급하여 드립니다.

구 분	지급금액
선발생자 장기요양급여금(Ⅲ)	보험가입금액의 200%의 10%를 10년간 확정지급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후발생자 장기요양급여금(Ⅲ)	보험가입금액의 100%의 10%를 10년간 확정지급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② 제1항의 금액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예정이율(연3.75%)로 할인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6조(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다만, 갱신시점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주피보험자(주된보험대상자) 및 종피보험자(추가보험대상자) 중 고연령자 보험나이)로부터 갱신종료보험나이(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한 갱신종료보험나이를 말합니다)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7조(보험료의 대체 납입)

- ①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하는 방법(이하「보험료의 대체납입」이라 합니다)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가 전액 충당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추가로 납입하여 야 합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 □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후발생자 장기요양급여금(Ⅲ)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③ 제1항 이외에 주피보험자(주된보험대상자) 또는 종피보험자(추가보험대상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1항 및 제3항 이외에 제1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제4항에 따라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격을 더 이상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⑤ 제3항 또는 제4항의 경우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1인에 대하여 보통약관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갱신형 장기요양급여금(Ⅲ)보장 특별약관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3-7. 5대장기이식수술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이 5대장기이식수술비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상해로 인한 장기수혜자로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에서 「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았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최초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5대장기이식수술비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 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5대장기이식수술비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특별약관이 자동갱신 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 ③ 제2항의「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④ 보통약관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3조(5대장기이식수술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5대장기」라 함은 신장, 간장, 심장, 췌장, 폐장을 말하며,「5대장기이식수술」이라 함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기증자의 5대장기를 이식대상자(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이식하는 수 술을 말합니다. 다만, 랑게르한스 소도세포 이식수술은 5대장기이식수술로 보지 않습니다.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5 대장기이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5대장기이식」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 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5대 장기이식수술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만 15세미만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3-8. 각막이식수술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이 각막이식수술비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상해(이하「상해」라 합니다)로 인한 장기수혜자로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에서 「각막이식수술」을 받았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각막이식수술비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청약서상「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 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각막이식수술비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특별약관이 자동갱신 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 ③ 제2항의「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④ 보통약관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3조(각막이식수술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각막이식수술」이라 함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기증자의 각막을 이식대상자(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이식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각막이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각막이식」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WE BLOOK)은 제외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 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각막이식수술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만 15세 미만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 출)은 제외합니다.

3-9. 유방절제수술위로금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이 유방절제수술위로금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상해로 【별표26(유방절제수술 분류표)】에서 정한「유방절제수술(Total Mastectomy)」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유방절제수술위로금으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유방절제수술(Total Mastectomy)」은 부분절제술(Subtotal Mastectomy), 국소절제수술(Lumpectomy), 유방의 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유두의 절제, 미용을 위한 절제술, 유방의 조직검사(Biopsy)는 제외합니다.
- ②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 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유방절제수술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특별약관이 자동갱신 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 ④ 제3항의「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⑤ 보통약관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3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계약자의 고의
- ④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⑤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⑥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유방절제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유방절제수술」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WE BLOCK)은 제외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 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유 방절제수술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3-10. 깁스치료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이 깁스치료비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상해로 인하여「깁스(Cast)치료」를 받았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깁스치료비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깁스치료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 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깁스치료비를 지급하지 아 니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특별약관이 자동갱신 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 ④ 제3항의「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5 보통약관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3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3조(깁스(cast)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깁스(Cast)치료」라 함은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병변이 있는 뼈, 관절부 위의 둘레 모두에 착용시켜(Circular Cast) 감은 다음 굳어지게 하여 치료 효과를 가져오는 치료법을 의미합니다. 단, 부목 (Splint cast) 치료는 제외합니다.「부목(Splint cast) 치료」란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만 15세 미만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3-11. 정신 및 행동장애 입원위로금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이 정신 및 행동장애 입원위로금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정신 및 행동장애」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4일이상 계속 입원(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하여 제4조(입원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4일이상 계속입원 해당일에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정신 및 행동장애 입원위로금으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신 및 행동장애」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신 및 행동장애 입원위로금을 계속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정신 및 행동장애 입원위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③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 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정신 및 행동장애 입원위로 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특별약관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 ⑤ 제4항의「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⑥ 보통약관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4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3조(정신 및 행동장애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의「정신 및 행동장애」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정신 및 행동장애」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별표27(정신 및 행동장애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정신 및 행동장애」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4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정신 및 행동장애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정신 및 행동장애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정신 및 행동장애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정신 및 행동장애의 치료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정신 및 행동장애를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정신 및 행동장애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정신 및 행동장애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정신 및 행동장애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제5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①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만 15세미만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과 이미납입한 보험료 중에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3-12. 3대장애위로금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이 3대장애위로금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상해로 인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을 말합니다. 【별표28(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참조)이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3대장애위로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3대장애 중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여 장애인이 된 경우에도 하나의 장애로 인한 3대장애위로금만을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 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3대장애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특별약관이 자동갱신 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 ③ 제2항의「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④ 보통약관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계약자의 고의
- ④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선천적 장애
-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 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3대 장애위로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만 15세 미만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4. 비용관련 특별약관

4-1.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 특별약관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 특별약관은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로 인한 간병에 관한 손해(의료비에 한합니다)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특별약관입니다

제1장 일반사항

제1조(담보종목)

① <u>우리회사(이하「회사</u>」라 합니다)가 판매하는 이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은 <u>상해 입원형, 상해통원형, 질병입원형, 질병통원형, 종합(상해</u>와 질병을 말합니다)<u>입원</u>형, 종합<u>통원</u>형 등 총 6개의 담보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약자는 이들 6개 담보종목 중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담보종목		보상하는 내용
	<u>입원</u>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 가 <u>상해</u> 로 인하여 <u>병원</u> 에 <u>입원</u> 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u>상해</u>	<u>통원</u>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 가 <u>상해</u> 로 인하여 <u>병원</u> 에 <u>통원</u> 하여 치료를 받거나 <u>처방조제</u> 를 받은 경우에 보상
	<u>입원</u>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 가 질병으로 인하여 <u>병원</u> 에 <u>입원</u> 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질병	<u>통원</u>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 가 질병으로 인하여 <u>병원</u> 에 <u>통원</u> 하여 치료를 받거나 <u>처방조제</u> 를 받은 경우에 보상
종합 .	<u>입원</u>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 가 <u>상해</u>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u>병원</u> 에 <u>입원</u> 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u>통원</u>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 가 <u>상해</u>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u>병원</u> 에 <u>통원</u> 하여 치료를 받거나 <u>처방조제</u> 를 받은 경우에 보상

②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명칭에 「실손 의료비」 문구를 포함하여 사용합니다.

제2조(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붙임>과 같으며 해당 용어는 이 특별약관에서 밑줄을 그어 표시합니다.

제2장 회사가 보상하는 사항

제3조(담보종목별 보장내용)

회사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담보종목별로 각각 보상 또는 공제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보 종목	보상하는 사항
	① 회사는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 가 <u>상해</u> 로 인하여 <u>병원에 입원</u> 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u>입원의료비</u> 를 다음 과 같이 하나의 <u>상해</u> 당 보험가입금액(5,000만원을 최고한도로 <u>계약자</u> 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을 한도 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구 분 보상금액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자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u>입원</u> 시 실제 사용병실과 <u>기준병실</u> 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 상급병실료차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u>입원</u> 기간 동안 상급 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u>입원</u> 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4)	② 제1항의 <u>상해</u> 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1) <u>상해입원</u>	③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 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u>요양급여</u>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u>의료급여</u>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u>입원의료</u> 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하나의 <u>상해</u> 당 보험가입금액(5,000만원을 최고한도로 <u>계약자</u> 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u>회사</u> 는 하나의 <u>상해(동일 상해</u> 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u>상해</u> 로 봅니다)로 인한 <u>입</u> 원의료비를 최초 <u>입원</u> 일로부터 365일까지(최초 <u>입원</u> 일을 포함합니다) 보상합니다. 다만, 동일한 <u>상해</u> 로 인하여 최초 <u>입원</u> 일로부터 365일을 넘어 <u>입원</u> 할 경우에는 아래의 예시와 같이 90일간의 보상제외기간이 지나야 새로운 <u>상해</u> 로 보아 다시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상기간 예시▷
	보상대상기간 보상제외 보상대상기간 (365일) (365일) (365일) (365일) (365일) ↑ ↑ ↑ ↑ ↑ ↑ ↑ ↑ ↑ ↑ ↑ ↑ ↑ ↑ ↑ ↑ ↑ ↑ ↑
	(5)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 가 <u>입원</u> 하여 치료를 받던 중 <u>보험기간</u> 이 만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u>입원</u> 에 대하여 는 <u>보험기간</u>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u>보험기간</u>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이 경우 제4항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⑥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 가 <u>병원</u> 의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하여 납부할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u>입원의료비</u> 를 계산합니다.
(2)	① <u>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u> 가 <u>상해</u> 로 인하여 <u>병원에 통원</u> 하여 치료를 받거나 <u>처방조제</u> 를 받은 경우에는 <u>통원의료비</u> 로서 매년 <u>계약해당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u>) 및 <u>처방조제비</u> 를 각각 보상하여 드립니다.
<u>상해통원</u>	구분 보 상 한 도
	외래 방문 1회당「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u>요양급여</u>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u>의료급</u>

담보 종목		보상하는 사항	
		<u>여</u> 중 본인부담금」과「비급여」부분의 합계액에서 <표1 항목별 감하고 외래의 보험가입금액 ^{주)} 을 한도로 보상(매년 <u>계약</u> 해당일로! 180회 한도)	
	처방 조제비	처방전 1건당「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u>요양급여</u> 또는 의료급여법 급여 중 본인부담금」과「비급여」부분의 합계액에서 <표1 항목 차감하고 <u>처방조제비</u> 의 보험가입금액 ^{주)} 을 한도로 보상(매년 <u>계약</u> 한 간 처방전 180건 한도)	별 공제금액>을
	주) 외래 및 <u>처방조</u> 기	<u>에비</u> 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을 최고한도로 <u>계약자</u> 가 정하는 금	액으로 합니다.
		<표1 항목별 공제금액> 	
	구 분	항 목	공제 금액
	외래 (외래제비용 및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한 보건소, 지역보건법 제8조에 의한 보건의료원, 지역보건법 제10조에 의한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의한 보건진료소	1만원
	외래수술비 합계)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1만 5천원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2항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 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2만원
(2) <u>상해통원</u>	처방 조제비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8천원
		가 <u>통원</u> 하여 치료를 받던 중 <u>보험기간</u> 이 만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외래는 방문 90회, <u>처방조제비</u> 는 처방전 90	
		<보상기간 예시▷	
	I		

		배상기간 ^설 1년) (추가보상 (180일)
 ↑	↑	↑	↑
<u>계약</u> 해당일	<u>계약</u> 해당일	<u>보험기간</u> 종료일	보상종료
(2011.4.1)	(2012.4.1)	(2013.3.31)	(2013.9.27)

- ③ 하나의 상해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2회 이상 통원치료시(하나의 상해로 약국을 통한 2회 이상의 처방조제를 포함합니다) 1회의 외래 및 1건의 처방으로 간주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 합니다. 단, 의료기관을 2회이상 방문시 외래의 공제금액은 방문 의료기관의 공제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을 1회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④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 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 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⑤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 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통원의료

담보 종목	보상하는 사항				
(2) 상해통원	<u>비</u>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표1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외래 및 <u>처방조제비</u> 로 보험가입금액(외래 및 <u>처방조제비</u> 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을 최고한도로 <u>계약자</u> 가 정하 는 금액으로 합니다)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u> </u>	⑥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 가 <u>병원</u> 또는 약국의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하여 납부할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u>통원의료비</u> 를 계산합니다.				
	① <u>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u> 가 질병으로 인하여 <u>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의료비</u> 를 다음과 같이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5,000만원을 최고한도로 <u>계약자</u> 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구분 보상금액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부분의 합계액 중 90% 해당액 (다만,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 상급병실료차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 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② 제1항의 질병에서 청약서상「 <u>계약 전 알릴 의무</u> (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질병 <u>입원</u>	③ <u>미보험자(보험대상자)</u> 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국민건강보험법 에서 정한 <u>요양급여</u>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u>의료급여</u>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u>입원</u> <u>의료비</u>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5,000만원을 최고한도 로 <u>계약자</u> 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동일한 질병 또는 하나의 질병(의학상 관련이 있다고 <u>의사</u> 가 인정하는 질병은 동일한 질병으로 간주하며, 동일한 질병으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질병으로 봅니다)으로 인한 <u>입원의로비</u> 는 최초 <u>입원</u> 일로부터 365일(최초 <u>입원</u> 일을 포함합니다)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하나의 질병으로 인하여 최초 <u>입원</u> 일로부터 365일을 넘어 <u>입원</u> 할 경우에는 아래의 예시와 같이 90일간의 보상제외기간이 지나야 새로운 질병으로 인한 <u>입원</u> 으로 보아 다시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상기간 예시▷				
	보상대상기간 보상제외 보상대상기간 (365일) (90일) (365일)				
	↑ ↑ ↑ ↑ ↑ ↑ ↑ ↑ ↑ ↑ ↑ ↑ ↑ ↑ ↑ ↑ ↑ ↑ ↑				
	⑤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 가 <u>입원</u> 하여 치료를 받던 중 <u>보험기간</u> 이 만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u>입원</u> 에 대하여 는 <u>보험기간</u>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u>보험기간</u>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이 경우 제4항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⑥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 가 <u>병원</u> 의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하여 납부할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u>입원의료비</u> 를 계산합니다.				

CLH				
담보 종목	보상하는 사항			
	병:	의 치료 중에 발생된	원인이 동일한 질병(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을 포함합니(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거나 의학상 R 있는 상태에서 <u>입원</u> 한 때에는 동일한 질병으로 간주합니다.	
(3) 질병 <u>입원</u>	자	동갱신되어 5년을 기	영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다.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	건강검진 제외)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이 특별약관 제17조(보험료의 납입 I)에서 정한 <u>계약</u> 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1연체시 납입최고
	l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 <u>계약</u> 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u>계</u> 제8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u>약</u> 의 부활이 이루
	는	<u>통원의료비</u> 로서 매	<u>대상자)</u> 가 질병으로 인하여 <u>병원</u> 에 <u>통원</u> 하여 치료를 받거나 <u>처방조</u> 년 <u>계약</u> 해당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래(<u>외래제</u> 년 보상하여 드립니다.	
		구분	보 상 한 도	
		외래	방문 1회당「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어 여 중 본인부담금」과「비급여」부분의 합계액에서 <표1 항목별 : 감하고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주)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 180회 한도)	공제금액>을 차
		처방 조제비	처방전 1건당「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급여 중 본인부담금」과「비급여」부분의 합계액에서 <표1 항목: 차감하고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주)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하 간 처방전 180건 한도)	별 공제금액>을
(4)	주)) 외래 및 <u>처방조제</u>	<u>비</u> 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을 최고한도로 <u>계약자</u> 가 정하는 금액	 으로 합니다.
질병 <u>통원</u>		<표1 항목별 공제금액>		
		구 분	항 목	공제 금액
		외래 (외래제비용 및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의료 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한 보건소, 지역보건법 제8조에 의한 보건의료원, 지역보건법 제10 조에 의한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 15조에 의한 보건진료소	1만원
		외래수술비 합계)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	1만
			양병원, 종합병원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2항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의 료법 제3조의 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5천원 2만원
		처방 조제비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 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8천원
			가 <u>통원</u> 하여 치료를 받던 중 <u>보험기간</u> 이 만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외래는 방문 90회, <u>처방조제비</u> 는 처방전 90 [.]	

담보 종목	보상하는 사항
	하여 드립니다.
	<보상기간 예시▷
	보상대상기간 보상대상기간 추가보상
	(1년) : (1년) : (180일) : (1802)
	<u>계약</u> 일 <u>계약</u> 해당일 <u>보험기간</u> 종료일 보상종료 (2010.4.1) (2011.4.1) (2012.4.1) (2013.3.31) (2013.9.27)
	③ 하나의 질병으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u>의료기관에 2회 이상 통원</u> 치료시(하나의 질병으로 <u>약</u> 국을 통한 2회 이상의 <u>처방조제</u> 를 포함합니다) 1회의 외래 및 1건의 처방으로 간주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단, 의료기관을 2회이상 방문시 외래의 공제금액은 방문 의료기관의 공제금액 중 가장 큰 금 액을 1회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4) 질병 <u>통원</u>	④ 제1항의 질병에서 청약서상 「 <u>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u>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5)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 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u>요양급여</u>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u>의료급여</u>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u>통원의로비</u>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표1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외래 및 <u>처방조제비</u> 로 보험가입금액(외래 및 <u>처방조제비</u> 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을 최고한도로 <u>계약자</u> 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 가 <u>병원</u> 또는 약국의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하여 납부할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 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u>통원의료비</u> 를 계산합니다.
	① 제4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u>계약</u> 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8 제7항의「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이 특별약관 제17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 (독촉)와 <u>계약</u> 의 해지)에서 정한 <u>계약</u> 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⑨ 이 특별약관 제1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 <u>계약</u> 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u>계약</u> 의 부활이 이루 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7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① 회사는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 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u>병원에 입원</u> 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u>입원 의료비</u> 를 다음과 같이 보험가입금액(<u>상해</u> 당, 질병당 각각 5,000만원을 최고한도로 <u>계약자</u> 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구 분 보상금액
(5)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부분의 합계액 중 90% 해당액 (다만,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종합 <u>입원</u>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 상급병실료차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 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② 제1항의 <u>상해</u> 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담보 종목	보상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질병에서 청약서상「 <u>계약 전 알릴 의무</u> (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④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 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u>요양급여</u>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u>의료급여</u>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u>입원의료</u> <u>비</u>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u>상해</u> 당, 질병당 각각 5,000만원을 최고한도로 <u>계약자</u> 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회사는 하나의 상해(동일 상해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상해로 봅니다), 동일한 질병 또는 하나의 질병(의학상 관련이 있다고 <u>의사</u> 가 인정하는 질병은 동일한 질병으로 간주하며, 동일한 질병으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질병으로 봅니다)으로 인한 <u>입원의료비</u> 를 최초 <u>입원일로부터 365일까지(최초 입원일을 포함합니다)</u> 보상합니다. 다만, 최초 <u>입원</u> 일로부터 365일을 넘어 <u>입원</u> 할 경우에는 아래의 예시와 같이 90일간의 보상제외기간이 지나야 새로운 <u>상해</u> 또는 질병으로 보아 다시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상기간 예시▷
(5) 종합 <u>입원</u>	보상대상기간 보상제외 보상대상기간 (365일) (3652[25][25][25][25][25][25][25][25][25][2
	⑥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 가 <u>입원</u> 하여 치료를 받던 중 <u>보험기간</u> 이 만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u>입원</u> 에 대하여 는 <u>보험기간</u>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u>보험기간</u>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이 경우 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①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 가 <u>병원</u> 의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하여 납부할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u>입원의료비</u> 를 계산합니다.
	8 동일한 질병이란 발생 원인이 동일한 질병(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을 포함합니다)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 중에 발생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거나 의학상 관련이 없는 여러종류의 질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u>입원</u> 한 때에는 동일한 질병으로 간주합니다.
	③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u>계약</u> 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제9항의「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이 특별약관 제17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 (독촉)와 <u>계약</u> 의 해지)에서 정한 <u>계약</u> 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① 이 특별약관 제1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 <u>계약</u> 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u>계약</u> 의 부활이 이루 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9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6) 종합 <u>통원</u>	① <u>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u> 가 <u>상해</u>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u>병원에 통원</u> 하여 치료를 받거나 <u>처방조제를</u> 받은 경우에는 <u>통원의료비</u> 로서 매년 <u>계약</u> 해당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래(<u>외래제비용</u> , <u>외래수술비</u>) 및 <u>처방조제비</u> 를 각각 보상하여 드립니다.
	구분 보 상 한 도

담보 종목	보상하는 사항			
		구분	보 상 한 도	
		외래	방문 1회당「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부분의 합겨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주)을 한도로 보상(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ll액에서 <표1 항목별
		처방 조제비	처방전 1건당「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부분의 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주)을 한 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합계액에서 <표1 항
	3	F) 외래 및 <u>처방조</u>	제 <u>비</u> 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을 최고한도로 <u>계약자</u> 가 정하는	= 금액으로 합니다.
			<표1 항목별 공제금액>	
		구 분	항 목	공제 금액
		외래 (외래제비용 및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7조 에 의한 보건소, 지역보건법 제8조에 의한 보건의료원, 지역 보건법 제10조에 의한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의한 보건진료소	1만원
(6) 종합 <u>통원</u>		외래수술비 합계)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1만 5천원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2항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 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2만원
		처방 조제비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8천원
	독		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십 .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십 I지 아니합니다.	
	_		약서상「 <u>계약 전 알릴 의무</u> (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	
	한 <u>비</u> <u>처</u>	<u>요양급여</u> 또는 의 중 본인이 실제로 <u>방조제비</u> 로 보험가)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로급여법에서 정한 <u>의료급여</u>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 . 부담한 금액에서 〈표1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 입금액(외래 및 <u>처방조제비</u> 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을 최고 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합니다)에는 <u>통원의료</u> 40% 해당액을 외래 및
	하)가 <u>통원</u> 하여 치료를 받던 중 <u>보험기간</u> 이 만료되더라도 그 계속 일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외래는 방문 90회, <u>처방조제비</u> 는 처방?	

담보 종목	보상하는 사항
	<보상기간 예시▷
	보상대상기간 보상대상기간 추가보상 (1년) (1년) (180일)
	↑ ↑ ↑ ↑ ↑ ↑ ↑ ↑ ↑ ↑ ↑ ↑ ↑ ↑ ↑ ↑ ↑ ↑ ↑
(6)	⑥ 하나의 <u>상해</u> 또는 하나의 질병으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u>의료기관</u> 에 2회 이상 <u>통원</u> 치료시 (하나의 <u>상해</u> 또는 하나의 질병으로 <u>약국</u> 을 통한 2회 이상의 <u>처방조제</u> 를 포함합니다) 1회의 외래 및 1건 의 처방으로 간주하여 제1항 및 제5항을 적용합니다. 단, 의료기관을 2회이상 방문시 외래의 공제금액은 방문 의료기관의 공제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을 1회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종합 <u>통원</u>	①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 가 <u>병원</u> 또는 <u>약국</u> 의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하여 납부할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u>통원의료비</u> 를 계산합니다.
	8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u>계약</u> 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⑨ 제8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이 특별약관 제17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 (독촉)와 <u>계약</u> 의 해지)에서 정한 <u>계약</u> 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1) 이 특별약관 제1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 <u>계약</u> 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u>계약</u> 의 부활이 이루 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8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3장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보 종 목	보상하지 않는 사항
(1) <u>상해입원</u>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u>입원의료비</u> 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2. 계약자의 고의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u>입원한 경우. 그러나 회사가보상하는 상해로</u>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 가 정당한 이유없이 <u>입원</u> 기간 중 <u>의사</u> 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 <u>회사</u> 는 그로인하여 악화된 부분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u>회사</u> 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 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u>상해에</u>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당보 종목	보상하지 않는 사항
	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u>상해</u> 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
	③ 회사는 아래의 입원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치과치료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금 상한제) 3.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4.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드립니다.
(1) <u>상해입원</u>	5.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다만, <u>회사</u> 가 보상하는 <u>상해</u>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다만,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제외합니다)
	7.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 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8.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u>의사</u> 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9.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제3조 (담보종목별 보장내용)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0. 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① <u>회사</u> 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u>통원의료비</u> 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u>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u> 의 고의. 다만, 그 <u>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u> 가 보험금의 일부 <u>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u> 인 경우에는 그 <u>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u> 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u>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u> 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2. 계약자의 고의
(2) <u>상해통원</u>	3.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 의 고의. 다만,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 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산후기로 <u>통원</u> 한 경우. 그러나 <u>회사</u> 가 보상하는 <u>상</u> 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 가 정당한 이유없이 <u>통원</u> 기간 중 <u>의사</u> 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 <u>회사</u> 는 그로인하여 악화된 부분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u>상해</u>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2.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u>상해</u>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

당보 종목	보상하지 않는 사항
(2) <u>상해통원</u>	③ 회사는 아래의 통원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치과치료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당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당금 상한제) 3.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중 본인부당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상 본인부당금 보상제 및 본인부당금 상한제) 4.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드립니다. 5.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드립니다. 6.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다만,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제외합니다) 7.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 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8.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9.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당의료비는 제3조(당보증목별 보장내용)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질병 <u>입원</u>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입원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나대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2. 계약자의 고의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진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일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 회사는 그로인하여 악화된 부분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일원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FO4-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일원한 경우(000-099) 4. 선천성 뇌질환(000-004) 5. 비만(FG6) 6. 비뇨기계 장애(NS9, R32) 7.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184, K60-K62) ③ 회사는 아래의 일원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치과치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금 상한제) 3.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담보 종 목	보상하지 않는 사항
(3) 질병 <u>입원</u>	4.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 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 아래에 열거된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등 피부질환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 단순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의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기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다만,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제외합니다) 용.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 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의.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10.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제3조(당보증목별 보장내용)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1. 인간면역바이러스(HIV)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감염은 해당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4) 질병 <u>통원</u>	① 회사는 이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통원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2. 계약자의 고의 3.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 의 고의. 다만,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 가 정당한 이유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 회사는 그로인하여 악화된 부분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이래의 통원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FO4-FO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3.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 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통원한 경우(000-009) 4. 선천성 뇌질환(000-004) 5. 비만(E66) 6. 비뇨기계 장애(N39, R32) 7.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184, K60-K62) ③ 회사는 아래의 통원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치과치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

당보 종목	보상하지 않는 사항
(4) 질병 <u>통원</u>	로부터 사전 또는 시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금 상한제) 3.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4.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 아래에 열거된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등 피부질환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 단순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관한 규칙 제요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의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기의체용(다만,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제외합니다) 용.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가, 쌍까풀수술(이중감수술), 코성형수술(용비술), 유방확대 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가술 등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의.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10.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제3조(당보종목별 보장내용)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1. 인간면역바이러스(HIV)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단,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감염은 해당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12.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5) 종합 <u>입원</u>	① <u>상해</u> 에 대하여는 「 <u>상해입원</u> 」을 적용 ② 질병에 대하여는 「질병 <u>입원</u> 」을 적용
(6) 종합 <u>통원</u>	① <u>상해</u> 에 대하여는 「 <u>상해통원</u> 」을 적용 ② 질병에 대하여는 「질병 <u>통원</u> 」을 적용

제4장 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5조(계약의 성립)

- ① 이 특별약관 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u>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u>가 <u>계약</u>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 ③ <u>회사는 계약</u>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u>계약</u>(이하「무진단 <u>계약</u>」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u>계약</u>(이하「진단<u>계약</u>」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진단일을 말합니다)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④ <u>회사</u>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u>계약자</u>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u>계약</u>의 예정이율(이하「예정이율」이라 합니다)+1%(연4.75%)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u>회사는 계약자</u>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u>계약</u>의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정이율】

보험회사는 장래의 보험금 지급을 대비하여 <u>계약자</u>가 납입한 보험료를 적립해 두는데 보험료 납입시점과 보험금 지급시점에는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기간동안 보험회사는 적립된 금액을 운용할 수 있으므로 운용에 따라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러한 할인율을「예정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낮아지고,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제6조(청약의 철회)

- ① <u>계약자</u>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u>보험기간</u>이 1년 미만인 <u>계약</u>의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u>계약</u>(이하 「통신판매 <u>계약</u> 이라 합니다.)의 경우(<u>보험기간</u>이 1년 이상인 <u>계약</u>에 한함)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이하「보험계약대출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③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u>계약자</u>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7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 ① <u>계약자</u>는 <u>회사</u>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 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① 보험종목 또는 담보종목
 - ② 보험기간
 - ③ 보험료 납입주기,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 ④ 계약자, 보험가입금액 등 기타 계약의 내용
- 2 <u>회사</u>는 <u>계약자</u>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u>계약</u>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u>회사</u>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 ③ <u>회사는 계약자</u>가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u>계약</u>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u>회사</u>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u>계약자</u>에게 지급합니다.
- ④ <u>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u>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u>회사</u>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u>계약자</u>가 <u>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u>를 변경하는 경우 <u>회사</u>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변경후 <u>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u>는 그 권리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 5 <u>계약자</u>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u>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u>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제8조(보험나이 등)

- ① 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u>계약</u>일 현재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u>계약</u>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나이 계산[예시]】

생년월일 : 1989년 10월 2일, 계약일 : 2010년 4월 13일

⇒ 2010년 4월 13일 - 1989년 10월 2일 = 20년 6월 11일 = 21세

제9조(계약의 무효)

<u>계약</u>체결시 <u>계약</u>에서 정한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u>계약</u>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그러나 <u>회사</u>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u>계</u>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u>회사</u>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u>계약</u>이 무효로 된 경우와 <u>회사</u>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u>회사</u>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0조(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u>보험기간</u>은 3년으로 합니다. 다만, 갱신시점의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의 보험나이로부터 갱신종료보험나이(최 초 <u>계약</u>을 체결할 때 약정한 갱신종료보험나이를 말합니다)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u>보험기간</u>으로 합니다.

제11조(보험료의 대체납입)

- ① <u>계약자</u>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기본<u>계약</u>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하는 방법(이하「보험료의 대체납입」이라 합니다)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 ② <u>계약자</u>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가 전액 충당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추가로 납입하여 야 합니다.

제12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u>미보험자(보험대상자)</u>가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u>계약</u>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u>회사</u>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만 15세 미만인 <u>미보험자(보험대상자)</u>가 사망하는 경우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u>회사</u>는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3조(계약자의 임의해지)

<u>계약자</u>는 <u>계약</u>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u>계약</u>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u>회사</u>는 제2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장 보험료의 납입 등

제1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u>회사는 계약</u>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u>계약자</u>의 귀책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부터 이 특별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u>회사</u>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이 특별약관에서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 (책임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을 <u>계약</u>일로 봅니다)부터 이 특별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u>회사</u>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다만,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 1. 제24조(<u>계약</u>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u>계약자</u> 또는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가 <u>회사</u>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 2. 제2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까지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
- ③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15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u>계약</u> 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납입기일」이라 합니다)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u>회사는 계약자</u>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제16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u>계약자</u>는 제17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u>계약</u>의 해지)에 의한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7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

동적으로 납입되어 <u>계약</u>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u>계약자</u>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의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 이내에서 <u>회사</u>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합산한 금액이 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과 <u>계약자</u>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u>계약자</u>의 <u>회사</u>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 내에 <u>계약자가 계약</u>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u>회사</u>는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20조(해지환급금) 제1 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17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u>회사</u>는 14일(<u>보험기</u> 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의 최초의 평일에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u>계약자</u>(타인을 위한 <u>계약</u>의 경우 특정된 <u>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u>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u>계약</u>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을 서면(등기우편 등),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u>계약</u>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u>회사</u>는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u>회사</u>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u>계약자</u>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u>계약자</u>가 당해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u>회사</u>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17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u>계약</u>의 해지)에 따라 <u>계약</u>이 해지되었으나 <u>계약자</u>가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u>계약자</u>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u>회사</u>가 정한 절차에 따라 <u>계약</u>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u>회사</u>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u>계약자</u>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에 대한 연체된 이자(보장보험료에 대해서 예정이율+1%(연4.75%))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u>계약</u>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5조(<u>계약</u>의 성립), 제14조(제1회 보험료 및 <u>회사</u>의 보장개시), 제24조(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제2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19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① 타인을 위한 <u>계약</u>의 경우 <u>계약자</u>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u>계약</u>이 해지된 경우에는, <u>회사</u>는 해지 당시의 <u>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u>가 <u>계약자</u>의 동의를 얻어 <u>계약</u> 해지로 <u>회사</u>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u>회사</u>에게 지급하고 제7조(<u>계약</u>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u>계약자</u> 명의를 <u>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u>로 변경하여 <u>계약</u>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u>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u>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u>회사</u>는 제1항에 의한 <u>계약자</u> 명의변경 신청 및 <u>계약</u>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며, <u>계약</u>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 부활(효력회복) 됩니다.
- ③ <u>회사</u>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u>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u>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u>회사</u>는 법정상속인이 <u>보험수익</u> 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 ④ <u>회사</u>는 제1항의 통지를 <u>계약</u>이 해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u>회사</u>의 통지가 7일을 경과하여 도달하고 이후 <u>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u>가 제1항에 의한 <u>계약자</u> 명의변경 신청 및 <u>계약</u>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u>계약</u>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 ⑤ <u>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u>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의해 <u>계약자</u>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u>계약자</u>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로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20조(해지환급금)

① 이 특별약관에 의해 <u>계약</u>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21조(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6장 다수보험의 처리 등

제22조(다수보험의 처리)

- ① <u>다수보험</u>의 경우 각 <u>계약</u>의 <u>보상대상의료비</u> 및 <u>보상책임액</u>에 따라 제3항에 의해 계산된 각 <u>계약</u>의 비례분담액을 <u>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u>
- ② 비례분담하여 지급된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은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을 보상최고한도로 합니다.
- ③ 각 <u>계약의 보상책임액</u> 합계액이 각 <u>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u> 중 최고액을 초과한 <u>다수보험</u>은 각 <u>계약의 보상책임액</u>을 비례 분담하여 지급하며, <u>다수보험</u>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u>입원</u>, 외래, <u>처방조제</u>를 각각 구분하여 계 산합니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계약의 <u>보상대상의료비</u> 중 최고액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제23조(연대책임)

①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된 <u>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u>가 동일한 <u>다수보험</u>의 경우 <u>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u>는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수<u>계약</u>이 체결되어 있는 <u>회사</u> 중 한 <u>회사</u>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u>회</u>사는 해당 보험금을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u>회사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u>가 다른 <u>회사</u>에 대하여 가지는 해당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u>회사</u>가 보상한 금액이 <u>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u>가 다른 <u>회사</u>에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의 일부인 경우에는 해당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7장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24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는 청약시(진단<u>계약</u>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u>계약 전 알릴 의무</u>」라 하며, 상법상「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u>계약</u>의 경우 <u>의료기관</u>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 의무】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 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u>해지</u>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25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u>계약자</u> 또는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는 <u>보험기간</u> 중에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u>회사</u>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u>계약자</u> 또는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u>계약</u>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u>회사</u>의 청구에 대해 <u>계약자</u>가 그 납입을 게을리 했을 때, <u>회사</u>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이하「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료율(이하「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상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u>계약자</u> 또는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u>회사</u>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u>회사</u>는 동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u>계약자</u> 또는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 에게 제3항에 의해 보상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u>회사</u>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u>계</u>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약자,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4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②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5조(<u>상해보험계약</u> 후 알릴 의무)제1항에서 정한 <u>계약</u>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①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② <u>회사</u>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 ③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④ <u>회사</u>가 이 <u>계약의 청약시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u>계약자</u> 또는 <u>피보험자</u> (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u>
 - ③ 보험설계사 등이 <u>계약자</u> 또는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에게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u>계약자</u> 또는 <u>피보험자 (보험대상자)</u>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u>계약자</u> 또는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u>계약자</u> 또는 <u>피보험자(보</u>험대상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③ 제1항에 의하여 <u>계약을</u>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2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u>계약자</u>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u>계약</u>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u>회사</u>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며, <u>계약</u>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u>계약</u>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u>계약자</u>에게 알려 드립니다. 또한, 제1항 제2호에 의한 <u>계약</u>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 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제25조(<u>상해보험계약</u> 후 알릴 의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 여 드립니다.
- [5]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을 <u>계약자, 피보험자</u> (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제4항에 관계없이 보장하여 드립니다.
- ⑥ <u>회사</u>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u>계약</u>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u>계약</u>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 니다.

제27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u>회사</u>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u>계약</u>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① 계약자,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 또는 <u>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u>가 <u>회사</u>에게 보험금(보험료 납입면제를 포함합니다)을 지급하게 할 목적으로 고의로 <u>상해</u> 또는 질병을 발생시킨 경우
- ② 계약자,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 또는 <u>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u>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28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 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u>계약</u>이 성립되었음을 <u>회사</u>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u>계약</u>체결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u>계약</u>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8장 보험금 지급의 절차 등

제29조(주소변경통지)

- ① <u>계약자</u> 또는 <u>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u>(타인을 위한 보험<u>계약</u>에 해당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u>계약자</u>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u>계약자</u>가 <u>회사</u>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방법에 의해 계약자에게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30조(대표자의 지정)

- ① <u>계약자</u> 또는 <u>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u>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u>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u>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u>회사</u>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표 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u>계약</u>에 관하여 <u>회사</u>가 <u>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u> 1 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31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u>계약자</u> 또는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나 <u>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u>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32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 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 (회사 양식)
 - ② 사고증명서 (진료비계산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포함합니다)
 - ④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u>병원</u>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u>병원</u>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u>의료기관</u>)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이어야 합니다.

제33조(보험금의 지급)

- ① <u>회사</u>는 제32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u>회사</u>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 ③ <u>회사</u>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u>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u> 또는 <u>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u>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④ <u>계약자</u>,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 또는 <u>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u>는 제2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u>의료기관</u>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u>회사</u>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u>회사</u>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영업일】

「토요일」,「일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및「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합니다.

제34조(환급금의 지급)

① <u>회사는 계약자</u> 및 <u>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u>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1%(연4.75%)를,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② <u>회사</u>는 중도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u>계약자</u> 또는 <u>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u>에게 알려드리며, 그 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연3.75%)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③ <u>회사</u>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u>계약자</u> 또는 <u>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u>에게 알린 경우의 중도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과 해지환급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① 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의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중 1년 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연1.875%),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를 적용합니다.
 - ② 중도환급금의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중 <u>보험기간</u> 만기일까지의 기간은 예정 이율(연3.75%)을 적용하고, <u>보험기간</u>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연1.875%),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를 적용합니다.

제35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① <u>계약자</u>(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u>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u>)는 <u>회사</u>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분할지급 또는 일시지급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u>회사</u>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연3.75%)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분할지급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정이율(연3.75%)을 연단위 복리로 할 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36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계약자</u> 및 <u>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u> 동의를 받아 다른 <u>회사</u>(보험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합니다)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u>회사</u> 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수집 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2항,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② 계약체결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 ③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 ④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해 및 질병에 관한 정보

제37조(보험계약대출)

- ① <u>계약자</u>는 이 <u>계약의 해지환급</u>금 범위 내에서 <u>회사</u>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② <u>계약자</u>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u>회사</u>는 제17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u>계약</u>의 해지)에 따라 <u>계약</u>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과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차감합니다.
-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9장 분쟁조정 등

제38조(특별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u>회사는 계약자</u>가 청약한 경우 <u>계약자</u>에게 이 특별약관 및 <u>계약자</u>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통신판매 <u>계약</u>의 경우에는 <u>회사</u>는 <u>계약자</u>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① 광기록매체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약관이나 <u>계약자</u>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송부하는 방법. 이 경우 <u>계약자</u> 또는 그 대리인이 이를 수신한 때에 당해 약관이나 <u>계약자</u>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 ②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u>계약자</u>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 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u>보험기간</u>, <u>계약 전 알릴 의무</u>,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u>계약</u>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u>계약자</u>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u>회사</u>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이 특별약관 및 <u>계약자</u>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청약 시 <u>계약자</u>에게 드리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u>계약</u>을 체결할 때 <u>계약자</u>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u>계약자</u>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u>계약</u>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u>계약</u>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u>계약</u>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u>계약</u>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1을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위 제1항에 의한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u>계약자</u>에게 드림으로써 <u>계약자</u>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 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 ②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 ④ 제2항에 따라 <u>계약</u>이 취소된 경우에는 <u>회사</u>는 <u>계약자</u>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⑤ <u>회사</u>는 관계 법규에 따라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가 될 자가 다른 실손 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가 될 자가 다른 실손 의료보험계약의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상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39조(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2년 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40조(분쟁의 조정)

<u>계약</u>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u>회사</u>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1조(관할법원)

이 <u>계약</u>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u>계약자</u>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u>회사</u>와 <u>계약자</u>가 합의하여 관할법 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2조(특별약관의 해석)

- □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 특별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 ②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u>회사</u>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u>계약자</u>나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제43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u>회사</u> 제작의 보험안내장(<u>계약</u>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이 특별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4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u>회사는 계약</u>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u>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u> 및 <u>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u>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보험업법 등 관계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u>회사</u>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u>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u> 또는 <u>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u>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u>회사</u>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u>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u> 또는 <u>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u>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u>회사</u>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45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u>계약</u>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u>계약</u>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u>회사</u>는 해지환급금을 <u>계약</u> 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6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47조(준거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붙암>용어의 정의

용 어	정 의			
계약	보험계약			
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객체)이 되는 사람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			
보험기간	계약에서 정한 대상이 되는 위험이 보장되는 기간			
회사	보험회사			
상해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상해보험계약	상해를 보장하는 계약			
의사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서 정한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약사	약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약사 및 한약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하는 의료기관이며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구분됨			
약국	약사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장소로서, 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업무를 하는 장소를 말하며,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제외			
병원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요양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조산원은 제외)			
입원	의사가 보험대상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병원, 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의사의 관리를 받으며 치료에 전념하는 것			
입원의 정의 중 이와 동등 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등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준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군의무대, 치매요양원, 노인요양원 등에 속해 있는 요양원, 요양시설, 복지시설 등과 같이 의료기관이 아닌 곳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기준병실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입원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병실			
입원실료	입원치료 중 발생한 기준병실 사용료, 환자관리료, 식대 등을 말함			
입원제비용	입원치료 중 발생한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물리치료, 재활치료)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등을 말함			
입원수술비	입원치료 중 발생한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등을 말함			
입원의료비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상급병실료 차액으로 구성됨			
통원	의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			
처방조제	의사 및 약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통원으로 인하여 발행된 의사의 처방전으로 약국의 약사가 조제하는 것을			

용 어	정 의			
	말함(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및 의약분업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포함)			
외래제비용	통원치료 중 발생한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물리치료, 재활치료)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등을 말함			
외래수술비	통원치료 중 발생한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등을 말함			
처방조제비	병원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국의 처방조제비 및 약사의 직접조제비를 말함			
통원의료비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로 구성됨			
요양급여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요양급여)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등에 대한 다음 각호의 요양급여를 말함 1. 진찰검사 2. 약재치료재료의 지급 3. 처차수술 기타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			
의료급여	의료급여법 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 등에 대한 각호의 의료급여를 말함 1. 진찰검사 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3. 처차수술 기타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과 그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금 상한제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급여 중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별표3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고 있는 제도를 말하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환급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회사는 변경되는 기준에 따름			
의료급여법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이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을 의료급여기금 등에서 부담하고 있는 제도를 말하며, 의료급여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환급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회사는 변경된 기 준에 따름			
보상대상의료비	실제 부담액 - 보상제외금액			
보상책임액	(실제 부담액 -보상제외금액) ×회사부담비율			
다수보험	실손 의료보험계약(우체국보험, 각종 공제, 상해·질병·간병보험 등 제3보험, 개인연금· 퇴직보험 등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상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2개 이상 체결되었고, 그 계약이 동일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이 있는 다수의 실손 의료보험계약을 말함			

4-2. 벌금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이 벌금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합니다)중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말하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1사고당 2,000만원 한도로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 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 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 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 2.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 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벌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보험계약(공제를 포함합니다. 이하「계약」이라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던 중 발생된 사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4-3. 방어비용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이 방어비용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기소」라 합니다)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방어비용으로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 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 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 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 2.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 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던 중 발생된 사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8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제20조 (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4-4. 방어비용(약식기소 제외)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이 방어비용(약식기소 제외)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의해 공소제기(이하「기소」라 합니다. 단, 약식기소는 제외합니다)된 경우 또는 검사에의해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의해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의해 재판을 진행하게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1사고당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방어비용(약식기소 제외)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검사에의해약식기소되었으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법원의약식명령에 불복하여정식재판을 청구한경우에는 보상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21에 제항의「약식기소」라함은검사가지방법원의관할사건에대하여보통의심판절차인공판절차인공판절차를 거치지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벌금,구류 또는 몰수의형을과하는 것이타당하다고판단하여약식명령공소장에의하여기소하는 것을말합니다.

【용어풀이】

- 1.「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 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 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 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 2.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 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던 중 발생된 사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①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8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4-5. 면허정지위로금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이 면허정지위로금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동차운전면허(이하「면허」라 합니다)가 행정처분에 의해 일시 정지되었을 때에는 면허정지기간동안 최고 60일을 한도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면허정지위로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유가 교통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면허정지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용어풀이】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 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 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 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2.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 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면허정지기간」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교정교육을 이수하여 면허정지기간을 감경받았거나 감경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전체 면허정지기간에서 감경받았거나 감경받을 수 있는 기간을 차감한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행정기관의 교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면허정지기간을 감경받지 못하여 면허정지 처분기간 이후에 경찰서의 행정처분 조회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아래의 사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된 사고
-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 [2]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 출)은 제외합니다.

4-6. 면허취소위로금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이 면허취소위로금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동차운전면허(이하「면허」라 합니다)가 행정처분에 의해 면허가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면허취소위로금으로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 2.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던 중 발생된 사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된 사고
-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①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8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4-7. 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다음에 정한 운전자(자가용)형, 비운전자형 중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한가지 형만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운전자(자가용)형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이 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에 교통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아래에 정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교통상해」라 합니다)로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별표29(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에따라 아래에 정한 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가입금액 10만원 기준)

부상등급	지급보험금
1급	600만원
2급~4급	300만원
5급	150만원
6급	80만원
7급	40만원
8급~11급	20만원
12급 ~ 14급	10만원

-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등의 교통사고

비운전자형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아래에 정한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상해」라 합니다)로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에 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별표29(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에 따라 아래에 정한 금액을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가입금액 10만원 기준)

부상등급	지급보험금
1급	600만원
2급~4급	300만원
5급	150만원
6급	80만원
7급	40만원
8급~11급	20만원
12급 ~ 14급	10만원

-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등의 교통사고

【용어풀이】

-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 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 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 2.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①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 하고 있는 동안
- ②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 ③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 ④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①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8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4-8.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타인(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인 경우 제외합니다. 이하「피해자」라 합니다)에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하「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 ①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 ②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 ③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기소」라 합니다)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② 제1항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① 제1항 제1호의 경우: 3천만원
 -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

구 분	금 액
42일(6주)이상 70일(10주)미만 진단시	1천만원
70일(10주)이상 140일(20주)미만 진단시	2천만원
140일(20주)이상 진단시	3천만원

③ 제1항 제3호의 경우: 3천만원

【용어풀이】

-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 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 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 2.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 3.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중상해」라 함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경우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단서 중 7, 8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보지 아니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3호에서「일반교통사고」라 함은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 중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7, 8은 일 반교통사고로 보지 아니합니다.
- ③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항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계약자의 고의
-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 ④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⑤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
- ⑥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제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 ②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③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 ④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 ⑤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5조(보험금의 비례분담)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 및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따라 제2항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②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형 사합의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회사는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 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형사합의금 x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제6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 [2]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 출)은 제외합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2항 단서

- 1.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2.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62조(횡단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 3.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 등의 속도)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속도를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4.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제1항·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또는 제 60조(갓길 통행금지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5. 도로교통법 제24조(철길건널목의 통과)의 규정에 의한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6.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7.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또는 도로교통법 제96 조(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 등의 운전)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 거나 국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에 있거나 운전의 금지중에 있는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8.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취중에 운전을 하거나 동법 제 45조 (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9.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동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횡단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10.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11.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상기 단서 외에 법령의 변경으로 추가되는 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단서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4-9. 중상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이 중상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타인(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인 경우 제외합니다. 이하「피해자」라 합니다)에게 일반교통사고로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기소」라 합니다)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하「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중상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 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 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 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 2.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 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 3.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중상해」라 함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 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에서「일반교통사고」라 함은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 중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 ②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항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계약자의 고의
-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 ④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⑤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
- ⑥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제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경철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 ②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③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 ④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 ⑤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5조(보험금의 비례분담)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중상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 및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따라 제2항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②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형 사합의금 을 초과하는 때에는 회사는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 니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형사합의금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제6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①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2항 단서

- 1.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2.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62조(횡단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 3.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 등의 속도)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속도를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4.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제1항·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또는 제 60조(갓길 통행금지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5. 도로교통법 제24조(철길건널목의 통과)의 규정에 의한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6.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7.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또는 도로교통법 제96 조(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 등의 운전)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 거나 국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에 있거나 운전의 금지중에 있는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8.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취중에 운전을 하거나 동법 제 45조 (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9.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동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횡단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10.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11.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상기 단서 외에 법령의 변경으로 추가되는 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단서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4-10. 긴급비용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이 긴급비용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중에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운전중인 자동차가 가동 불능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긴급비용으로 지급 합니다.

【 용어풀이 】

-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 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 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 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 2.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 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경우
-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된 사고

-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
- ④ 차량의 자체결함, 노후화, 정비불량으로 인한 가동불능
- ⑤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운전회피
- ⑥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①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 [2]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8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4-11.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II)(자기차량손해 가입시)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이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II)(자기차량손해 가입시)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자동차보험(이하「자동차보험」이라합니다)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II)으로 지급합니다.

구분	사고내용		지급보험금
대인사고	사망사고		11 7 1 100 11 01
	부상사고	1급	사고당 100만원
		2급~7급	사고당 50만원
		8급~12급	사고당 30만원
		13급, 14급	사고당 20만원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11 7 1- 000161
물적사고	50만원 초과 사고		사고당 20만원

【용어풀이】

- 1.「대인사고」라 함은 자동차보험에서 정한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의 보험금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사고 를 말합니다.
- 2. 부상사고의 급별 구분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제3조제1항제2호관련)」에서 정한 상해등급 구분에 따릅니다.
- 3. 「물적사고」라 함은 자동차보험에서 정한 대물배상 사고중 50만원 초과 사고 또는 자기차량손해 사고중 50만원 초과 사고를 말합니다. 다만, 동일한 사고로 대물배상사고 와 자기차량손해사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금액을 더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회사는 동일한 사고로 대인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지급보험금만을 지급하여 드리며, 대인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에는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및 물적사고중 한 사고내용에 한하여 지급보험금을 드립니다. 다만, 자기차량손해 사고중 가해자불명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동일한 사고로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또는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두가지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던 중 발생된 사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중 사고
-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 ④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중 발생한 사고

제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보통약관 제3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의 구비서류 및 자동 차보험의 보험금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5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 외합니다.

4-12.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II)(자기차량손해 미가입시)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이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II)(자기차량손해 미가입시)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자동차보험(이하「자동차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II)으로 지급합니다.

구분	사고내용		지급보험금
대인사고	사망사고		11 J.Ct. 100 U.L.O.I
	부상사고	1급	사고당 100만원
		2급~7급	사고당 50만원
		8급~12급	사고당 30만원
		13급, 14급	사고당 20만원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사고당 20만원
물적사고	50만원 초과 사고		, 사고당 20인권

【용어풀이】

- 1.「대인사고」라 함은 자동차보험에서 정한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의 보험금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사고 를 말합니다.
- 2. 부상사고의 급별 구분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제3조제1항제2호관련)」에서 정한 상해등급 구분에 따릅니다.
- 3.「물적사고」라 함은 자동차보험에서 정한 대물배상 사고중 50만원 초과 사고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회사는 동일한 사고로 대인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지급보험금만을 지급하여 드리며, 대인사

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에는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및 물적사고중 한 사고내용에 한하여 지급보험금을 드립니다.

② 회사는 동일한 사고로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두가지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 니하는 사유) 및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던 중 발생된 사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중 사고
-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 ④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중 발생한 사고

제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보통약관 제3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의 구비서류 및 자동 차보험의 보험금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5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II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 [2]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4-13. 생활유지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이 생활유지비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에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고 입원하거나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 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입원 또는 구속기간동안 최고 180일을 한도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1일당 생활유지비로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 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 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 2.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 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던 중 발생된 사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
- ④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중 발생한 사고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 [2]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8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4-14. 시가보존위로금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이 시가보존위로금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배우자가 소유한 자가용 자동차(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자동차에 한합니다)에 차량가액(매년 자동차보험 가입시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30% 이상의 부분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시가보존위로금으로지급합니다.

[용어풀이]

-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 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 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 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 2.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 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차량가액이라 함은 매년 자동차보험 가입시점에서 적용되는 보험개발원이 발행하는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 상의 금액을 말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던 중 발생된 사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중 사고
-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 ④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중 발생한 사고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4-15. 차량손해위로금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 이 차량손해위로금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자가용자동 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배우자가 소유한 자가용 자동차(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자동차에 한합니다)에 전부손해(사고발생시의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가 발생하거나, 자가용 자동차를 도난당하여 도난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난 때에도 이를 찾지 못한 경우 또는 부분손해(사고발생시의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를 당하여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에서 자기차량사고로 100만원 이상의 손해(자기차량사고보상금액과 자기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를 보상받은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차량손해위로금으로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 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 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 2.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 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전부손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없어짐 또는 망가져서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수리할 경우의 수리비용이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부분손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에 전부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자동차를 도난당하여 도난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도 이를 찾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 손해를 말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및 제1항의 차량가액이라 함은 사고발생 당시에 적용되는 보험개발원이 발행하는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상의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차량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보험계약을 맺었을 경우 보험 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발생한 장소와 시간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발생한 장소와 시간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던 중 발생된 사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중 사고
-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 ④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중 발생한 사고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①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4-16. 교통사고위로금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이 교통사고위로금보장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교통사고위로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서 교통사고라 함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가용자동차(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개인인 경우에 한하며, 이륜자동차를 제외합니다)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관할경찰서에 교통사고로 접수된 경우를 말하며, 경찰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용어풀이]

-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 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 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 2.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 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던 중 발생된 사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중 사고
-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 ④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중 발생한 사고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①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8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4-17. 안전운전위로금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안전운전위로금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시킴으로써 자동차보험의 대인 II 담보 또는 대물담보에서 보험금이 지급되고 자기과실률이 50%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이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안전운전위로금으로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 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 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 2. 자기과실률이라 함은 자동차사고시 운전중 과실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에 의하여 결정되며, 소송건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따릅니다.
- 3.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 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던 중 발생된 사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중 사고
-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 ④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중 발생한 사고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 2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8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0 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4-18. 주차장/단지내 사고위로금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주차장/단지내 사고위로 금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주차장 및 아파트 단지내에서 자가용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주차장 및 아파트 단지내 자동차 운전중 사고」라 합니다)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 또는 대물배상담보에서 보험금이지급된 경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사고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 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 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 2. 「주차장 및 아파트 단지내」라 함은 아래의 지역을 말합니다
 - (1) 아파트 단지 내
 - (2) 지정주차장(공설, 사설을 불문함)
 - (3) 기타 주택가에 주차구역선이 설정되어 있거나 사회상규(社會常規) 내지 관습상 인정되는 주차구역
- 3.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 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 니하는 사유) 및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던 중 발생된 사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중 사고
-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 ④ 보유불명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은 자기차량손해.위에서 「보유불명 사고」라 함은 가해차량의 보유 자와 등록번호가 모두 불명이거나 가해자가 불명인 사고를 말합니다.
- ⑤ 도로주행중(아파트 단지내 도로는 제외) 및 도로변 불법주차 중 발생한 사고
- ⑥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중 발생한 사고

제3조(사고위로금)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주차장 및 아파트 단지내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자동차보험에서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은 경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사고위로금으로 지급합니다.

- ①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에서 50만원이상 보상받은 경우
- ②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에서 피해자에게 50만원이상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단, 위의 제1호 및 제2호의 사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8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0 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4-19. 자동차사고 성형수술위로금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자동차사고 성형수술위로 금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에 자동차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100만원을 자동차사고 성형수술위로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용어풀이]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사고로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성형수술을 두 번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던 중 발생된 사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중 사고
-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 ④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중 발생한 사고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①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 [2]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4-20. 대인교통사고위로금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대인교통사고위로금보장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에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고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I 담보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대인교통사고위로금으로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 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 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 2.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 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 니하는 사유) 및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던 중 발생된 사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
- ④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중 발생한 사고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 2]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8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4-21. 안전사고위로금보장 특별약관 (학원폭력치료비, 유괴인신매매위로금)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에게 이 안전사고위로금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아래와 같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일상생활중 제3자에 의해 물리적 폭력행위를 당함으로써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25%를 학원폭력치료비로 지급합니다. 다만, 관할경찰서의 폭력사고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약취와 유인의 죄(형법 제31장 제287조, 제288조, 제289조, 제291조)에 의해 피해자가 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유괴인신매매위로금으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①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생긴 손해
-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친족에 의한 사고
-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의 적용을 받는 단체의 가입원으로서 그 단체의 활동 중에 발생된 사고
- ②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생긴 손해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원인이 불명확한 실종 및 행방불명이 된 경우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만 15세 미만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8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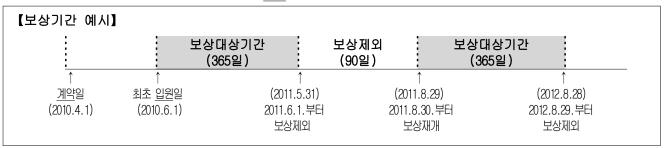
4-22. 갱신형 해외치료 입원의료비보장 특별약관

갱신형 해외치료 입원의료비보장 특별약관은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로 인한 간병에 관한 손해(의료비에 한합니다)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특별약관입니다

제1장 회사가 보상하는 사항

제1조(보장내용)

-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국내에서 입은 <u>상해</u> 또는 국내에서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u>해외의료기관</u>에 <u>입원</u>하여 의사(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의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u>상해</u> 또는 하나의 질병당 입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척추지압술(Chiroparactic, 추나요법 등)이나 침술(부황, 뜸 포함) 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 하나의 <u>상해</u> 또는 하나의 질병에 대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US \$1000.00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의 <u>상해</u>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④ 제1항의 질병에서 청약서상 「<u>계약</u> 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⑤ <u>회사</u>는 하나의 <u>상해</u>(동일 <u>상해</u>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u>상해</u>로 봅니다), 동일한 질병 또는 하나의 질병(의학상 관련이 있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질병은 동일한 질병으로 간주하며, 동일한 질병으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질병으로 봅니다)으로 인한 입원의료비는 최초 <u>입원</u>일로부터 365일까지(최초 <u>입원</u>일을 포함합니다) 보상합니다. 다만, 동일한 <u>상해</u> 또는 하나의 질병으로 인하여 최초 <u>입원</u>일로부터 365일을 넘어 <u>입원</u>할 경우에는 아래의 예시 와 같이 90일간의 보상제외기간이 지나야 새로운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보아 다시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⑥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가 <u>입원</u>하여 치료를 받던 중 <u>보험기간</u>이 만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u>입원</u>에 대하여는 <u>보험기간</u>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이 경우 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①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가 <u>병원</u>의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하여 납부할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 图 동일한 질병이란 발생 원인이 동일한 질병(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을 포함합니다)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 중에 발생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거나 의학상 관련이 없는 여러 종류의 질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입원한 때에는 동일한 질병으로 간주합니다.
- ⑨ 제4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u>계약</u>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10] 제9항의「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이 특별약관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u>계약</u>의 해지)에서 정한 <u>계약</u>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1] 이 특별약관 제16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u>계약</u>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u>계약</u>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9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2장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제2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입원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① <u>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u>의 고의. 다만, 그 <u>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u>가 보험금의 일부 <u>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u>인 경우에는 그 <u>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u>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u>보험수익자</u>(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계약자의 고의
 - ③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의 고의. 다만,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④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u>입원</u>한 경우. 그러나 <u>회사</u>가 보상하는 <u>상해</u>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⑥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가 정당한 이유없이 <u>입원</u>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 <u>회사</u>는 그로 인하여 악화된 부분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② <u>회사</u>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 ②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 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③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
- ③ 회사는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입원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①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F04~F99)
 - ②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한 경우(000-099)
 - ④ 선천성 뇌질환(Q00~Q04)
 - ⑤ 비만(E66)
 - ⑥ 비뇨기계 장애(N39, R32)
 - ⑦ 직장 또는 항문질환 (184, K60~K62)
- 4 회사는 아래의 입원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① 질병의 경우 치과치료, 보존, 금관, 틀니, 의치 및 임플란트로 인한 의료비
 - ②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다만, <u>회사</u>가 보상하는 <u>상해</u> 또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
 - ③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 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 다만, <u>회사</u>가 보상하는 <u>상해</u> 또 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④ 아래에 열거된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 ©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 단순포경(phimosis), 검열반 등 안과질환
 - ⑤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다만,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⑥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 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⑥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 ②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⑦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 ⑧ 인간면역바이러스(HIV)감염으로 인한 치료비
 - (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감염은 해당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3장 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3조(계약의 성립)

- ① 이 특별약관 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u>회사</u>는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가 <u>계약</u>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 ③ <u>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무진단 계약</u>」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u>계약(이하「진단계약</u>」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진단일을 말합니다)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u>계약</u>의 예정이율(이하「예정이율」이라 합니다)+1%(연4.75%)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u>회사는 계약자</u>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u>계약</u>의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 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정이율】

보험회사는 장래의 보험금 지급을 대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적립해 두는데 보험료 납입시점과 보험금 지급시점에는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보험회사는 적립된 금액을 운용할 수 있으므로 운용에 따라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러한 할인율을 「예정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낮아지고,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제4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 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계약(이하「통신판매 계약」이라 합니다)의 경우(보험기간이 1년 이상인 계약에 한함)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이하「보험계약대출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u>계약자</u>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 ① <u>계약자</u>는 <u>회사</u>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 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① 보험종목 또는 담보종목
 - ② 보험기간
 - ③ 보험료 납입주기,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 ④ 계약자, 보험가입금액 등 기타 계약의 내용
- ② <u>회사</u>는 <u>계약자</u>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u>계약</u>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 ③ <u>회사는 계약자</u>가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u>계약</u>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u>회사</u>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8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u>계약자</u> 에게 지급합니다.
- ④ <u>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u>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u>회사</u>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u>계약</u> 자가 <u>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u>를 변경하는 경우 <u>회사</u>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변경후 <u>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u>는 그 권리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 ⑤ <u>계약자</u>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u>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u>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제6조(보험나이 등)

- ① 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u>계약</u>일 현재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③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89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10년 4월 13일

⇒ 2010년 4월 13일 - 1989년 10월 2일 = 20년 6월 11일 = 21세

제7조(계약의 무효)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u>계약</u>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그러나 <u>회사</u>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u>계약</u>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u>회사</u>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u>계약</u>이 무효로 된 경우와 <u>회사</u>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u>회사</u>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8조(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u>보험기간</u>은 3년으로 합니다. 다만, 갱신시점의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의 보험나이로부터 갱신종료보험나이(최 초 <u>계약</u>을 체결할 때 약정한 갱신종료보험나이를 말합니다)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u>보험기간</u>으로 합니다.

제9조(보험료의 대체납입)

- ① <u>계약자</u>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기본<u>계약</u>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하는 방법(이하「보험료의 대체납입」이라 합니다)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 ② <u>계약자</u>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가 전액 충당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추가로 납입하여 야 합니다.

제10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가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u>계약</u>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u>회사</u>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만 15세 미만인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가 사망하는 경우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u>회사</u>는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1조(계약자의 임의해지)

<u>계약자</u>는 <u>계약</u>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u>계약</u>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u>회사</u>는 제18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장 보험료의 납입 등

제12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u>회사</u>는 <u>계약</u>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u>계약자</u>의 귀책 사유로 자동이체 및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부터 이 특별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u>회사</u>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이 특별약관에서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 (책임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을 <u>계약</u>일로 봅니다)부터 이 특별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u>회사</u>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다만,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 ① 제22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u>계약자</u> 또는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가 <u>회사</u>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u>회사</u>가 증명하는 경우
- ② 제2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③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까지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
- ③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13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계약 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납입기일」이라 합니다)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제14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 ① 계약자는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의한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의 이 자(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합산한 금액이 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과 <u>계약자</u>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u>계약자</u>의 <u>회사</u>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 내에 <u>계약자가 계약</u>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u>회사</u>는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18조(해지환급금) 제1 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u>회사</u>는 14일(<u>보험기</u> 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의 최초의 평일에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u>계약자</u>(타인을 위한 <u>계약</u>의 경우 특정된 <u>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u>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u>계약</u>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u>계약</u>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u>회사</u>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u>회사</u>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u>계약자</u>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u>계약자</u>가 당해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u>회사</u>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6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u>계약</u>의 해지)에 따라 <u>계약</u>이 해지되었으나 <u>계약자</u>가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u>계약자</u>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u>회사</u>가 정한 절차에 따라 <u>계약</u>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u>회사</u>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u>계약자</u>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된 이자 (보장보험료에 대해서 예정이율+1%(연4.75%)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u>계약</u>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3조(<u>계약</u>의 성립), 제12조(제1회 보험료 및 <u>회사</u>의 보장개시), 제22조(<u>계약</u> 전 알릴의무) 및 제2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17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① 타인을 위한 <u>계약</u>의 경우 <u>계약자</u>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u>계약</u>이 해지된 경우에는, <u>회사</u>는 해지 당시의 <u>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u>가 <u>계약자</u>의 동의를 얻어 <u>계약</u> 해지로 <u>회사</u>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u>회사</u>에게 지급하고 제5조(<u>계약</u>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u>계약자</u> 명의를 <u>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u>로 변경하여 <u>계약</u>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u>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u>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u>회사</u>는 제1항에 의한 <u>계약자</u> 명의변경 신청 및 <u>계약</u>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며, <u>계약</u>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 부활(효력회복) 됩니다.
- ③ <u>회사</u>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u>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u>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u>회사</u>는 법정상속인이 <u>보험수익</u> <u>자(보험금을 받는 자)</u>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u>계약자</u>에게 할 수 있습니다.
- ④ <u>회사</u>는 제1항의 통지를 <u>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u>의 통지가 7일을 경과하여 도달하고 이후 <u>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u>가 제1항에 의한 <u>계약자</u> 명의변경 신청 및 <u>계약</u>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u>계약</u>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⑤ <u>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u>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의해 <u>계약자</u>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u>계약자</u>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로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18조(해지환급금)

- □ 이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2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19조(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5장 다수보험의 처리 등

제20조(다수보험의 처리)

- ① <u>다수보험</u>의 경우 각 <u>계약</u>의 <u>보상대상의료비</u> 및 <u>보상책임액</u>에 따라 제3항에 의해 계산된 각 <u>계약</u>의 비례분담액을 <u>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u>
- ② 비례분담하여 지급된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은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을 보상최고한도로 합니다.
- ③ 각 <u>계약의 보상책임액</u> 합계액이 각 <u>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u> 중 최고액을 초과한 <u>다수보험</u>은 각 <u>계약</u>의 <u>보상책임액</u>을 비례 분담하여 지급하며, 다수보험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u>계약</u>별 비례분담액 =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 × <u>계약</u>별 <u>보상책임액</u>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제21조(연대책임)

- ①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된 <u>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u>가 동일한 <u>다수보험</u>의 경우 <u>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u>는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수<u>계약</u>이 체결되어 있는 <u>회사</u> 중 한 <u>회사</u>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u>회</u>사는 해당 보험금을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u>회사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u>가 다른 <u>회사</u>에 대하여 가지는 해당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u>회사</u>가 보상한 금액이 <u>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u>가 다른 <u>회사</u>에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의 일부인 경우에는 해당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6장 계약 전 알릴의무 등

제22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는 청약시(진단<u>계약</u>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u>계약</u>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u>계약</u>의 경우 <u>해외의료기관</u>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23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u>계약자</u> 또는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는 <u>보험기간</u> 중에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u>회사</u>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u>계약자</u> 또는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납입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이하「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료율(이하「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상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④ <u>계약자</u> 또는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u>회사</u>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u>회사</u>는 동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u>계약자</u> 또는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 에게 제3항에 의해 보상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① <u>회사</u>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 <u>계약자</u>,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2조(<u>계약</u>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②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3조(<u>상해보험계약</u> 후 알릴 의무)제1항에서 정한 <u>계약</u>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①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② <u>회사</u>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 ③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④ <u>회사</u>가 이 <u>계약의 청약시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u>계약자</u> 또는 <u>피보험자</u> (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u>
 - ⑤ 보험설계사 등이 <u>계약자</u> 또는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에게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u>계약자</u> 또는 <u>피보험자 (보험대상자)</u>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u>계약자</u> 또는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u>계약자</u> 또는 <u>피보험자(보</u>험대상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③ 제1항에 의하여 <u>계약</u>을 해지하였을 때 제18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u>계약자</u>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u>계약</u>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u>회사</u>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며, <u>계약</u>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u>계약</u>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u>계약자</u>에게 알려 드립니다. 또한, 제1항 제2호에 의한 <u>계약</u>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제23조(<u>상해보험계약</u> 후 알릴 의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5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을 <u>계약자, 피보험자</u> (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제4항에 관계없이 보장하여 드립니다.
- ⑥ <u>회사</u>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u>계약</u>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u>계약</u>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 니다.

제25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① <u>회사</u>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u>계약</u>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① 계약자,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 또는 <u>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u>가 <u>회사</u>에게 보험금(보험료 납입면제를 포함합니다)을 지급하게 할 목적으로 고의로 상해 또는 질병을 발생시킨 경우
 - ② 계약자,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 또는 <u>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u>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26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 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u>계약</u>이 성립되었음을 <u>회사</u>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u>계약</u>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u>계약</u>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7장 보험금 지급의 절차 등

제27조(주소변경통지)

- ① <u>계약자</u> 또는 <u>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u>(타인을 위한 <u>계약</u>에 해당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u>계약자</u>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u>계약자</u>가 <u>회사</u>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방법에 의해 계약자에게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28조(대표자의 지정)

- ① <u>계약자</u> 또는 <u>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u>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u>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u>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u>회사</u>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표 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u>계약</u>에 관하여 <u>회사</u>가 <u>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u> 1 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29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u>계약자</u> 또는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나 <u>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u>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30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① <u>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u> 또는 <u>계약자</u>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 (회사 양식)
 - ② 국내 병원이나 의원의 진단서 등
 - ③ 해외의료기관의 진료비영수증, 진료비계산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입원치료확인서, 진단서 등
 - ④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포함합니다)
 - ⑤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u>병원</u>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진단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u>병원</u>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u>의료기관</u>)에서 정하는 국내의 <u>병원</u>이나 의원이어야 합니다.

제31조(보험금의 지급)

- ① <u>회사</u>는 제30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u>회사</u>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 ③ <u>회사</u>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u>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u> 또는 <u>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u>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④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2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u>의료기관</u>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u>회사</u>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u>회사</u>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영업일]

「토요일」,「일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및「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합니다.

제32조(환급금의 지급)

① <u>회사는 계약자</u> 및 <u>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u>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1%(연4.75%)를,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

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② <u>회사</u>는 중도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u>계약자</u> 또는 <u>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u>에게 알려드리며, 그 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연3.75%)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③ <u>회사</u>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u>계약자</u> 또는 <u>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u>에게 알린 경우의 중도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과 해지환급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① 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의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 중 1년 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연1.875%),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를 적용합니다.
 - ② 중도환급금의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 중 <u>보험기간</u> 만기일까지의 기간은 예정 이율(연3.75%)을 적용하고, <u>보험기간</u>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연1.875%),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를 적용합니다.

제33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① <u>계약자</u>(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u>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u>)는 <u>회사</u>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분할지급 또는 일시지급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u>회사</u>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연3.75%)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분할지급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정이율(연3.75%)을 연단위 복리로 할 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34조(계약내용의 교환)

<u>회사</u>는 <u>계약</u>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계약자</u> 및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의 동의를 받아 다른 <u>회사</u>(보험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합니다)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u>회사</u>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6조(수집 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2항,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① $\underline{\text{계약자}}$, $\underline{\text{피보험자}}(\underline{\text{보험대상자}})$ 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② 계약체결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 ③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 ④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의 <u>상해</u> 및 질병에 관한 정보

제35조(보험계약대출)

- ① <u>계약자</u>는 이 <u>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u>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② <u>계약자</u>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지환 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u>회사</u>는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u>계약</u>의 해지)에 따라 <u>계약</u>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과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차감합니다.
-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8장 분쟁조정 등

제36조(특별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u>회사</u>는 <u>계약자</u>가 청약한 경우 <u>계약자</u>에게 이 특별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이 특별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통신판매 <u>계약</u>의 경우에는 <u>회사</u>는 <u>계약자</u>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의 방법 으로 할 수 있습니다.

- ① 광기록매체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약관이나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송부하는 방법. 이 경우 <u>계약자</u> 또는 그 대리인이 이를 수신한 때에 당해 약관이나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 ②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u>계약자</u>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 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u>보험기간</u>, <u>계약</u>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u>계약</u>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② <u>회사</u>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이 특별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u>계약자</u>에게 드리지 아니하거나 이 특별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u>계약</u>체결시 <u>계약자</u>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u>계약자</u>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u>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u>의 경우에는 <u>계약</u>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u>계약</u>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u>계약</u>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1을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위 제1항에 의한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u>계약자</u>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 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 ②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 ④ 제2항에 따라 <u>계약</u>이 취소된 경우에는 <u>회사</u>는 <u>계약자</u>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 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⑤ <u>회사</u>는 관계 법규에 따라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가 될 자가 다른 실손 의료보험<u>계약</u>을 체결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가 될 자가 다른 실손 의료보험<u>계약</u>의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상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37조(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2년 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38조(분쟁의 조정)

<u>계약</u>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u>회사</u>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9조(관할법원)

이 <u>계약</u>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u>계약자</u>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u>회사</u>와 <u>계약자</u>가 합의하여 관할법 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0조(특별약관의 해석)

- □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 특별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 2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u>회사</u>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u>계약자</u>나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제41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u>회사</u> 제작의 보험안내장(<u>계약</u>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이 특별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2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① <u>회사는 계약</u>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u>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u> 및 <u>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u>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등 관계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② <u>회사</u>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u>계약자</u>, <u>피</u> 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u>회사</u>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u>계약자</u>,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 또는 <u>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u>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u>회사</u>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43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u>계약</u>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u>계약</u>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u>회사</u>는 해지환급금을 <u>계약</u> 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4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45조(준거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붙암>용어의 정의

용 어	정 의		
계약	보험계약		
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객체)이 되는 사람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		
보험기간	계약에서 정한 대상이 되는 위험이 보장되는 기간		
회사	보험회사		
상해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상해보험계약	상해를 보장하는 계약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하는 의료기관이며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구분됨		
해외의료기관	해외소재 의료기관		
병원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요양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조산원은 제외)		
입원	의사가 보험대상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동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병원, 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 입상하여 의사의 관리를 받으며 치료에 전념하는 것		
보상대상의료비	실제 부담액 - 보상제외금액		
보상책임액	(실제 부담액 -보상제외금액) ×회사부담비율		
다수보험	실손 의료보험계약(우체국보험, 각종 공제, 상해질병·간병보험 등 제3보험, 개인연금퇴직 보험 등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상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2 개 이상 체결되었고, 그 계약이 동일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이 있는 다수의 실손 의료보험계약을 말함		

5. 배상책임관련 특별약관

5-1. 일상생활중배상책임(11)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본인 및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 (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 이 일상생활중배상책임(II)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다음에 열거하는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피해자에게 신체의 장해에 대한법률상의 배상책임(이하 「대인 배상책임」이라 합니다)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이하 「대물 배상책임」이라 합니다)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배상책임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합니다)로 인한 우연한 사고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 ①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취득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뺍니다)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 던 비용
 -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②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대신하여 회사가 손해배상처리를 할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② 회사는 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 ① 제1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1억원 한도로 보상하되, 매회의 사고마다 자기부담금(「대물 배상책임」은 20만원, 「대인 배상책임」은 없음)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하는 「대물 배상책임」및 「대인 배상책임」 손해를 더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 ② 제1항 제2호 ③, 또는 ◎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 ③ 제1항 제2호 ⓒ 또는 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
 - ②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③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④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⑤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②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 지 아니합니다.
 -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
 - ②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 ④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
 - ⑤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 ⑥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

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7)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 ⑧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 ⑨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 ⑩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① 폭력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제4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을 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사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6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7조(손해방지의무)

- □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①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 ②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 ③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받는 일
 - ④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1항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 ①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 ③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8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계약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 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및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9조(보험금의 분담)

- ① 회사는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넘을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10조(대위권)

-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드립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11조(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①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 ②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맺으려고 하든지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③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때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 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 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5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②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1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으
-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①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②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 ③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④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⑤ 손해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증명한 경우 에는 제4항에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제13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①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주소와 성명
 - ② 피해자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 ③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 각 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 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 ③ 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④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아니합니다.
 -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 가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하는 때
- ⑤ 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회사에 양도하여야합니다.

제15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만 15세 미만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8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 출)은 제외합니다.

5-2.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11)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 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제2항에서 정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 이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II)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에 다음에 열거하는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피해자에게 신체의 장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이하「대인 배상책임」이라 합니다)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이하「대물 배상책임」이라 합니다)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배상책임 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하「주택」이라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합니다)로 인한 우연한 사고
- ② 제1항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함은 아래에 정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그 가족을 말합니다.
 - 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본인」이라 합니다)
 -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이하「배우자」라 합니다)
 -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 거중인 동거친족(민법 제 777조)
 - ④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자녀
- ③ 위 제2항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본인과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 ①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 취득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뺍니다)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 던 비용
 -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②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대신하여 회사가 손해배상처리를 할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② 회사는 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 ① 제1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1억원 한도로 보상하되, 매회의 사고마다 자기부담금(「대물 배상책임」은 20만원,「대인 배상책임」은 없음)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하는「대물 배상책임」및「대인 배상책임」손해를 더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 ② 제1항 제2호 ③, © 또는 ©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 ③ 제1항 제2호 © 또는 @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
 - ②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③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④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⑤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②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
 - ②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 ④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
 - ⑤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 ⑥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⑦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 ⑧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 ⑨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 ⑩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① 폭력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제4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6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7조(손해방지의무)

-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①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 ②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 ③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받는 일
 - ④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1항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 ①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 ③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8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계약자는 필요한 서류 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 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및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9조(보험금의 분담)

① 회사는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넘을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10조(대위권)

-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드립니다.
- ③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11조(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①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 ②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맺으려고 하든지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③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5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②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1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①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②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 ③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④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5 손해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제4항에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제13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①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 ② 피해자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 ③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 각 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 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 ③ 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4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아니합니다.
 -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 가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하는 때
- ⑤ 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 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15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1]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만 15세 미만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8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5-3. 자녀만의배상책임(11)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 이 자녀만의배상책임(II)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다음에 열거하는 우연한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피해자에게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를 입힘으로써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민법 제755조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법정감독 의무자가 타인의 신체의 장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이하「대인 배상책임」이라 합니다)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이하「대물 배상책임」이라 합니다)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배상책임소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하「주택」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합니다)로 인한 우연한 사고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①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 취득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뺍니다)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 였던 비용
 -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②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대신하여 회사가 손해배상처리를 할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② 회사는 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 ① 제1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1억원 한도로 보상하되, 매회의 사고마다 자기부담금(「대물 배상책임」은 20만원, 「대인 배상책임」은 없음)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하는「대물 배상책임」및 「대인 배상책임」손해를 더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 ② 제1항 제2호 ①, ① 또는 ②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 ③ 제1항 제2호 © 또는 @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
 - ②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③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④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 포함)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⑤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②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동거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의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제3자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
 - ④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대해서 그 재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 ⑤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 ⑥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 ⑦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 제외), 총기(공기총 제외)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제4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을 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회사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6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

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7조(손해방지의무)

- □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①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강구하는 일
 - ②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할 일
 - ③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④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아래에 따라 결정합니다.
 - ①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 ②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 ③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계약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 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및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9조(보험금의 분담)

- ① 회사는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넘을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10조(대위권)

-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드립니다.
- ③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11조(계약 후 알릴의무)

- ①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①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 ②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맺으려고 하든지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③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때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 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 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5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②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1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아 니하였을 때
-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①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②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 ③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④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⑤ 손해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제4항에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제13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①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 ②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 ③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 각 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 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치를 대행할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 ③ 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④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아니합니다.
 -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 가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하는 때
- 5 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

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 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15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만 15세 미만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8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6. 태아 및 임신출산관련 특별약관

6-1. 저체중아육아비용 및 신생아입원일당보장 특별약관

제1조(특별약관의 체결)

이 저체중아육아비용 및 신생아입원일당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은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제2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함은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의 출생전자녀(이하「태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단, 임신 22주 이내의 태아에 한하여 가입가능 합니다.

② 제1항의 태아는 출생시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됩니다.

제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제2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라 합니다) 중에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아래와 같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보험기간 중에 저체중아(출생시 체중이 2.5kg이하인 신생아를 말합니다)로 출생하여 인큐베이터(조산아 보육기를 말합니다)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최고 60일을 한도로 실제 사용일수에서 2일을 공제하고 인큐베이터 사용 1일당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저체중아육아비용으로 지급합니다.
- ②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출생전후기 질병」(【별표31(출생전후기에 발생한 주요병태 분류표)】참조)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4일이상 계속 입원(병원 또는 의원 등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하여 치료를 받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4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신생아입원일당으로 지급합니다.

(기준 : 보험가입금액 3만원)

구분	저체중아육아비용	신생아입원일당
지급금액	3만원	1만원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신생이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② 제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경우 동일한 「출생전후기 질병」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보험기간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만, 신생아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

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합니다.

- ③ 제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신생아입원일당」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생아입원일당을 계속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④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신생아입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이 특별약관 가입시 계약자가 태아의 이상 상태를 이미 알고 있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저체 중아육아비용 및 신생아입원일당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6조(출생전후기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출생전후기」라 함은 임신 28주부터 생후 1주 사이의 기간을 말합니다.

제7조(회사의 보장개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회사의 보장은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합니다) 제9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출생한 날에 시작하며, 이 날로부터 1년이 지난날에 끝납니다.

제8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출생전후기 질병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 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9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만 15세 미만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6-2. 출생위험보장 특별약관 (저체중아 출생, 장해 출생, 심한장해 출생)

제1조(특별약관의 체결)

이 출생위험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은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제2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함은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의 출생전자녀(이하「태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단, 임신 22주 이내의 태아에 한하여 가입가능 합니다.
- ② 제1항의 태아는 출생시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됩니다.

제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고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제2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계약 체결사

임신 22주 이내의 태아에 한합니다. 다만, 인공수정에 의한 임신은 제외합니다)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아래와 같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저체중아 출생보험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체중이 출생시 2,000그램 이하인 경우(이하「저체중아 출생」이라 합니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출생한 후 30일 이상 생존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를 저체중아 출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② **장해 출생보험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별표32(장해의 대상)] 에 해당하는 장해(이하「장해 출생」이라 합니다)를 가지고 있는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가 발견된 후 30일 이상 생존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20%를 장해 출생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심한장해 출생보험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별표33(심한장해의 대상)] 에 해당하는 장해(이하「심한장해 출생」이라 합니다)를 가지고 있는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가 발견된 후 180일 이상 생존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심한장해 출생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보험금은 사고발견기간 이내에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사고가 발견되어진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다태아로 출생한 경우 각각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하여 저체중아 출생, 장해출생, 심한장 해 출생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모(임산부)의 고의
- ② 계약자의 고의
- ③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제5조(회사의 보장개시)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회사의 보장은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출생한 날에 시작하여 이 날로부터 1년(제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3호의 심한장해에서 뇌성마비의 경우에는 2년간으로 합니다. 이하「사고발견기간」이라 합니다)이 경과된 때에 끝납니다. 단, 사고발견기간 종료전이라도 사고가 발견되어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보통약관 제11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일시납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7조(무효 또는 해지인 경우의 환급)

① 계약이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전액과 경과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② 제1항 이외의 사유로 무효 또는 해지가 된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의 해지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출생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저체중아 출생, 장해 출생, 심한장해 출생이 중복된 경우)

① 1인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제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저체중아 출생, 장해 출생, 심한장해 출생 중 2가지 이상이 발견된 경우(시기가 다르게 발견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각각에 대하여 출생보험금을 지급하여드립니다.

② 1인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제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장해 중 2가지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먼저 발견된 하나의 장해에 대해서만 장해 출생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1인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제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심한장해 중 2가지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먼저 발견된 하나의 심한장해에 대해서만 심한장해 출생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9조(위로금)

- ① 제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저체중이 출생, 장해 출생의 경우 발견후 30일 이내, 심한장해 출생의 경우에는 발견후 180일 이내에 사망하는 때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2배액을 위로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다태아로 출생하여 1인 이상이 30일 이상 생존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위로

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③ 태아가 아래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산이 되거나 사산된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위로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한명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도 출생하고 유산 또는 사산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① 자연유산인 경우
 - ②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생명 또는 건강에 심한 장해를 초래할 수 있어 임신이 중단된 경우
 - ③ 태아의 기형과 정신박약이 예견되어 임신이 중단된 경우

제10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만 15세 미만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8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6-3. 선천이상수술위로금보장 특별약관

제1조(특별약관의 체결)

이 선천이상수술위로금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은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제2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라 함은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의 출생전자녀(이하「태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태아는 출생시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됩니다.

제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별표34(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분류표)】에서 정한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이하「선천이상」이라합니다)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5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선천이상수술위로금으로 지급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이 특별약관 가입시 계약자가 태아의 이상 상태를 이미 알고 있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선천 이상수술위로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5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선천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선천이상」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제(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WE BLOOK)은 제외합니다.

제6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만 15세

미만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8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제20조 (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6-4. 모성사망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별표35(여성산과(임신,출산및산후)관련 특정질병 분류표)】에서 정한「여성산과(임신,출산및산후)관련 특정질병」으로 인하여 임신중 또는 분만후 42일 이내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모성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여성산과(임신,출산 및 산후)관련 특정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의 「여성산과(임신,출산및산후)관련 특정질병」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여성산과 (임신,출산및산후)관련 특정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별표35(여성산과(임신,출산및산후)관련 특정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유산된 임신, 임신,출산및산후기에서의 부종, 단백뇨 및 고혈압성 장애, 주로 임신과 관련된 기타 모성 장애, 태아와 양막강 및 가능한 분만문제와 관련된 산모관리, 진통 및 분만의 합병증, 분만, 주로 산후기에 관련된 합병증을 말합니다. ② 「여성산과(임신,출산및산후)관련 특정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3조(보험기간)

보험기간은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부터 임신중 또는 분만후 42일까지로 합니다.

제4조(보험료의 납입)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보통약관 제11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일시납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 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모성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8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6-5. 임신·출산질환수술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임산출산관련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임산출산질환수술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임신·출산관련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의「임산출산관련질환」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임산출산관련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별표36(임산출산관련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서 부종, 단백뇨 및 고혈압성 장애, 주로 임신과 관련된 기타 모성장애, 태아와 양막강 및 가능한 분만문제와 관련된 산모관리, 진통 및 분만의 합병증, 주로 산후기에 관련된 합병증을 말합니다.

②「임산·출산관련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임산출산관련질환」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임산출산관련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OK)은 제외합니다.

제4조(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부터 분만 후 42일까지로 합니다.

제5조(보험료의 납입)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보통약관 제11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일시납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8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6-6. 임산출산질환입원일당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임산출산관련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병원 또는 의원 등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4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임산출산질환입원일당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임신·출산질환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② 동일한「임산·출산·관련질환」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보험기간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만, 임산·출산질환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합니다.
- ③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임산출산관련질환」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이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산출산질환 입원일당을 계속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④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임산출산질환입원일 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⑤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

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질병입원일당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특별약관이 자동갱신 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 기 제6항의「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图 보통약관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6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3조(임산출산관련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의「임산출산관련질환」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임산출산관련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별표36(임산출산관련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서 부종, 단백뇨 및 고혈압성 장애, 주로 임신과 관련된 기타 모성장애, 태아와 양막강 및 가능한 분만문제와 관련된 산모관리, 진통 및 분만의 합병증, 주로 산후기에 관련된 합병증을 말합니다.
- ②「임산·출산관련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4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임산출산관련질환」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임산출산관련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임산출산관련질환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임산출산관련질환의 치료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임산출산관련질환을 입원 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임산출산관련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후 최초로 임산출산관련질환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임산출산관련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제5조(보험기간)

보험기간은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부터 분만 후 42일까지로 합니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보통약관 제11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일시납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6-7. 유산수술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유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유산수술비로 지

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유산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의「유산」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유산」이라 함은 【별표37(유산 분류표)】에서 정한 자궁외 임신, 포상기태, 기타이상 임산부산물, 자연유산, 의학적 유산, 기타유산, 상세불명의 유산, 시도된 유산의 실패, 유산, 자궁외 임신 및 기타 임신에 따른 합병증을 말합니다.

②「유산」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유산」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유산」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제4조(보험기간)

보험기간은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부터 분만시까지로 합니다.

제5조(보험료의 납입)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보통약관 제11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일시납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8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6-8. 유산입원일당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유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병원 또는 의원 등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4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유산입원일당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유산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② 동일한「유산」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보험기간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만, 유산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합니다.
- ③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유산」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이 보험기 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산입원일당을 계속 보상 하여 드립니다.
- ④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유산입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유산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의「유산」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유산」이라 함은 【별표37(유산 분류표)】에서 정한 자궁외 임신, 포상기태, 기타이상 임산부산물, 자연유산, 의학적 유산, 기타유산, 상세불명의 유산, 시도된 유산의 실패, 유산, 자궁외 임신 및 기타 임신에 따른 합병증을 말합니다.
- ②「유산」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4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유산」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유산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유산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유산의 치료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 견에 따라 유산을 입원 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유산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 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후 최초로 유산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유산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제5조(보험기간)

보험기간은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부터 분만시까지로 합니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보통약관 제11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일시납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 □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추가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 ① 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추가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에 따라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 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에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본인 이외에 아래의 가입 대상자 중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사람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합니다.
 - ① 본인의 배우자
 - ② 본인의 부모
 - ③ 배우자의 부모
 - ④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자녀
- ② 제1항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최초 계약체결시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자를 말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

- ① 이 특별약관은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에 가입되어 있는 피보험자의 부양자가 동시에 보통약관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에 한해서 부가할 수 있습니다.
- ② 이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은 보통약관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된 자가계약을 체결할 때에 출생전자녀(이하「태어」라 합니다)인 계약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 ③ 제2항의 태아는 출생시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됩니다.

제2조(부양자에 대한 회사 보장개시)

- □ 이 특별약관에서 부양자라 함은 태아의 부양자로써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자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부양자에 대한 회사의 보장은 보통약관 제1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하「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합니다))에 시작하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로부터 태아가 출생한 날까지의 기간에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을 더한 날에 끝납니다.

제3조(출생통지)

- ①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는 태아가 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회사에 알려야합니다.
 - ① 통지서 (회사양식)
 -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③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 ② 회사는 제1항의 알림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4조(유산 또는 사산 등)

- [] 태아가 유산 또는 사산 등에 의해 출생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합니다.
- [2] 계약자는 제1항의 사실이 발생된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① 통지서 (회사양식)
 - ② 의사 또는 조산원의 유산, 사산 등을 증명하는 서류
 - ③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 ④ 최종보험료 영수증
- ③ 회사는 제2항의 알림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제5조(복수출생의 경우)

- □ 태아가 복수로 출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상 선순위로 기재된 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제1항의 가족관계등록상 먼저 기재될 자가 아닌 다른 자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지정할 경우 회사는 이에 따릅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출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하고 동시에 출생한 자가 생존하여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한하여 동시에 출생한 자 가운데 다음순위의 자를 새로운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2항의 경우와 같이 계약자가 새로운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회사는 이에 따릅니다.
- ④ 계약자가 제3항의 변경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 (회사양식)
 - ② 새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될 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③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 ⑤ 제3항의 변경을 회사가 승인할 때에는 원래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시로 소급하여 그 변경이 행해진 것으로 하여 회사는 그때부터 변경 후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해서 계약상의 책임을 집니다.
- 6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7 제3항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변경 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합니다.
- 图 계약자가 원래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고의로 사망케한 경우에는 제3항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변경을 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보험금 지급기준 적용나이)

보통약관 제8조(보험나이 등)에서 적용하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나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출생한 날로 합니다.

제7조(보험나이 계산 및 특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에 있어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는 0세로 합니다.

제8조(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및 보험나이의 변경)

- ① 회사가 제3조(출생통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출생일이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출생일의 반년전의 해당일로 변경하며, 이로 인하여 보호자의 보험나이가 바뀌어 질 경우에는 이것을 변경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해 부양자의 보험나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변경 후의 보험나이에 따라서 보험료를 변경합니다.
- ③ 제2항의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정산하고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회사는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부족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이를 회사에 납입해야 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3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자동갱신 특별약관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

이 자동갱신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은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특별약관 중 갱신형 실손 의료비보장 특별약관, 갱신형 해외치료 입원의료비보장 특별약관, 갱신형 장기요양급여금(I)보장 특별약관, 갱신형 장기요양급여금(II)보장 특별약관, 갱신형 장기요양급여금(II)보장 특별약관, 갱신형 장기요양급여금(II)보장 특별약관, 갱신형 부부 장기요양급여금(II)보장 특별약관, 갱신형 부부 장기요양급여금(II)보장 특별약관, 갱신형 질병수술위로금보장 특별약관, 갱신형 질병입원일당(1일이상)보장 특별약관, 갱신형 질병입원일당(4일이상)보장 특별약관, 갱신형 질병중환자실 입원일당(1일이상)보장 특별약관, 갱신형 7대질병입원일당보장 특별약관, 갱신형 암진단비보장 특별약관, 갱신형 임진단비 [체증형]보장 특별약관, 갱신형 고액암진단비보장 특별약관, 갱신형 요전단비보장 특별약관, 갱신형 여성3대암 진단비보장 특별약관, 갱신형 뇌졸중진단비보장 특별약관, 갱신형 기조중진단비보장 특별약관, 갱신형 기조중진단비보장 특별약관, 갱신형 임정임인당 음별약관, 갱신형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보장 특별약관, 갱신형 암수술비(I)보장 특별약관, 갱신형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체증형]보장 특별약관, 갱신형 암수술비(I)보장 특별약관, 갱신형 음병약관, 갱신형 암수술비(I)보장 특별약관, 갱신형 함암방사선약물치료비보장 특별약관, 갱신형 암입원일당보장 특별약관, 갱신형 특정전 염병위로금 특별약관, 갱신형 식중독위로금 특별약관, 갱신형 시력치료비보장 특별약관, 갱신형 부정교합치료비보장 특별약관, 갱신형 기약자간에 합의가 되었을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2조(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 자동갱신)

① 보장계약이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보장계약이 만기되는 날로부터 15일 전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종전의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이하「갱신전 보장계약」이라 합니다)이 만기되는 날의 다음날(이하「갱신일」이라 합니다)에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 ① 갱신된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이하「갱신보장계약」이라 합니다)만기일이 회사가 정한 기간내일 것
- ②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가 회사가 정한 나이의 범위내일 것
- ③ 갱신전 보장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 ② 갱신보장계약의 보험기간은 갱신전 보장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갱신일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로부터 갱신종료보험나이(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한 갱신종료보험나이를 말합니다)까지의 기간이 갱신전 보장계약의 보험기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3조(자동갱신 적용)

① 회사는 갱신계약에 대하여 갱신전 약관을 적용하며(법령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 제도적인 약관개정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 적용),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 등을 개정한 경우에는 갱신보장계약에 대해서는 갱신일현재의 제도 또는 보험료 등을 적용합니다.

② 회사는 제2조(자동갱신적용대상 계약 자동갱신)에서 정한 갱신제한 사유 및 제1항의 갱신보장계약 보험료에 대하여 갱신 대상 보장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그 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4조(갱신보장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연체와 계약의 해제)

① 계약자가 갱신전 보장계약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갱신보장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갱신보장계약의 갱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갱신보장계약의 갱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에 보장계약은 해제되는 것으로 봅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간(갱신보장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갱신보장계약의 갱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보장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5조(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장개시)

제2조(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 자동갱신)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갱신보장계약의 보장개시는 갱신일 당일부터 개시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 및 해당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을 따릅니다.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 납입)

- ①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는 이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에 따라 계약자의 거래은행(우체국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지정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 납입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제1회 보험료의 납입방법을 계약자의 거래은행 지정계좌를 통한 자동납입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서를 접수하고 자동이체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래은행의 지정계좌로부터 제1회 보험료가 이체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를 청약일 및 제1회 보험료 납입일로 하여 보통약관의 제1조(계약의 성립)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 납입해당일에도 불구하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와 계약자가 별도로 정한 일자로 합니다.

제3조(계약후 알릴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이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은 신용카드회사(이하「카드회사」라 합니다)의 카드회 원을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로 하여 초회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나 카드회사의 카드회원인 계약자가 회사와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신용카드 법인대리점을 통하여 보험료를 자동납입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가 정해진 신용카드로써 보험료를 결제하기 위하여 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봅니다.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카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제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날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봅니다.)

제3조(사고카드의 계약)

- ① 보험계약자가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 2 제1항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 정지통보를 받은 카드, 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서로 다른 카드를 말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신용카드이용 계속보험료납입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① 이 신용카드이용 계속보험료납입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은 신용카드회사(이하「카드회사」라 합니다)가 카드회원을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로 하여 2회 이후 계속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나 카드회사의 카드회원인 계약자가 회사와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신용카드 법인대리점을 통하여 2회 이후 계속보험료를 자동납입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은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가 정해진 신용카드로써 계속보험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 영수시점으로 봅니다.

제3조(사고카드의 계약)

- ① 계약자가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2회 이후 계속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제2조(보험료의 영수)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것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지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통보를 받은 카드, 카드상의 기재 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서로 다른 카드 등을 말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은 보통약관(다른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특별약관도 포함합니다. 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통약관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② 보통약관이 해지,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 니다.
- ③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 ① 회사는 보통약관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는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의 이륜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이륜자동차[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2륜의 자동차(2륜인 자동차에 1륜의 측차를 붙인 것과 배기량 125씨씨이하로서 3륜이상인 자동차를 포함합니다)]와 배기량이 50씨씨미만(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 출력이 0.59킬로와트미만)인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도중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인가 아닌가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거주하는 관할경찰서에서 발행하는 사고처리확인 원등으로 결정합니다.

제3조(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보통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보통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보통약관과 동시에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특정부위부보장 특별약관

제1조(특별약관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별약관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가 우리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② 이 특별약관의 효력발생일은 보통약관 제1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③ 보험계약이 해지,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도 제2조(특별면 책조건의 내용) 제1항에서 정한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면책을 조건으로 체결한 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전 에 동일한 특정부위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특별면책조건의 내용)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면책기간 중에 【별표38】(특정부위 분류표)중에서 회사가 지정한 부위 (이하 「특정부위」라 합니다)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특정부위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전이로 인하여 특정부위 이외의 부위에 진단확정된 질병(단, 전이는 합병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으로 보험계약에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② 제1항의 면책기간은 특정부위의 상태에 따라 「1년부터 5년」 또는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으로 하며 그 판단기준은 회사에서 정한 계약사정기준을 따릅니다. 다만, 개개인의 질병의 상태 등에 대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서 지정한 특정부위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특정부위 이외의 부위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제1항에서 지정한 특정부위에 대해 진단확정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을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⑤ 제4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보통약관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발생한 경우 부활일을 제4항의 청약일로 합니다.
- ⑥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서 정한 면책기간의 종료일을 포함하여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그 입원에 대해서는 면책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을 입원의 개시일로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특정부위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인지 아닌지는 의사의 진단서와 의견을 주된 판단자료로 하여 결정합니다.
- ⑧ 제1항의 특정부위는 2개 이내에서 선택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제3조(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부활 (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보통약관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사망보험금 양육연금전환 특별약관

제1조 (특별약관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사망보험금 양육연금전환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사망보험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또는 체결한 이후에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보험계약자」는「계약자」,「보험회사」는「회사」라 합니다)

② 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으로 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효력은 제6조(양육연금의 운용) 제1항에서 정한 양육연금의 지급이 종료될 때까지 소멸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 (특별약관의 청약)

- □ 계약자는 계약의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전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의 청약시 계약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양육연금을 받는 자(이하「수익자녀」라 합니다)로 지정 또는 변경하여야 합니다.
- ③ 계약자는 계약에서 일시에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의 50%이상을 양육연금의 지급을 위한 전환금액(이하「양육연금전환금액」이라 합니다)으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 ④ 계약자는 수익자녀 나이 15세, 20세, 25세 중 하나를 양육연금의 지급종료나이(이하「양육연금종료나이」라 합니다)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 ⑤ 계약자가 이 특별약관을 청약하고 회사의 승낙(이하「특별약관의 체결」이라 합니다)이 있은 후 계약에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① 계약의 사망보험금 지급시 수익자녀의 나이가 이 특별약관의 체결시 정한 양육연금종료나이와 같거나 초과한 경우
 - ② 이 특별약관의 체결 후 수익자녀가 사망하거나 계약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서 제외된 경우

제3조 (수익자녀의 범위)

제2조(특별약관의 청약) 제2항의 수익자녀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 자녀 중 1인으로 합니다.

제4조 (계약내용의 변경)

- ① 계약자는 계약의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전에 한하여 회사의 승낙을 얻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녀
 - ② 양육연금전환금액
 - ③ 양육연금종료나이
- ② 계약자가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5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양육연금의 운용)

- ① 회사는 제2조(특별약관의 청약) 제3항에서 정한 양육연금전환금액을 재원(이하「양육연금재원」이라 합니다)으로 양육연금의 지급기간동안 동일한 금액(이하「양육연금」이라 합니다)을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수익자녀에게 지급합니다. 이 경우 미지급된 양육연금재원에 대해서 계약의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양육연금의 지급기간(이하「양육연금지급기간」이라 합니다)이라 함은 제2조(특별약관의 청약) 제4항의 양육연금종료나이에서 계약의 사망보험금 지급시 수익자녀의 나이를 뺀 기간을 말합니다.
- ③ 양육연금지급기간 중 수익자녀의 나이에 따른 제한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수익자녀의 나이가 만20세 미만인 경우 수익자녀는 미지급 양육연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수령할 수 없습니다.
- ② 수익자녀의 나이가 만20세 이상인 경우 수익자녀는 미지급 양육연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이때 그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은 계약의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으로 합니다.
- ④ 제3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수익자녀가 양육연금지급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미지급 양육연금을 수익자녀의 법정상속인에게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며 그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은 계약의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으로 합니다.

5 수익자녀 또는 수익자녀의 법정대리인은 제3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양육연금지급기간 중 미지급 양육연금에 대해서 계약의 보통약관에 의한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의 청구나 보험금수령방법의 변경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제7조 (나이의 계산 및 적용)

- ① 제2조(특별약관의 청약) 제4항 내지 제5항 및 제6조(양육연금의 운용) 제2항의 나이는 수익자녀의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 현재 수익자녀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며, 이후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양육연금의 운용) 제3항의 나이는 수익자녀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없습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청약을 승낙한 날로 합니다.

제9조 (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부활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의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 ② 계약의 부활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이 특별약관을 부활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제8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제2 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10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수익자녀, 수익자녀의 법정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양육연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 (회사양식)
-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③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 서 포함)
- ④ 수익자녀의 법정대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⑤ 기타 수익자녀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11조 (보험금 등의 지급)

- ① 회사는 제10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양육연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계약자 또는 수익자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수익자녀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2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의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이하「특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제2조(특별약관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의 승낙으로 부가되어집니다.

②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에 의한 변경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 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3촌 이내 의 치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 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 2.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 서 포함)

제5조(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인감증명서
- 5.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6.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2종 보통약관

제1장 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계약의 성립)

-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보험계약」은「계약」,「보험계약자」는 「계약자」,「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무진단 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진단일을 말합니다)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예정이율(이하「예정이율」이라 합니다)+1%(연5.0%)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예정이율】

보험회사는 장래의 보험금 지급을 대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적립해 두는데 보험료 납입시점과 보험금 지급시점에는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보험회사는 적립된 금액을 운용할 수 있으므로 운용에 따라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러한 할인율을「예정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낮아지고,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제2조(청약의 철회)

-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이하「통신판매 계약」이라 합니다)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그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이하「보험계약대출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 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③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3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청약 시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 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1을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 제3문의 규정에 의한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 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 ②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4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②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 ③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 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 는 것은 아닙니다.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 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① 보험종목
- ② 보험기간
- ③ 보험료 납입주기,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 ④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 ⑤ 보험가입금액 등 기타 계약의 내용
-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변경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그권리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 ④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9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제6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 철회)

-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9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4조(계약의 무효)에 의거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9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계약의 소멸)

- ①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또는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

- 가 적립한 적립부분의 책임준비금(중도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고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상해 이외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도 이 계약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책임준비금(중도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8조(보험나이 등)

-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4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89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10년 4월 13일 ⇒ 2010년 4월 13일 - 1989년 10월 2일 = 20년 6월 11일 = 21세

제2장 보험료의 납입 등

제9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 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이 약관에서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 ① 제26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 ② 제2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③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까지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의 보험료는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보험료(이하「보장보험료」 라 합니다)와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이하「적립보험료」라 합니다)로 구성됩니다.(이하「보장보 험료」와「적립보험료」를 합하여「보험료」라 합니다)

제10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계약 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납입기일」이라 합니다)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제11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 ① 계약자는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규정된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7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의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더한 금액이 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

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 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19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 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 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9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라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된 이자(보장보험료에 대해서 예정이율+1%(연5.0%)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조(계약의 성립), 제9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3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2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7조(사기에 의한 계약)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14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하여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⑤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의해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3장 보험금의 지급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다음에 정한 운전자(자가용)형, 비운전자형 중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한가지 형만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운전자(자기용)형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아래와 같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아래에 정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교통상해」라 합니다)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고 있는 동안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등의 교통사고
- ②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로 [별표1(장해분류표)] 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③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로 [별표1(장해분류표)] 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별표1(장해분류표)] 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비운전자형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 을 받는 자)에게 아래와 같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아래에 정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상해」라 합니다)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고 있는 동안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등의 교통사고
- ②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상해로 [별표1(장해분류표)] 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 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③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상해로 [별표1(장해분류표)] 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별표1(장해분류표)] 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 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용어풀이 】

-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 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 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 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 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 2. 「기타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 ②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 포함)
 - ④ 6종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기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3.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제1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로 인정합니다.

②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합니다.

③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별약관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별약관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별약관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별표1(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별표1(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 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1(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별표1(장해분류표)】 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7]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图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 감하여 지급합니다.

- ① 이 계약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 ② 제1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⑨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①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고도후 유장해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1]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및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3호에서 정한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은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계약자의 고의
- ④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 다
 -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 ②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 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 ③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③ 회사는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①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 (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 ②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 ③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 ④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완료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소정의 사업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을 말합니다)로부터 이 계약의 적립부분 부리이율(이하「[저축]공시이율」이라 합니다)로 적립한 금액(중도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고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만기환급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나 이 약관에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원리금 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저축]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에 [저축]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경과기간이 5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3.5%, 가입후 경과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2.75%로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서 정한 [저축]공시이율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저축]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최저보증이율】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 및 외부지표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이 [저축]공시이율에 따라 부리되며 [저축]공시이율이 2%인 경우(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경과기간 5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3.5%, 가입후 경과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2.75%일 경우), 적립금은 [저축]공시이율(2%)이 아닌 최저보증이율(가입후 경과기간 5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3.5%, 가입후 경과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2.75%)로 부리됩니다.

제19조(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때,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하여는 회사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아래의 중도해지시 적용이율을 적용합니다.

경과기간	중도해지시 적용이율
1년 미만	[저축]공시이율 ×85%
1년 이상	[저축]공시이율 ×100%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른 이율 적용 예시】

- 1.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로부터 6개월 시점에서 해지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해지시점까지의 기 간에 대하여「[저축]공시이율 ×85%」적용
- 2.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로부터 1년 시점에서 해지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해지시점까지의 기간 에 대하여「[저축]공시이율」적용
- 2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20조(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계약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1조(중도인출)

① 계약자는 유효한 계약으로서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에서 계산된 적립부분 해지환급 금(이 계약에서 정한 보험계약대출금이 있는 때에는 그 원리금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90%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연도 기준 연12회에 한하여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보험연도】

당해연도 보험계약 해당일로부터 차년도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 매1년 단위의 연도. 예를 들어, 보험계약일이 2010년 8월 15일인 경우 보험연도는 8월 15일부터 차년도 8월 14일까지 1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 요청시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최초로 도래하는 다음달 계약 해당일(이하「해당 시점」이라 합니다)부터 만기 계약 해당일까지의 잔여기간동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금액(중도인출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여 계산된 금액)을 [저축]공시 이율로 매월 계약 해당일에 분할 계산하여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제2항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중도인출 할 수 없습니다.

제2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2년 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4장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23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2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습니다.

-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납입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할 보험료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에게 제3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3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②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
-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①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②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
 - ③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④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 ⑤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19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 다.
-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제2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을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①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 니다.

제26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 ②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19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27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 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 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장 보험금 지급의 절차 등

제28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타인을 위한 계약에 해당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등이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 등이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방법에 의해 계약자에게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등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 니다.

제29조(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으로 하며, 동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합니다.

제30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대표자로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회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31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32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 (회사 양식)
 - ② 사고증명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제33조(보험금의 지급)

- ① 회사는 제32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 터 신체 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영업일, 배상책임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 ③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⑤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2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영업일】

「토요일」,「일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및「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합니다.

제34조(환급금의 지급)

- ① 회사는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1%(연5.0%)를,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만기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알려드리며, 그 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연4.0%)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③ 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알린 경우의 만기환급금과 해지환급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중 1년 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연2.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의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5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연4.0%)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분할지급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정이율(연4.0%)을 연단위 복리로 할 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36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회사(보험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합니다)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6조(수집 조사 및 처리의 제한)제2항,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및 동법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②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등 계약내용
- ③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등 지급내용
- ④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해 및 질병에 관한 정보

제37조(보험계약대출)

-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차감합니다.
-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6장 분쟁조정 등

제38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9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 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0조(약관의 해석)

- □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제41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2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43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19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3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45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2종 특별약관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 납입)

①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는 이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에 따라 계약자의 거래은행(우체국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지정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 납입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제1회 보험료의 납입방법을 계약자의 거래은행 지정계좌를 통한 자동납입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서를 접수하고 자동이체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래은행의 지정계좌로부터 제1회 보험료가 이체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를 청약일 및 제1회 보험료 납입일로 하여 보통약관의 제1조(계약의 성립)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 납입해당일에도 불구하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와 계약자가 별도로 정한 일자로 합니다.

제3조(계약후 알릴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합 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이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은 신용카드회사(이하「카드회사」라 합니다)의 카드회원을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로 하여 초회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나 카드회사의 카드회원인 계약자가 회사와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신용카드 법인대리점을 통하여 보험료를 자동납입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가 정해진 신용카드로써 보험료를 결제하기 위하여 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봅니다.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카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제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날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봅니다.)

제3조(사고카드의 계약)

① 보험계약자가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② 제1항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 정지통보를 받은 카드, 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서로 다른 카드를 말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신용카드이용 계속보험료납입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① 이 신용카드이용 계속보험료납입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은 신용카드회사(이하「카드회사」라 합니다)가 카드회원을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로 하여 2회 이후 계속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나 카드회사의 카드회원인 계약자가 회사와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신용카드 법인대리점을 통하여 2회 이후 계속보험료를 자동납입하는 경우에 적

용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은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가 정해진 신용카드로써 계속보험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 영수시점으로 봅니다.

제3조(사고카드의 계약)

- ① 계약자가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2회 이후 계속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제2조(보험료의 영수)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것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지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통보를 받은 카드, 카드상의 기재 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서로 다른 카드 등을 말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은 보통약관(다른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특별약관도 포함합니다. 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통약관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② 보통약관이 해지,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 니다.
- ③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 ① 회사는 보통약관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는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의 이륜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이륜자동차[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2륜의 자동차(2륜인 자동차에 1륜의 측차를 붙인 것과 배기량 125씨씨이하로서 3륜이상인 자동차를 포함합니다)]와 배기량이 50씨씨미만(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 출력이 0.59킬로와트미만)인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도중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인가 아닌가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거주하는 관할경찰서에서 발행하는 사고처리확인 원등으로 결정합니다.

제3조(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보통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보통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보통약관과 동시에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사망보험금 양육연금전환 특별약관

제1조 (특별약관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사망보험금 양육연금전환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

로 하고 사망보험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또는 체결한 이후에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보험계약자」는「계약자」,「보험회사」는「회사」라 합니다)

② 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으로 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효력은 제6조(양육연금의 운용) 제1항에서 정한 양육연금의 지급이 종료될 때까지 소멸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 (특별약관의 청약)

- □ 계약자는 계약의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전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의 청약시 계약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양육연금을 받는 자(이하「수익자녀」라 합니다)로 지정 또는 변경하여야 합니다.
- ③ 계약자는 계약에서 일시에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의 50%이상을 양육연금의 지급을 위한 전환금액(이하「양육연금전환금액」이라 합니다)으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 ④ 계약자는 수익자녀 나이 15세, 20세, 25세 중 하나를 양육연금의 지급종료나이(이하「양육연금종료나이」라 합니다)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 ⑤ 계약자가 이 특별약관을 청약하고 회사의 승낙(이하「특별약관의 체결」이라 합니다)이 있은 후 계약에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① 계약의 사망보험금 지급시 수익자녀의 나이가 이 특별약관의 체결시 정한 양육연금종료나이와 같거나 초과한 경우
 - ② 이 특별약관의 체결 후 수익자녀가 사망하거나 계약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서 제외된 경우

제3조 (수익자녀의 범위)

제2조(특별약관의 청약) 제2항의 수익자녀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 자녀 중 1인으로 합니다.

제4조 (계약내용의 변경)

- ① 계약자는 계약의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전에 한하여 회사의 승낙을 얻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녀
 - ② 양육연금전환금액
 - ③ 양육연금종료나이
- ② 계약자가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5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양육연금의 운용)

- ① 회사는 제2조(특별약관의 청약) 제3항에서 정한 양육연금전환금액을 재원(이하「양육연금재원」이라 합니다)으로 양육연금의 지급기간동안 동일한 금액(이하「양육연금」이라 합니다)을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수익자녀에게 지급합니다. 이 경우 미지급된 양육연금재원에 대해서 계약의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양육연금의 지급기간(이하「양육연금지급기간」이라 합니다)이라 함은 제2조(특별약관의 청약) 제4항의 양육연금종료나이에서 계약의 사망보험금 지급시 수익자녀의 나이를 뺀 기간을 말합니다.
- ③ 양육연금지급기간 중 수익자녀의 나이에 따른 제한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수익자녀의 나이가 만20세 미만인 경우 수익자녀는 미지급 양육연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수령할 수 없습니다.
- ② 수익자녀의 나이가 만20세 이상인 경우 수익자녀는 미지급 양육연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이때 그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은 계약의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으로 합니다.
- ④ 제3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수익자녀가 양육연금지급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미지급 양육연금을 수익자녀의 법정상속인에게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며 그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은 계약의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으로 합니다.
- 5 수익자녀 또는 수익자녀의 법정대리인은 제3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양육연금지급기간 중 미지급 양육연금에 대해서 계약의 보통약관에 의한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의 청구나 보험금수령방법의 변경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제7조 (나이의 계산 및 적용)

- ① 제2조(특별약관의 청약) 제4항 내지 제5항 및 제6조(양육연금의 운용) 제2항의 나이는 수익자녀의 보험나이를 기준으로합니다.
-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 현재 수익자녀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며, 이후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양육연금의 운용) 제3항의 나이는 수익자녀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없습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청약을 승낙한 날로 합니다.

제9조 (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부활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의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 ② 계약의 부활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이 특별약관을 부활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제8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제2 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10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수익자녀, 수익자녀의 법정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양육연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 (회사양식)
-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③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 ④ 수익자녀의 법정대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⑤ 기타 수익자녀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11조 (보험금 등의 지급)

- ① 회사는 제10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양육연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계약자 또는 수익자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수익자녀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2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의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이하「특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 금을 받는 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제2조(특별약관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의 승낙으로 부가되어집니다.
- ②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에 의한 변경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 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3촌 이내의 친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 2.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 서 포함)

제5조(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인감증명서
- 5.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6.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별표1】

장해분류표

1 총칙

1. 장해의 정의

-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해 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 지급률로 정합니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3. 기타

- 1)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
-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3)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4)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① 간병여부 ② 객관적이유 및 간병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 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눈이 멀었을 때	100
2) 한눈이 멀었을 때	50
3)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	35
(4) " 0.06 "	25
5) " 0.1 "	15
6) " 0.2 "	5
7) 한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	10
8) 한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 남긴 때	5
9)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10)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5

나. 장해판정기준

-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한다.
-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를 말한다.
- 4) 안구운동장해의 판정은 외상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그 장해정도를 평가한다.
- 5)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라 함은 안구의 주시야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시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때를 말한다.
- 6)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 "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7) "시야가 좁아진 때" 라 함은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60%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 8)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인해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여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9)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 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10) 외상이나 화상 등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에 의해 의안마저 삽입할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삽입할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 11)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2. 귀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5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5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나. 장해판정기준

-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 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 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A), 자기청력계기검사, 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1/2이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 평가한다.

3. 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나. 장해판정기준

-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내지는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 2)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와 각각 더하여 지급한다.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00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80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40
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6)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나. 장해의 평가기준

-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 ① 구순음(ㅁ, ㅂ, ㅍ)
 - ② 치설음(ㄴ, ㄷ, ㄹ)
 - ③ 구개음(ㄱ, ㅈ, ㅊ)
 - ④ 후두음(ㅇ, ㅎ)
- 6)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2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7)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1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8) 뇌의 언어중추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의 경우에도 말하는 기능의 장해로 평가한다.
- 9)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이 파절된 경우를 말한다.

- 10)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의 장착치와 포스트, 인레인만을 한 치아는 결손된 치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 11)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 12)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아는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13) 신체의 일부에 탈착분리 가능한 의치의 결손은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15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5

나. 장해판정기준

-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 2)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하며, 재건수 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 1) 얼굴
 - ①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②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 ③ 직경 5cm 이상의 조직함몰
 - ④ 코의 1/2이상 결손
- 2) 머리
 -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 ②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 1) 얼굴
 - ①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②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 ③ 직경 2㎝ 이상의 조직함몰
 - ④ 코의 1/4이상 결손
- 2) 머리
 -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결손
 - ②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수지를 제외한 수장부의 크기를 말하며, 통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0cm(1/2 크기는 40cm², 1/4 크기는 20cm²), 6~11세의 경우는 6×8cm(1/2 크기는 24cm², 1/4 크기는 12cm²), 6세 미만의 경우는 4×6 cm(1/2 크기는 12cm², 1/4 크기는 6cm²)로 간주한다.

6.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40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30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0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30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15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20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15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10

나. 장해판정기준

- 1)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 2) 심한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 3) 뚜렷한 운동장해
 - 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 ② 머리뼈와 상위경추(상위목뼈: 제1,2목뼈)간의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
- 4) 약간의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5) 심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35°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이 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6) 뚜렷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이 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7) 약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경도(가벼운 정도)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8)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 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9)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 정되는 경우

10)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특수검사(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 방사통(주변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11)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7. 체간골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5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0

나. 장해판정기준

-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 ①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또는 여자에 있어서 정상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의 골반의 변형이 남은 상태
 - ②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이상인 경우
-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4)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

8. 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6)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8)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9) 한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나. 장해판정기준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 4) "팔의 3대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한다.
- 5)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 6)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팔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 인 경우
 - 나) "심한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 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더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2) 한 팔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8)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9) 한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10)한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30
11)한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15
12)한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5

나. 장해판정기준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한다.
- 5)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한다.
 -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 나) "심한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③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 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10) 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부터 경골내측과 하단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정상측 다리의 길이와 비교하여 단축된 길이를 산출한다.
 - 다리 길이의 측정에 이용하는 골표적(bony landmark)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나 다리의 단축장해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scanogram을 통하여 다리의 단축정도를 측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 1)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더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2)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

10. 손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한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5
2) 한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15
3)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1손가락 마다)	10
4) 한손의 5개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	30
를 남긴 때	
5) 한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10
남긴 때	
6)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5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손가락 마다)	

나. 장해판정기준

- 1)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 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 3)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 4)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쪽으로 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뼈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 5)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운동 가능영역에 의해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 이외의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더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 6)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

11. 발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0
2) 한발의 5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0
3)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4)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1발가락마다)	5
5) 한발의 5개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20
장해를 남긴 때	
6)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	8
를 남긴 때	
7)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3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발가락마다)	

나. 장해판정기준

- 1)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잃었을 때를 말한다.
- 2)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 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 3)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 (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쪽에서 발가락뼈를 잃었을 때를 말하고 단순히 살점이 떨어진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 4)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 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하며, 이 경우 발가락의 주된 기능인 발가락 관절의 굴신기능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 5)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75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0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20

나. 장해의 판정기준

-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 ①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 ②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 ③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 ①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 ② 소장 또는 간장의 3/4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 ③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 ①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 및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을 때
 - ②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 ③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 ④ 음경의 1/2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 ⑤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해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해로 인하여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 "<붙암>일상생활 기본동 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장해를 평가하고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5)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10~100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	100
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	70
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40
등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100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80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60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40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70
10)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40
11)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신경계

- ①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에 손상으로 인하여 "<붙암>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 ② 위 ①의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③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④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 를 평가한다.
 - 그러나 6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내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 ⑤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2) 정신행동

- ① 상기 정신행동장해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에 대해서는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 ②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은 후 24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수상 후 18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장해는 충분한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③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 전문의가 시행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전문의란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말한다.
- ⑤ 평가의 객관적 근거
 - ②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 등을 기초로 한다.
 - (나)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 감정의의 추정 혹은 인정
 -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뇌SPECT 등)
 -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시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 ⑥ 각종 정신장해와 외상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 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정서장애), 불안장애, 전환 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⑧ 정신 및 행동장해의 경우 간병인은 생명유지를 위한 동작 및 행동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인 감금을 요하는 상태에 한하여 인정한다. 간병의 내용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간병과 행동감시를 위한 간병을 구별하여야 한다.

3) 치매

- ① "치매" 라 함은
 -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상기에 의한 장해에 의해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한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 ②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4) 간질

- ① "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에 의거하여 발작(경련, 의식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 ③ "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 ④ "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 ⑤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 ⑥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유형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이동동작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지급률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30%) - 목발 또는 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 -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 상태, 난간을 잡지않고는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
음식물섭취	 식사를 전혀 할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
배변 배뇨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5%) -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운전, 작업, 교육 등)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5%)
목욕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10%) -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5%) - 목욕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상태(3%)
옷입고 벗기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10%)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을 착용할 수 있는 상태(5%)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마무리(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가능한 상태(3%)

[별표2]

골절(치아파절 제외)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골절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07-4호, 2008.1.1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합니다.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1. 머리뼈 및 얼굴뼈의 골절	S02
(치아의 파절 및 파절치 제외)	(S02.5 제외)
2. 머리의 압착손상	S07
3. 상세불명의 머리 손상	S09.9
4. 목의 골절	S12
5. 갈비뼈, 복장뼈 및 등뼈의 골절	S22
6. 허리뼈 및 골반의 골절	S32
7. 어깨 및 팔죽지의 골절	S42
8. 아래팔의 골절	S52
9. 손목 및 손부위에서의 골절	S62
10. 넓적다리뼈의 골절	S72
11.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S82
1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S92
13. 다발성 신체부위의 골절	T02
14. 상세불명 부위의 척추의 골절	T08
15. 상세불명 부위의 팔 골절	T10
16. 상세불명 부위의 다리 골절	T12
17.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	T14.2

제6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3]

골절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골절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5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통계청 고시 제2007-4호, 2008.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합니다.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1. 머리뼈 및 얼굴뼈의 골절	S02
2. 머리의 압착손상	S07
3. 상세불명의 머리 손상	S09.9
4. 목의 골절	S12
5. 갈비뼈, 복장뼈 및 등뼈의 골절	S22
6. 허리뼈 및 골반의 골절	S32
7. 어깨 및 팔죽지의 골절	S42
8. 아래팔의 골절	S52
9. 손목 및 손부위에서의 골절	S62
10. 넓적다리뼈의 골절	S72
11.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S82
1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S92
13. 다발성 신체부위의 골절	T02
14. 상세불명 부위의 척추의 골절	T08
15. 상세불명 부위의 팔 골절	T10
16. 상세불명 부위의 다리 골절	T12
17.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	T14.2

제6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4】

화상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화상으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07-4호, 2008.1.1시행) 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합니다.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1. 머리 및 목의 화상 및 부식	T20
2. 몸통의 화상 및 부식	T21
3.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팔의 화상 및 부식	T22
4. 손목 및 손의 화상 및 부식	T23
5.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화상 및 부식	T24
6. 발목 및 발의 화상 및 부식	T25
7. 눈 및 부속기에 국한된 화상 및 부식	T26
8. 호흡기도의 화상 및 부식	T27
9. 기타 내부기관의 화상 및 부식	T28
10. 다발성 신체부위의 화상 및 부식	T29
11.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화상 및 부식	T30
12.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화상	T31
13.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부식	T32
14. 방사선과 관련된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기타 장애	L59

제6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5]

5대골절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5대골절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07-4호, 2008.1.1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합니다.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1. 머리의 압착손상	\$07
2. 목의 골절	\$12
3. 등뼈의 골절 및 등뼈의 다발성 골절	\$22.0~\$22.1
4. 허리뼈 및 골반의 골절	\$32
5. 넓적다리뼈의 골절	\$72

제6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6]

중대한 특정상해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중대한 특정상해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4호, 2008.1.1시행) 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합니다.

구분	대상이 되는 상병	분류번호
뇌손상	머리내 손상	S06
내장손상	심장의 손상	S26
	기타 및 상세불명의 가슴내 장기의 손상	S27
	복부내 기관의 손상	S36
	비뇨기 및 골반 장기의 손상	S37

제6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7】

탈구, 관절 및 인접근육의 염좌 및 과긴장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탈구, 관절 및 인접근육의 염좌 및 과긴장으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5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통계청 고시 제2007-4호, 2008.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합니다.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1. 머리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03
2. 목부위에서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13
3. 가슴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23
4. 가슴부위에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S29.0
5. 허리뼈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33
6. 팔이음뼈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43
7. 팔꿈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53
8. 손목 및 손부위에서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63
9. 엉덩관절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73
10. 네갈래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S76.1
11.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83
12. 아킬레스 힘줄의 손상	S86.0
13. 발목 및 발부위에서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93
14. 다발성신체부위의 탈구, 염좌 및 긴장	T03
15. 몸통의 상세불명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T09.2
16. 상세불명부위의 팔의 상세불명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T11.2
17. 상세불명부위의 다리의 상세불명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T13.2
18.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탈구, 염좌 및 긴장	T14.3
19.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T14.6
20. 외상성 근허혈	T79.6

[별표8]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4호, 2008.1.1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분류번호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	C00~C14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C15~C26
3. 호흡기 및 흉곽내 장기의 악성신생물	C30~C39
4.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C40~C41
5. 흑색종 및 피부의 기타 악성신생물	C43~C44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C45~C49
7. 유방의 악성신생물	C50
8.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51~C58
9.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60~C63
10. 요로의 악성신생물	C64~C68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위의 악성신생물	C69~C72
12. 갑상샘 및 기타 내분비샘의 악성신생물	C73~C75
13. 불명확한, 속발성 및 상세불명부위의 악성신생물	C76~C80
14.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C81~C96
15. 독립된(원발성) 다발성 부위의 악성신생물	C97
16. 진성 적혈구 증다증	D45
17.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	D46
18. 만성 골수증식성 질환	D47.1
19. 본태성(출혈성) 혈소판 증가증	D47.3
20. 림프종 모양 구진증	L41.2

제6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9]

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07-4호, 2008.1.1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분류번호
1. 구강, 식도 및 위의 상피내 암종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상피내 암종 3. 가운데귀 및 호흡기계통의 상피내 암종 4. 상피내의 흑색종 5. 피부의 상피내 암종	D00 D01 D02 D03 D04
6. 유방의 상피내 암종 7. 자궁목의 상피내 암종 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상피내 암종 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상피내 암종	D05 D06 D07 D09

[별표10]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경계성 종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4호, 2008.1.1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분류번호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7
2. 가운데귀, 호흡기, 가슴내 장기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8
3. 여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9
4. 남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0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1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2
7. 뇌 및 중추신경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3
8. 내분비샘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4
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조직구 및 비만세포 종양	D47.0
10. 단클론성 감마병증	D47.2
11. 기타 명시된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7.7
12.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상세불명의 신생물	D47.9
13.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8
14. 달리 분류되지 않은 랑게르한스 세포 조직구증	D76.0

제6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11]

과로사관련특정질병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과로사관련특정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5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OO:통계청 고시 제2007-4호, 2008.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합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1. 바이러스 간염	B15~B19
2. 고혈압성 심장병	l 11
3. 고혈압성 심장 및 콩팥(신장) 질환	l 13
4. 급성심근경색증	121
5. 협심증	120
6. 거미막밑 출혈	160
7. 뇌내출혈	161
8.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162
9. 뇌경색증	163
10.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165
11.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166
12. 고혈압성 뇌병증	167.4
13. 간의 질환	K70~K77

- 제6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분류번호 K70-K77에 해당하는 간질환중 간암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별표12]

질병 특정고도장해 판정기준

약관에서 정한 질병고도장해는 다음에 적은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각 장해상태의 세부 판정기준, 판정시기, 장해진단전문의 및 장해진단기관의 기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의 「장애등급판정기준」을 따릅니다.

1. 팔 다리의 절단장해

- (1)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 서 잃은 경우
- (2)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경우
- (3)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경우

2. 팔 다리의 기능장해

- (1)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
- (2)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경우
- (3) 한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경우
- (4) 한 팔의 모든 3대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경우
- (5) 두 팔을 마비로 각각 겨우 움직일 수 있는 경우
- (6) 두 팔 각각의 3대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경우
- (7) 두 팔의 모든 3대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감소된 경우
- (8)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겨우 움직일 수 있는 경우
- (9) 두 다리 각각의 3대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경우
- (10) 두 다리의 모든 3대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감소된 경우
- ※ 마비에 의한 팔·다리의 기능장해는 주로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으로 운동기능장해가 있는 경우로서 감각손실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 관절총운동범위란 해당 관절들의 평균 운동범위를 말합니다.
- ※ 팔의 3대관절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을 말합니다.
- ※ 다리의 3대관절은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을 말합니다.

3. 척추의 기능장해

- (1) 척추의 병변으로 척추가 완전강직되어 앉은 자세를 10분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 척추의 기능장해는 척추부 단순 X-선 촬영 또는 CT나 MRI에 의한 객관적인 검사소견(척추의 유합 및 금속물의 삽입 등)과 완전강직(척추가 한 위치에서 완전히 고정)이 있어야 하며, 디스크등 통증이 주된 증상인 경우 및 척추의 완전강직이 통증에 의한 경우는 척추의 기능장해로 판정할 수 없습니다.

4. 뇌병변장해

- (1) 뇌성마비, 뇌졸중 등 뇌의 병변으로 인하여 평지에서 50m이상 보행이 어려운 경우, 고르지 못한 바닥이나 언덕길을 걷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 또는 손잡이를 잡고도 계단 오르내리기가 겨우 가능한 경우
- (2) 뇌성마비, 뇌졸중 등 뇌의 병변으로 인하여 식사, 세면 및 양치질, 용변처리 등을 어느 정도할 수 있으나 목욕, 물이 들어 있는 컵을 손으로 흘리지 아니하고 옮기는 일 또는 선반에 물건을 올리는 일 등은 거의 할 수 없는 경우
- (3) 아래 7.의 (3)뇌병변장해의 ①과 ②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5. 시각장해

- (1)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경우
- ※ 시력은 안경,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교정법을 이용하여 측정된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 ※ 시력은 만국식시력표 등 공인된 시력표에 의해 측정된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청각장해

- (1)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 이상인 경우
- ※ 평형기능 이상의 판정은 전정기관 이상의 객관적 징후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합니다.
- 7.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각각 장해가 발생되어 아래의 장해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단, 뇌병 변장해가 팔·다리의 절단장해 또는 팔·다리의 기능장해와 동반된 경우에는 하나의 장해로 봅니다.)

(1) 팔 다리의 절단장해

- ①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경우
- ②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 위에서 잃은 경우
- ③ 두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경우
- ④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경우

(2) 팔 다리의 기능장해

- ①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경우
- ②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경우
- ③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각각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경우
- ④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경우
- ⑤ 한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경우
- ⑥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경우
- ⑦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경우
- ⑧ 두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경우
- ⑨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경우
- ⑩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이상 50%미만 감소된 경우
- ⑪ 한 다리를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경우
- ⑫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경우
- ※ 마비에 의한 팔·다리의 기능장해는 주로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으로 운동기능장해가 있는 경우로서 감각손실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 관절총운동범위란 해당 관절들의 평균 운동범위를 말합니다.
- ※ 팔의 3대관절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을 말합니다.
- ※ 다리의 3대관절은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을 말합니다.

(3) 뇌병변장해

- ① 뇌성마비, 뇌졸중 등 뇌의 병변으로 인하여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운 경우, 고르지 못한 바닥이나 언덕길을 걷는 것이 어려운 경우 또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매우 어려운 경 우
- ② 뇌성마비, 뇌졸중 등 뇌의 병변으로 인하여 식사, 세면 및 양치질, 용변처리를 하는데 다소 의 어려움은 있으며 목욕, 물이 들어 있는 컵을 손으로 흘리지 아니하고 옮기는 일, 선반에 물건을 올리는 일 등이 매우 어려운 경우
- ③ 아래 8.의 (3)뇌병변장해의 ①과 ②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4) 시각장해

- ① 좋은 눈의 시력이 0.08이하인 경우
- ②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5도 이하로 남은 경우
- ※ 시력은 안경,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교정법을 이용하여 측정된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 ※ 시력은 만국식시력표 등 공인된 시력표에 의해 측정된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청각장해

- ①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데시벨 이상인 경우
- ②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 있으며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가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고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 외에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 평형기능 이상의 판정은 전정기관 이상의 객관적 징후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합니다.

(6) 언어장해

- ① 발성이 불가능하거나 특수한 방법(식도발성, 인공후두기)으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한 음성장
- ② 말의 흐름이 97%이상 방해를 받는 말더듬
- ③ 자음정확도가 30%미만인 조음장애
- ④ 의미 있는 말을 거의 못하는 표현언어지수가 25미만인 경우로서 정신지체장에 또는 발달장 애(자폐증)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⑤ 간단한 말이나 질문도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수용언어지수가 25미만인 경우로서 정신지체장애 또는 발달장애(자폐증)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 말더듬, 조음 및 언어장애는 객관적인 검사를 통하여 판정되어야 합니다.
- 8.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각각 장해가 발생되어 위 7.의 장해중 1가지 이상에 반드시 해당되고 아래의 장해중 1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단, 뇌병변장해가 팔·다리의 절단장해 또는 팔·다리의 기능장 해와 동반된 경우에는 하나의 장해로 봅니다.)

(1) 팔 다리의 절단장해

- ①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경우
- ②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경우
- ③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경우
- ④ 두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경우
- ⑤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경우

(2) 팔 다리의 기능장해

- ①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
- ②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경우
- ③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경우
- ④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경우
- ⑤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경우
- ⑥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 상 감소된 경우
- ①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경우
- ⑧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이 상 75%미만 감소된 경우
- ⑨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한 경우
- ⑩ 한 다리를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경우
- ⑪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경우
- ⑫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경우
- ⑱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이상 감소된 경우
 - ※ 마비에 의한 팔·다리의 기능장해는 주로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으로 운동기능장 해가 있는 경우로서 감각손실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 관절총운동범위란 해당 관절들의 평균 운동범위를 말합니다.
 - ※ 팔의 3대관절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을 말합니다.

※ 다리의 3대관절은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을 말합니다.

(3) 뇌병변장해

- ① 뇌성마비, 뇌졸중 등 뇌의 병변으로 인하여 평지에서 근거리 보행만이 가능하고 고르지 못한 바닥이나 언덕길에서 파행이 뚜렷하고 안전성이 없어 넘어지기가 쉬우며 계단 오르내리 기가 어려운 경우
- ② 뇌성마비, 뇌졸중 등 뇌의 병변으로 인하여 그릇을 씻거나 돈을 세는 일, 주머니 또는 지갑에 서 동전을 꺼내는 일, 비교적 굵은 끈을 매는 일, 양복 단추를 끼우는 일 등 주로 손을 사용하는 일을 수행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는 경우
- ③ 뇌성마비, 뇌졸중 등 뇌의 병변으로 인하여 아래 @와 ⑩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 ⓐ 고르지 못한 바닥이나 언덕길을 걸을 때 파행이 뚜렷하며 계단 오르내리기에 안정성이 떨어져 넘어지기가 쉬운 경우
 - ⑤ 그릇을 씻거나 돈을 세는 일, 주머니 또는 지갑에서 동전을 꺼내는 일, 비교적 굵은 끈을 매는 일, 양복 단추를 끼우는 일 등 주로 손을 사용하는 일을 수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경우

(4) 시각장해

- ① 좋은 눈의 시력이 0.1이하인 경우
- ②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경우
- ※ 시력은 안경,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교정법을 이용하여 측정된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 ※ 시력은 만국식시력표 등 공인된 시력표에 의해 측정된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청각장해

- ①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데시벨 이상인 경우
- ②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경우
- ③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고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과 간단한 보행이나 활동만 가능한 경우
- ※ 평형기능 이상의 판정은 전정기관 이상의 객관적 징후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합니다.

(6) 언어장해

- ① 발성(음도, 강도, 음질)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음성장애
- ② 말의 흐름이 방해받는 말더듬 (아동 41-96%, 성인 24-96%)
- ③ 자음정확도 30-75%정도의 부정확한 말을 사용하는 조음장애
- ④ 매우 제한된 표현만을 할 수 있는 표현언어지수가 25-65인 경우로서 정신지체장애 또는 발달장애(자폐증)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⑤ 매우 제한된 이해만을 할 수 있는 수용언어지수가 25-65인 경우로서 정신지체장애 또는 발달장애(자폐증)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 말더듬, 조음 및 언어장애는 객관적인 검사를 통하여 판정되어야 합니다.

[별표13]

고액암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고액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제2007-4호, 2008.1.1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1. 식도의 악성신생물	C15
2. 췌장의 악성신생물	C25
3.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C40-C41
- 사지의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C40
-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C41
4. 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부위의 악성신생물	C70-C72
- 수막의 악성신생물	C70
- 뇌의 악성신생물	C71
- 척수, 뇌신경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부위의 악성신생물	C72
5.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C81-C96
- 호지킨병	C81
- 여포성 비호지킨 림프종	C82
- 미만성 비호지킨 림프종	C83
- 말초 및 피부성 T-세포 림프종	C84
- 기타 상세불명 형의 비호지킨 림프종	C85
- 악성 면역증식성 질환	C88
- 다발성 골수종 및 악성 형질세포 신생물	C90
- 림프성 백혈병	C91
- 골수성 백혈병	C92
- 단핵구성 백혈병	C93
- 명시된 세포형의 기타 백혈병	C94
- 상세불명 세포형의 백혈성	C95
- 림프, 조혈·관련 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	C96

제6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14]

여성3대암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여성3대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제2007-4호, 2008.1.1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분류번호
1. 위의 악성신생물	C16
2. 유방의 악성신생물	C50
3. 자궁목의 악성신생물	C53
4. 자궁체의 악성신생물	C54
5. 상세불명 자궁부위의 악성신생물	C55
6. 난소의 악성신생물	C56
7. 태반의 악성신생물	C58

[별표15]

뇌졸중대상질병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뇌졸중대상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07-4호, 2008.1.1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분류번호
1.거미막밑 출혈	160
2.뇌내출혈	161
3.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162
4.뇌경색증	163
5.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165
6.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166

제6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16]

급성심근경색증대상질병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대상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 고시 제2007-4호, 2008.1.1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분류번호
1.급성심근경색증	121
2.속발성 심근경색증	122
3.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특정 현재 합병증	123

[별표17]

말기 폐질환(End Stage Lung Disease)

- 1. 말기 폐질환이라 함은 만성 호흡부전을 일으키는 폐질환의 악화된 상황으로써 다음의 2가지 특징을 모두 보여야 합니다.
 - 가. 영구적인 산소공급 치료가 요구되는 상태
 - 나. 평상시 FEV1 검사가 정상예측치의 25% 이하
- 2. 말기 폐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4호, 2008.1.1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인플루엔자 및 폐렴 기타 급성 하기도 감염 만성 하기도 질환 외부요인에 의한 폐질환 주로 사이질에 영향을 주는 기타 호흡기 질환 하기도의 화농성 및 괴사성 병태 가슴막의 기타 질환	J09 ~ J18 J20 ~ J22 J40 ~ J47 J60 ~ J70 J80 ~ J84 J85 ~ J86 J90 ~ J94
호흡기계통의 기타 질환	J95 ~ J99

제6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3. 상기 1~2에 모두 근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예) ① 1의 가. ~ 나.의 특징을 모두 보이나 2에서 정한 대상질병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경우
 - ② 2에서 정한 질병에 해당하지만 1의 가. ~ 나.의 특징을 모두 보이지 않는 경우

[별표18]

말기 간경화(End Stage Liver Cirrhosis)

- 1. 말기 간질환(경화)이라 함은 만성 말기 간경화를 의미하며 다음 중 한가지 이상의 원인이 됩니다.
 - ① 통제가 불가능한 복수증
 - ② 영구적인 황달
 - ③ 위나 식도벽의 정맥류
 - ④ 간성 뇌증
- 2. 알코올중독 또는 약물중독에 의한 간질환, 선천적 및 독성 간질환은 제외됩니다.
- 3. 말기 간경화의 진단 확정은 병력과 함께 혈액검사소견, 동위원소간주사(Radioisotope LiverScan), 복부 초음파(Abdomen Sono), 복부전산화단층촬영(Abdomen CT Scan)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별표19]

식중독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있어서 식중독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5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통계청 고시 제2007-4호, 2008.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분류번호
 기타 살모넬라 감염 이질 기타 세균성 창자 감염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세균성 식중독 아메바증 기타 원충성 창자 질환 바이러스 및 기타 명시된 창자 감염 해산물 속의 유해물질의 중독작용 식품으로 섭취한 기타 유해물질의 중독작용 	A02 A03 A04 A05 A06 A07 A08 T61 T62

[별표20]

특정전염병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특정전염병으로 분류되는 전염병은 전염병예방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전염병 중 다음에 해당하는 전염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분류번호
제1군 전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상세불명의 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 페스트	A00 A01.0 A01.1~A01.4 A03.9 A04.3 A20
제2군 전염병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급성 회색질척수염 일본뇌염 홍역 풍진(독일홍역) 볼거리	A33~A35 A36 A37 A80 A83.0 B05 B06 B26
제3군 전염병	탄저병 브루셀라증 렙토스피라증 성홍열 수막알균 수막염 기타 그람음성균에 의한 패혈증 리지오넬라병 발진티푸스 리켓치아 타이피에 의한 발진티푸스 리켓치아 쯔쯔가무시에 의한 발진티푸스 광견병 콩팥(신장) 증후군을 동반한 출혈열 말라리아	A22 A23 A27 A38 A39.0 A41.5 A48.1~A48.2 A75(A75.2, A75.3 제외) A75.2 A75.3 A82 A98.5 B50~B54

[별표21]

7대질병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7대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07-4호, 2008.1.1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질병	
심장질환	1.급성 류마티스열 2.만성류마티스 심장질환 3.허혈성 심장질환 4.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5.기타 형태의 심장병	100~102 105~109 120~125 126~128 130~152
뇌혈관질환	뇌혈관 질환	160~169
간질환	1.바이러스간염 2.간의 질환	B15~B19 K70~K77
고혈압	고혈압성 질환	I 10~I 15
당뇨병	당뇨병	E10~E14
만성 하기도질환	1.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2.단순성 및 점액농성만성기관지염 3.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 4.천식 5.천식지속상태	J40 J41 J42 J45 J46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1.위궤양 2.십이지장궤양 3.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	K25 K26 K27

제6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22]

피부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피부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5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4호, 2008.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분류번호
1.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감염 2. 수포성 장애 3. 피부염 및 습진 4. 구진비늘 장애 (림프종모양 구진증 제외) 5. 두드러기 및 홍반 6.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방사선 관련성 장애 7. 피부 부속기의 장애 8.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기타 장애	L00~L08 L10~L14 L20~L30 L40~L45 (L41.2 제외) L50~L54 L55~L59 L60~L75 L80~L99

[별표23]

호흡기관련질병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호흡기관련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5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OD:통계청 고시 제2007-4호, 2008.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분류번호
1. 급성상기도감염 2. 상세불명의 상기도질환 3.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4. 단순성 및 점액농성 만성기관지염 5. 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 6. 천식, 천식지속 상태 7. 폐렴, 리지오넬라 병, 폐렴이 합병된 홍역	J00 ~ J06 J39.9 J40 J41 J42 J45, J46 J12 ~ J18, A48.1, B05.2

제6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24]

충수염(맹장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충수염(맹장염)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5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통계청 고시 제2007-4호, 2008.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분류번호
충수의 질환	K35 ~ K38

[별표25]

컴퓨터질환(VDT증후군)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컴퓨터질환(VDT증후군)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5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OD:통계청 고시 제2007-4호, 2008.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분류번호
1. 근육장애 2. 윤활막 및 힘줄장애 3. 결합조직의 기타 전신침습 4. 기타 연조직장애 5. 기타 관절연골장애, 인대장애 6. 관절통(증), 달리 분류되지 않은 관절의 경직 7. 경추상완증후군 8. 팔의 단발 신경병증	M60∼M63 M65∼M68 M35 M70∼M79 M24.1, M24.2 M25.5, M25.6 M53.1 G56

제6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26]

유방절제수술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유방절제수술위로금의 유방절제수술은 국제의료행위 분류표(ICD. 9)에 의한 수술 및 처치 코드에 해당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대 상 수 술 명	수술 및 처치 코드
 편측단순유방절제술 양측단순유방절제술 편측확대유방절제술 양측확대유방절제술 면측근치적유방절제술 양측근치적유방절제술 면측라치적유방절제술 양측라지적유방절제술 면측확대근치적유방절제술 양측확대근치적유방절제술 양측확대근치적유방절제술 	85.41 85.42 85.43 85.44 85.45 85.46 85.47

[별표27]

정신 및 행동장애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정신 및 행동장애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5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통계청 고시 제2007-4호, 2008.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분류번호
1. 증상성을 포함하는 정신장애 2. 정신분열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3. 기분[정동] 장애 4. 신경증적, 스트레스와 연관된 신체형 장애 5. 생리적 장애 및 신체적 요인들과 연관된 행동 증후군 6. 성인 인격 및 행동 장애 7. 정신 발육지연 8. 정신 발달 장애 9.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생하는 행동 및 정서 장애 10. 상세불명의 정신 장애	F00-F09 F20-F29 F30-F39 F40-F48 F50-F59 F60-F69 F70-F79 F80-F89 F90-F98

제6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28]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1. 나쁜 눈의 시력(만국식 시력표 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1.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 데시벨(dB) 이상인 사람	음성 기능 또는 언어 기능에 영 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는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2.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dB)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2.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3.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 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라 편하기 이 하지만 되었다.	
4. 두 눈의 시야의 2분의 1 이상 을 잃은 사람	4. 평형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

아래의 부상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2호와 관련되며, 법령 변경시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상해급별	상해내용
	1. 고관절의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2. 척추체 분쇄성 골절
	3. 척추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제신경증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외상성 두 개강안의 출혈로 개두술을 시행한 상해
	5. 두개골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또는 경막하 수종, 수활액 낭종, 지주막하 출혈 등
	으로 개두술을 시행한 상해
1급	6. 고도의 뇌좌상(미만성 뇌축삭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해(48시간 이상 혼수상태가 지
	속되는 경우에 한한다) 7. 대퇴골 간부의 분쇄성 골절
	8. 경골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9. 화상 좌창 괴사창 등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한 상해(체표의 9퍼센트 이상의 상해)
	10. 사지와 몸통의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식피술을 시행한 상해
	11. 상박골 경부 골절과 간부 분쇄골절이 중복된 경우 또는 상완골 삼각골절
	12. 기타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 상박골 분쇄성 골절
	2. 척주체의 압박골절이 있으나 제신경증상이 없는 상해 또는 경추 탈구(아탈구 포함), 골절 등으로 할
	로베스트 등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3.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상해(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성우들 일인다) 4. 내부장기 파열과 골반골 골절이 동반된 상해 또는 골반골 골절과 요도 파열이 동반된 상해
2급	1. 네구6기 페르페 글랜글 글글에 8년년 8에 또는 글랜글 글글퍼 표도 페글에 8년년 8에
	6. 족관절부 골절과 골절성 탈구가 동반된 상해
	7. 척골 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천장골간 관절 탈구
	9. 슬관절 전 후십자인대 및 내측부인대 파열과 내 외측 반월상 연골이 전부 파열된 상해
	10. 기타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 상박골 경부 골절
	2. 상박골 과부 골절과 주관절 탈구가 동반된 상해
	3. 요골과 척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상해 4. 수근 주상골 골절
	4. 구는 구성을 들을
	6. 대퇴골 간부 골절(소아의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한하며, 그 외의 자의 경우에는 수술의 시
	행여부를 불문한다)
	7. 무릎골(슬개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분쇄 골절과 탈구로 인하여 무릎골 완전 적출술을 시행한 상해
	8. 경골 과부 골절이 관절면을 침범하는 상해(경골극 골절로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3급	9. 족근 골척골간 관절 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상해 또는 리스프랑씨시(Lisfranc)관절의 골절 및 탈구
	10. 전 후십자인대 또는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과 경골극 골절 등이 복합된 슬내장
	11. 복부 내장 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또는 복강내출혈로 수술한 상해
	12. 뇌손상으로 뇌신경 마비를 동반한 상해
	13. 중증도의 뇌좌상(미만성 뇌축삭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 한다) 14. 개방성 공막 열창으로 양안구가 파열되어 양안 적출술을 시행한 상해
	14. 개성성 등록 결정으로 정원구가 파결되어 정원 목물질을 시청된 성에 15. 경추궁의 선상 골절
	16. 항문 파열로 인공항문 조성술 또는 요도 파열로 요도성형술을 시행한 상해
	17. 관절면을 침범한 대퇴골 과부 분쇄 골절
	18. 기타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상해급별	상해내용
4급	1. 대퇴골 과부(원위부, 과상부 및 대퇴과간을 포함한다) 골절 2. 경골 간부 골절, 관절면 침범이 없는 경골 과부 골절 3. 거골 경부 골절 4. 슬개인대 파열 5. 견갑 관절부위의 회선근개 골절 6. 상박골 외측상과 전위 골절 7. 주관절부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화상, 좌창, 괴사창 등으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체표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9. 안구 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상해 또는 개방성 공막열창으로 안구 적출술,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10. 대퇴 사두근, 이두근 파열로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슬관절부의 내 외측부 인대, 전 후십자 인대, 내 외측반월상 연골 완전 파열(부분 파열로 수술 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5급	12.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경 비골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13. 기타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 골반골의 중복 골절(말가이그니씨 골절 등을 포함 한다) 2. 족관절부의 내외과 골절이 동반된 상해 3. 족종골 골절 4. 상박골 간부 골절 5. 요골 원위부(Colles, Smith, 수근 관절면, 요골 원위 골단 골절을 포함한다) 골절 6. 척골 근위부 골절 7. 다발성 늑골 골절로 혈흉, 기흉이 동반된 상해 또는 단순 늑골 골절과 혈흉, 기흉이 동반되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상해 8. 족배부 근건 파열창 9. 수장부 근건 파열창(상완심부 열창으로 삼각근, 이두근 근건파열을 포함한다) 10. 아킬레스건 파열 11. 소아의 상박골 간부 골절(분쇄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한 상해 12. 결막, 공막, 망막 등의 자체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거골 골절(경부를 제외한다) 14.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소아의 경 비골 아래의 3분의 1 이상의 분쇄 골절 15.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경골 분쇄 골절 16. 23치 이상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7. 기타 5급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상해
6급	1. 소아의 하지 장관골 골절(분쇄 골절 또는 성장판 손상을 포함한다) 2. 대퇴골 대전자부 절편 골절 3. 대퇴골 소전자부 절편 골절 4. 다발성 발바닥뼈(중족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5. 치골 좌골 장골 천골의 단일 골절 또는 미골 골절로 수술한 상해 6. 치골 상 하지 골절 또는 양측 치골 골절 7. 단순 손목뼈 골절 8. 요골 간부 골절(원위부 골절을 제외한다) 9. 척골 간부 골절(원위부 골절을 제외한다) 10. 척골 주두부 골절 11. 다발성 손바닥뼈(중수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12.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해 13. 외상성 경막하 수종, 수활액 낭종,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수술하지 아니한 상해(천공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14. 늑골 골절이 없이 혈흉 또는 기흉이 동반되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상해 15. 상박골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대퇴골 또는 대퇴골 과부 견연 골절 17.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태 18. 기타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상해급별	상해내용
7급	1. 소아의 상지 장관골 골절 2. 족과절 내과골 또는 외과골 골절 3. 상박골 상과부굴곡 골절 4. 고관절 탈구 5. 견갑 관절 탈구 6. 견봉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쇄골간 인대 파열 7. 족관절 탈구 8. 천장관절 이개 또는 치골 결합부 이개 9. 다발성 안면두개골 골절 또는 신경손상과 동반된 안면 두개골 골절 10.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태 11. 기타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8급	1. 상박골 절과부 신전 골절 또는 상박골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술하지 아니한 상해 2. 쇄골 골절 3. 주관절 탈구 4. 견갑골(견갑골극 또는 체부, 흉곽내 탈구, 경부, 과부, 견봉돌기, 오훼돌기를 포함한다) 골절 5. 견봉쇄골 인대 또는 오구쇄골 인대 완전 파열 6. 주관절내 상박골 소두 골절 7. 비골(다리) 골절, 비골 근위부 골절(신경손상 또는 관절 면침범을 포함한다) 8. 발가락뼈(족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9. 다발성 늑골 골절 10. 뇌좌상(미만성 뇌축삭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 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해 11. 안면부 열창, 두개부 타박 등에 의한 뇌손상이 없는 뇌신경손상 12. 상약골, 하약골, 치조골, 안면 두개골 골절 13. 안구적출술없이 시신경의 손상으로 실명된 상해 14. 족부 인대 파열(부분 파열을 제외한다) 15. 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6. 기타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9급	1. 척주골의 극상돌기, 횡돌기 골절 또는 하관절 돌기 골절(다발성 골절을 포함한다) 2. 요골 골두골 골절 3. 완관절내 월상골 전방 탈구 등 손목뼈 탈구 4. 손가락뼈(수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5. 손바닥뼈 골절 6. 수근 골절(주상골을 제외한다) 7. 발목뼈(족근골을 말한다) 골절(거골 종골을 제외한다) 8. 발바닥뼈 골절 9. 족관절부 염좌, 경 비골 이개, 족부 인대 또는 아킬레스건의 부분파열 10. 늑골, 흉골, 늑연골 골절 또는 단순 늑골 골절과 혈흉, 기흉이 동반되어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척주체간 관절부 염좌로서 그 부근의 연부조직(인대 근육 등) 손상이 동반된 상해 12. 척수 손상으로 마비증상 없고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완관절 탈구(요골, 손목뼈 관절 탈구 또는 수근간 관절탈구, 하 요척골 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4. 미골 골절로 수술하지 아니한 상해 15. 슬관절부 인대의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16.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7. 기타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상해급별	상해내용
10급	1. 외상성 슬관절내 혈종(활액막염을 포함한다) 2. 손바닥뼈 지골간 관절 탈구 3. 손목뼈 손바닥뼈간 관절 탈구 4. 상지부 각 관절부(견관절, 주관절, 완관절) 염좌 5. 척골 요골 경상돌기 골절, 제불완전골절[비골(코) 골절 수지 골절 및 발가락뼈 골절을 제외한다] 6. 수지 신전근건 파열 7.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8. 기타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1급	1. 발가락뼈 관절 탈구 및 염좌 2. 수지 골절 탈구 및 염좌 3. 비골(코) 골절 4. 손가락뼈 골절 5. 발가락뼈 골절 6. 뇌진탕 7. 고막 파열 8.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9. 기타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2급	1. 8일 내지 14일간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2. 15일 내지 26일간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3.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3급	1. 4일 내지 7일간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2. 8일 내지 14일간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3.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4급	1. 3일 이하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2. 7일 이하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3. 1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 비고

- 1. 2급 내지 11급까지의 상해내용중 개방성 골절은 해당등급보다 한급 높이 배상한다.
- 2. 2급 내지 11급까지의 상해내용 중 단순성 선상 골절로 인한 골편의 전위가 없는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급 낮게 배상한다.
- 3. 2급 내지 11급까지의 상해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로부터 하 위 3등급(예 : 상해내용이 주로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 한하여 가장 높은 상해내용의 등급보다 한급 높이 배상한다.
- 4. 일반 외상과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각 상해등급 별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액을 배상한다.

[별표30]

어린이12대다발성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어린이12대다발성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5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통계청 고시 제2007-4호, 2008.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분류번호
결핵	결핵	A15 ~ A19
바이러스 간염	바이러스 간염	B15 ∼ B19
당뇨병	인슐린-의존 당뇨병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영양실조와 관련된 당뇨병 기타 명시된 당뇨병 상세불명의 당뇨병	E10 E11 E12 E13 E14
수막염	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 질환	G00 ~ G09
중이염	비화농성 중이염 화농성 및 상세불명의 중이염	H65 H66
급성상기도 감염	급성상기도 감염	J00 ~ J06
폐렴 및 급성 기관지염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바이러스성 폐렴 폐렴사슬알균에 의한 폐렴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에 의한 폐렴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 폐렴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감염성 병원체에 의한 폐렴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폐렴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급성 기관지염 급성 세기관지염	J12 J13 J14 J15 J16 J17 J18 J20 J21
천식	천식 천식 지속상태	J45 J46
만성 굴염	만성 굴염	J32
충수염	충수의 질환	K35 ∼ K38
헤르니아 및 장폐색	샅(서혜)헤르니아 넓적다리헤르니아 배꼽헤르니아 복벽헤르니아 가로막헤르니아 기타 복부헤르니아 상세불명의 복부헤르니아 헤르니아가 없는 마비성 장폐색증 및 창자폐쇄	K40 K41 K42 K43 K44 K45 K46
VDT증후군관련	팔목 터널 증후군 기타 관절연골 장애 인대 장애 관절통(증) 달리 분류되지 않은 관절의 경직 건조증후군[쉐그렌] 경추상완 증후군 근육장애 윤활막 및 힘줄장애 기타 연조직 장애	G56.0 M24.1 M24.2 M25.5 M25.6 M35.0 M53.1 M60 ~ M63 M65 ~ M68 M70 ~ M79

【별표31】

출생전후기에 발생한 주요병태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출생전후기에 발생한 주요병태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5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통계청 고시 제 2007-4호, 2008.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분류번호
1. 모성 요인과 임신, 진통 및 분만의 합병증에 의해 영향을 받은 태아 및 신생아	P00 - P04
2. 임신 기간 및 태아 발육과 관련된 장애	P05 - P08
3. 출산외상	P10 - P15
4. 출생전후기에 특이한 호흡기 및 심장혈관 장애	P20 - P29
5. 출생전후기에 특이한 감염	P35 - P39
6. 태아 및 신생아의 출혈성 및 혈액학적 장애	P50 - P61
7. 태아 또는 신생아에 특이한 일과성 내분비 및 대사 장애	P70 - P74
8. 태아 및 신생아의 소화기계통 장애	P75 - P78
9. 태아 및 신생아의 외피 및 체온조절에 관련되는 병태	P80 - P83
10.출생전후기에 기원한 기타 장애	P90 - P96

【별표32】

장해의 대상

장해의 대상이 되는 기형은 다음과 같으며 아래 이외의 기형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순환기계 기형

1) 심실중격결손증

좌우 심실의 사이에 작은 구멍이 있어 심장이 수축할 때 압력이 높은 좌심실로부터 압력이 낮은 우심실로 혈액이 역류하는 것. 따라서 우심실에 부담이 생겨 나중에 심부전을 일으킨다.

2) 심방중격결손증

좌우의 심방사이에 구멍이 있는 경우

2. 근골격계 기형

1) 다지증 : 지(指. 맓)가 6개 이상 있는 경우

2) 합지증: 지(指, 趾)가 붙어 있는 경우

3) 결지증 : 지(指, 趾)가 부족한 경우

4) 열수(족): 합지(趾)증이 심화되어 지(趾)가 붙어 있어야 할 곳보다 안쪽까지 찢어져 있는 경우

5) 내반수(족): 手(足)가 전체로서 안쪽으로 휘어져 手(足)의 뒤쪽이 안쪽의 방향으로 향하여 있는 경우

6) 사경 : 목 한쪽이 휘어져 턱이 반대쪽에 올라간 상태의 경우

3. 소화기계 기형

- 1) 토순 : 윗입술이 찢어진 경우(중앙이 찢겨있는 경우, 혹은 우 또는 좌로 치우쳐진 곳에 찢겨져 있는 경우)
- 2) 구개열 : 토순보다도 더욱 심한 것으로 입안 구개골에 파열이 생기는 경우
- 3) 선천성식도폐색증 : 식도가 폐쇄 또는 협착상태에 있는 경우
- 4) 선천성장폐색증 : 장이 폐쇄 또는 협착상태에 있는 경우
- 5) 선천성담도폐색증 : 담도가 폐쇄 또는 협착상태에 있는 경우(본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십이지장에 담즙이 분비되지 않음)
- 6) 선천성항문폐색증 : 항문이 폐쇄되어 있는 경우

4. 뇌신경계 기형

1) 수두증 : 뇌척수액의 증가로 뇌실비대에 의해 머리가 커진 경우

2) 척추파열 : 척추중앙에 깨진 선이 있어 그곳으로부터 척수나 척수막 등이 바깥으로 부풀어져 나온 경우

5. 비뇨생식기계 기형

- 1) 요도상열 : 단순히 귀두 뒷면에 찢어진 선이 있는 경우나 때로는 음순하면전장에 열구가 있는 경우
- 2) 요도하열 : 요도가 음 선단에 미치지 못하고 음 하면에 개구가 있는 경우, 개구가 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
- 3) 선천성요도폐색증 : 요도가 폐쇄되어 있거나 협착상태에 있는 경우
- 4) 반음양 : 남성이면서 외음부가 여성처럼 보이는 경우, 여성이면서 남성처럼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전자의 경우가 많고 이것을 남성가성반음양이라 한다.

6. 감각기계 기형

외이도폐쇄 : 외이도가 태어나면서 폐쇄한 상태에 있는 경우

7. 훼닐키톤뇨증(Phenylketonuria)

선천성대사이상의 일종으로 방치해두면 정신박약으로 된다. 치료는 페니르알린을 제거한 특수우유와 특수한 식사를 계속 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에 의하지만 치료는 생후 2~3개월 이내에 치료하지 않으면 지능저하를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생후 1개월에 집단선별검사(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스크리닝 검사)를 행할 필요가 있다.

[별표33]

심한 장해의 대상

심한장해의 대상이 되는 기형은 다음과 같으며 아래 이외의 기형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중증기형

- 1) 심한 포코멜리아(단지증, Phocomelia): 사지의 장골에 결손 또는 단축이 있어 수족이 직접 또는 단축한 장골을 가지고 체구에 부착하고 있는 상태의 경우. 사지의 이상은 상지에서 잘보이며 하지의 이상은 드문 경우이며, 이 기형은 탈리도마이도(Thalidomide)계통제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 2) 무지증 : 사지가 완전하게 결손한 경우로서 상당히 심한 기형인 것
- 3) 절단증 : 태아일 때 사지가 양막에 말려있는 상태로 있어서 사지가 절단된 경우

2. 뇌성마비

되성마비란 (¬)임신중의 장해, (ㄴ)출생시의 장해, (ㄷ)출생후 영아기의 장해등에 의해 되조직에 이상을 초래하여 수족이나 발성이 자유롭지 않게 되는 병이다. 뇌성마비의 원인으로 (¬)임신중의 장해, (ㄴ)출생시의 장해에 의한 것 이외에 교통사고에 의한 외상성 장해등이 있으나 본 보험에서 담보하는 것은 임신중 또는 출산시의 장해로 인한 뇌성마비에 한한다.

3. 다운증후군의 염색체이상의 기형

21번째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있어 얼굴이 넓적하고 코가 작고 안열이 위로 삐뚤어져 사행하는 등 다운증후군의 특징적 얼굴형태를 가지는 경우로써 근육긴장감퇴, 지능저하(장해)증의 주요 증상이 보인다.

[별표34]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5차 개정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KCD :통계청 고시 제2007-4호, 2008.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분류번호
1. 신경계통의 선천기형 2. 눈, 귀, 얼굴 및 목의 선천기형 3. 순환기계통의 선천기형 4. 호흡기계통의 선천기형 5. 입술 갈림증 및 입천장 갈림증 6. 소화기계통의 기타 선천기형 7. 생식 기관의 선천기형 8. 비뇨기계통의 선천기형 9. 근육 골격계통의 선천기형 및 변형 10. 기타 선천기형 1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염색체 이상	Q00-Q07 Q10-Q18 Q20-Q28 Q30-Q34 Q35-Q37 Q38-Q45 Q50-Q56 Q60-Q64 Q65-Q79 Q80-Q89 Q90-Q99

제6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35】

여성산과(임신,출산및산후)관련 특정질병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여성산과(임신,출산및산후)관련 특정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5차 개정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통계청 고시 제2007-4호, 2008.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분류번호
1. 유산된 임신 2.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서의 부종, 단백뇨 및 고혈압성장애 3. 주로 임신과 관련된 기타 모성 장애 4. 태아와 양막강 및 가능한 분만문제와 관련된 산모관리 5. 진통 및 분만의 합병증 6. 분만 7. 주로 산후기에 관련된 합병증	O00 ~ O08 O10 ~ O16 O20 ~ O29 O30 ~ O48 O60 ~ O75 O80 ~ O84 O85 ~ O92

[별표36]

임신·출산관련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임산출산관련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5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통계청 고시 제2007-4호, 2008.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분류번호
1.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서 부종, 단백뇨 및 고혈압성 장애	010~016
2. 주로 임신과 관련된 기타 모성장애	020~029
3. 태아와 양막강 및 가능한 분만문제와 관련된 산모관리	030~048
4. 진통 및 분만의 합병증	060~075
5. 주로 산후기에 관련된 합병증	085~092

제6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37]

유산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유산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5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통계청고시 제2007-4호, 2008.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분류번호
1. 자궁외 임신	000
2. 포상기태	001
3. 기타이상 임신부산물	002
4. 자연유산	003
5. 의학적 유산	004
6. 기타유산	005
7. 상세불명의 유산	006
8. 시도된 유산의 실패	007
9. 유산, 자궁외 임신 및 기타 임신에 따른 합병증	008

[별표38]

특정부위 분류표

구분	특정부위
1	위, 십이지장 또는 공장
2	맹장 (충수돌기 포함) 또는 회장
3	직장 또는 항문
4	간장, 담낭 또는 담관
5	췌장
6	기관, 기관지, 폐, 흉막 또는 흉곽
7	코 (외비, 비강 또는 부비강 포함)
8	인두 또는 후두
9	구강, 치아, 혀, 악하선, 이하선 또는 설하선
10	귀 (외이, 고막, 중이, 내이, 청신경 및 유양돌기 포함)
11	안구 또는 안구부속기 (안검, 결막, 누기, 안근 또는 안와내 조직 포함)
12	신장
13	요관, 방광 또는 요도
14	전립선
15	유방 (유선 포함)
16	자궁 (이상분만의 경우 포함)
17	난소 또는 난관
18	고환 (고환초막 포함), 부고환, 정관, 정삭 또는 정낭
19	갑상선
20	경추부 (해당신경 포함)
21	흉추부 (해당신경 포함)
22	요추부 (해당신경 포함)
23	선골부 또는 미골부 (해당신경 포함)
24	좌견관절부
25	우견관절부
26	좌고관절부
27	우고관절부
28	좌상지 (좌견관절부 제외)
29	우상지 (우견관절부 제외)
30	좌하지 (좌고관절부 제외)
31	우하지 (우고관절부 제외)
32	자궁체부 (제왕절개술을 받은 경우에 한함)
33	서혜부 (서혜 헤르니아, 음낭, 헤르니아 또는 대퇴 헤르니아가 생긴 경우에 한함)
34	식도
35	대장 (맹장 및 직장 제외)
36	피부(두피 및 입술 포함) 스고(루요)
37	수골(手骨)
38	족골(足骨) 사 · 하아고(L · 下頸骨)
39	상・하악골(上・下顎骨)

감사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저희 메리츠화재에 보내주신 고객 여러분의 성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메리츠화재는 고객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어려운 경제상황속에서도 건실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편안하고 신속한 고객서비스를 바탕으로 고객여러분이 믿고 찾으시는 최고의 보험회사가 되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